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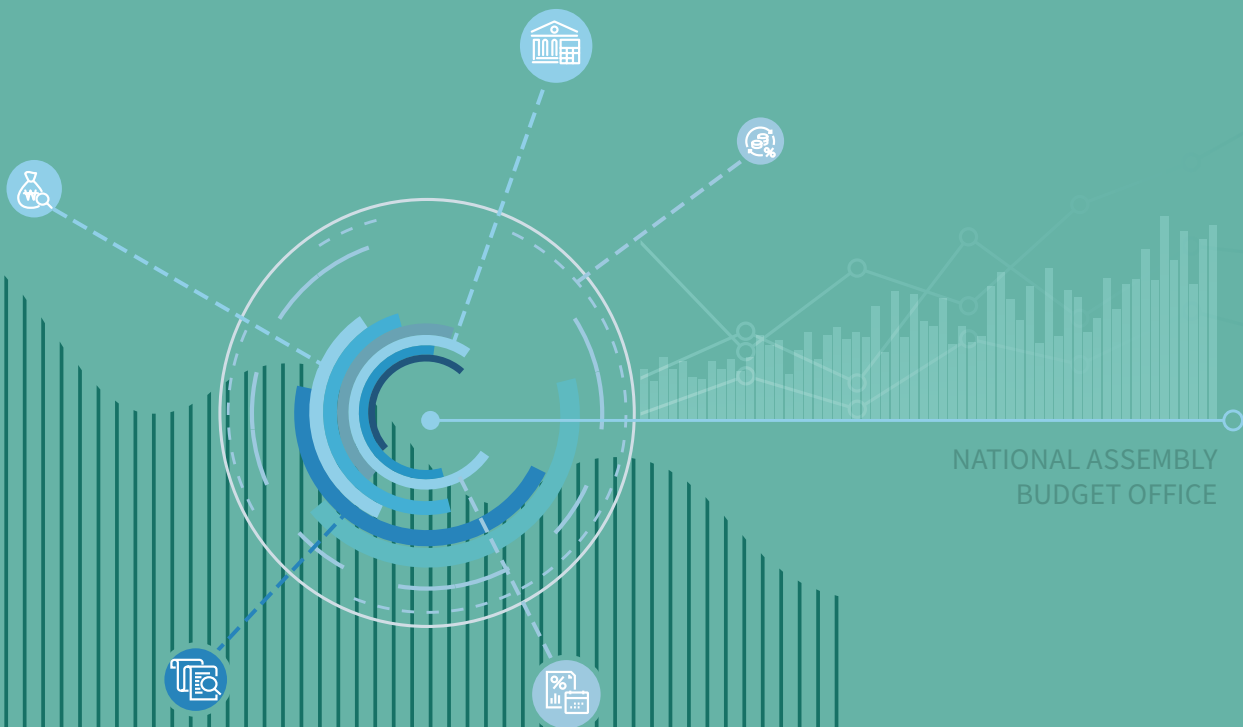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윤성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관
이지선 예산분석관
이상아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윤성식 예산분석관
유다연 예산분석관

지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김현실 행정실무원
이민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I. 예산안 개요 / 3

1. 현 황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

II. 주요 사업 분석 / 19

1.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9
1-1. 일반예비비 적정 규모 검토 필요	21
1-2. 예비비 용도와 유사한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의 편성 및 집행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23
1-3.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7
2.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 조기상환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	30
2-1. 외국환평형기금 일반 현황	30
2-2.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분석(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33
2-3.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국공채수입)	43
3.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등	54
4.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예산 규모 검토 필요	70
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재검토 필요	76
6.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기본경비 편성 재검토 필요	79

CONTENTS

7.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82
8.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산정제도 개선 필요	86
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90
10. 지방채 인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수 세부기준 마련 필요	95
11.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검토 필요	98
12. 복권기금 전출사업 규모 대비 과다 편성된 기금 전출금 감액 필요	105
13. 기후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분석	107
13-1.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액의 적정성 검토	108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수입과목 편성 필요	114
13-3.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편성 필요	117
14.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123
15.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수입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27
16.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32
17. (기후대응기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비 감액 필요	136
18.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간 이차보전 금리우대 차등 지원 강화 필요	141
19.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45
20.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NDC 목표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149



CONTENTS

2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개선 필요	154
21-1.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의 문제점	155
21-2. 공용재산취득 사업 적정 규모의 계획 편성 필요	161
21-3.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 여부 재검토 필요	165
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분석	168
22-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 재추계에 기반한 일반회계전입금 적정성 검토 필요	169
2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 적정성 검토 필요	175
22-3.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 상향 필요	179

[국세청]

I. 예산안 개요 / 185

1. 현 황	18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88

II. 주요 사업 분석 / 189

1.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189
2. 출장 예상 소요를 고려한 예산 산정 및 편성 필요	198
3. 신규 사업비에 미반영되어 기본경비에 편성한 예산의 감액 또는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201
4. 청년인턴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 및 채용 규모 조정 필요	207
5.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212



CONTENTS

[관세청]

I. 예산안 개요 / 219

- 1. 현 황 21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2

II. 주요 사업 분석 / 224

- 1. R&D 사전기획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적정 규모의 예산 산정 필요 224
-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및 신청 수요를 고려한 지급률 조정 필요 · 234
- 3. 직급별 기준단가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인건비 감액 조정 필요 237
- 4.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 구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및 일부 감액 필요 241

[조달청]

I. 예산안 개요 / 251

- 1. 현 황 25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7

II. 주요 사업 분석 / 258

1. 과소계상된 세입예산(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증액 편성 및 일반회계 전출 필요	258
2.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문제점 분석	264
2-1. 자체 집행계획 변경으로 전출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의 조달특별회계 반납 필요	264
2-2. 민·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268
3.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필요성 검토 및 스카우터 성공수당 예산 감액 필요	272
4.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 검토 필요 ..	279
5. 과제형 R&D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예산 감액 조정 및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287
6.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관련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 필요	293

[통계청]

I. 예산안 개요 / 299

1. 현 황	29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0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03



CONTENTS

II. 주요 사업 분석	304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304
2.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내 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313
3. 통계개발원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 필요	319



기획재정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5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73조 22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조 8,382억원(△8.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58조 8,59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5,759억원(11.2%), 공공자금관리기금 4,618억원(△14.8%), 국유재산관리기금 2조 57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3,037억원, 복권기금 7,363억원, 기후대응기금 4,009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396,156,669	395,882,017	362,435,750	△33,446,267	△8.4
- 일반회계	392,390,139	392,666,917	358,859,850	△33,807,067	△8.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66,530	3,215,100	3,575,900	360,800	11.2
기 금	9,730,712	9,978,482	10,586,557	608,075	6.1
-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20	542,143	461,791	△80,352	△14.8
- 국유재산관리기금	1,702,424	1,934,161	2,057,212	123,051	6.4
- 대외경제협력기금	256,881	273,925	303,667	29,742	10.9
- 복권기금	6,448,137	6,827,357	7,362,991	535,634	7.8
- 기후대응기금	323,250	400,896	400,896	0	0.0
합 계	405,887,381	405,860,499	373,022,307	△32,838,192	△8.1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조 50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조 6,806억원(22.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3,47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5조 1,059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366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938억원, 복권기금 5조 1,796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2,869억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1,235,183	5,169,894	6,347,572	1,177,678	22.8
- 일반회계	1,235,183	5,169,894	6,347,572	1,177,678	22.8
기 금	24,251,858	29,199,916	35,702,824	6,502,908	22.3
- 공공자금관리기금	15,461,801	19,226,783	25,105,951	5,879,168	30.6
- 국유재산관리기금	836,241	1,024,357	1,036,609	12,252	1.2
- 대외경제협력기금	1,258,581	1,558,472	2,093,789	535,317	34.3
- 복권기금	4,676,549	4,933,188	5,179,552	246,364	5.0
- 기후대응기금	2,018,686	2,457,116	2,286,923	△170,193	△6.9
합 계	25,487,040	34,369,810	42,050,396	7,680,586	22.3

자료: 기획재정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453조 4,413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조 5,730억원(0.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1조 16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조 4,244억원이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84,667,196	438,715,378	441,016,910	2,301,532	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999,099	11,152,951	12,424,398	1,271,447	11.4
합 계	495,666,295	449,868,329	453,441,308	3,572,979	0.8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2조 7,49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조 7,120억원(21.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조 5,45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9억원이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9,518,422	26,852,966	32,545,172	5,692,206	2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6,334	184,008	203,857	19,849	10.8
합 계	19,934,756	27,036,974	32,749,029	5,712,055	21.1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45조 26억원으로 전년 계획안 대비 108조 7,422억원(24.9%)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322조 8,161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조 2,705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2,087억원, 복권기금 8조 3,580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133억원, 외국환평형기금 205조 1,201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4,158억원이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250,757,562	284,694,615	322,816,058	38,121,443	13.4
국유재산관리기금	2,242,551	2,580,994	3,270,503	689,509	26.7
대외경제협력기금	1,308,158	1,621,131	2,208,746	587,615	36.2
복권기금	7,641,186	7,819,368	8,358,048	538,680	6.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201,887	770,138	813,266	43,128	5.6
외국환평형기금	84,747,641	136,287,466	205,120,149	68,832,683	50.5
기후대응기금	2,046,509	2,486,723	2,415,844	△70,879	△2.9
합 계	349,945,494	436,260,435	545,002,614	108,742,179	24.9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5조 6,35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2,187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728억원이 전출되며,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으로부터 3,175억원의 전입을 받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2조 9,973억원의 전입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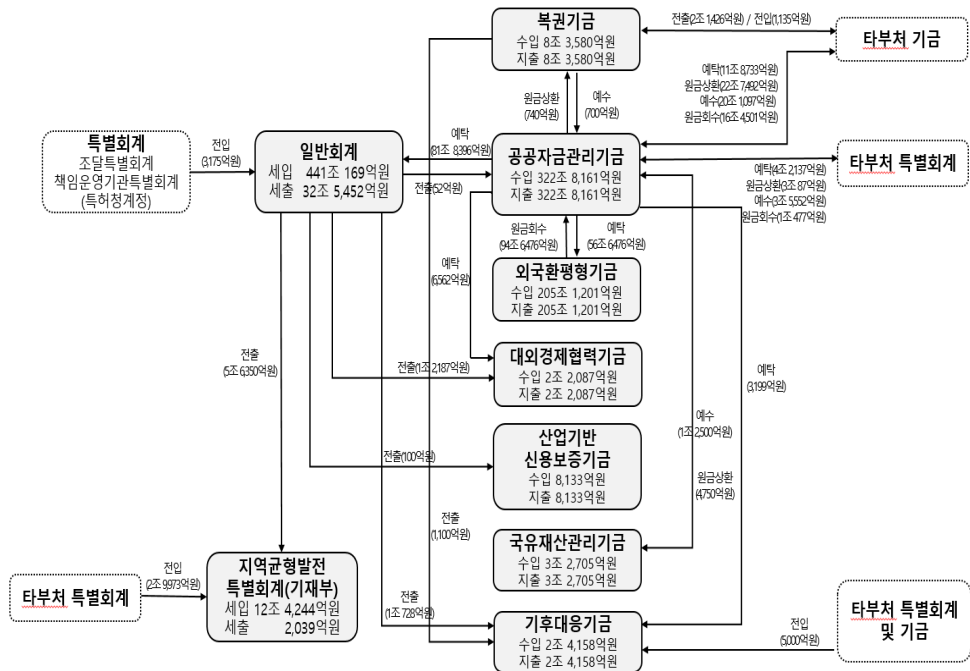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81조 8,396억원, 외국환평형기금으로 56조 6,476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6,562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199억원을 예탁한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4,750억원, 복권기금으로 740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한다. 또한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20조 1,097억원을 예수 받으면서 22조 7,492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한다.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6조 4,501억원의 예탁원금을 상환 받고, 11조 8,733억원을 다시 예탁한다.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는 3조 5,552억원을 예수 받으면서 3조 87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한다.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1조 477억원의 예탁원금을 상환 받고, 4조 2,137억원을 다시 예탁한다.

복권기금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으로 1,100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조 1,426억원을 전출하는 한편,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135억원의 전입을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00억원을 예탁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4조 6,476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2,500억원을 예탁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타부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5,000억원을 전입 받는다.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마.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293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400만원(2.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43명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본부 인건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17,948	126,401	129,375	2,974	2.4
본부 인건비	94,968	102,181	104,175	1,994	2.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기획재정부	1,298	1,255	△43	△3.3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439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300만원(4.8%)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04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2.8%)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334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5,600만원(7.6%) 증가하였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35,068	41,262	43,903	1,163	4.8
총액인건비 대상	8,927	10,147	10,432	285	2.8
총액인건비 비대상	26,414	31,115	33,471	2,356	7.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한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이 재편성되었고 (2023년 미편성 → 2024년 3,492.1억원), ② 예비비가 2023년 4.6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되었으며, ③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등 출연규모가 증액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출연사업이 전년 대비 2,841억원 증액된 4,43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④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으로 국고채 발행 순증분이 감소함에 따라 국고채 발행량도 전년 대비 9.0조원 감소되었으며, ⑤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 규모가 0.01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예비비의 경우 2024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이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및 최근 재해대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황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하는 것으로, 2023년 하반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 및 차환에 따른 금리차 등을 고려할 때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규모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수이자상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융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2.6조원으로 늘었으나 지방채 인수 규모가 수요 예측에 기반하지 않았는바 인수대상 지방채, 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및 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인수 수요를 재예측하고,

과거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하기보다는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여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전년과 동일한 4,00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배출권 경매시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수입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재원없는 지출이월이 발생할 경우 2023년에서 이월된 지출사업에 2024년도 수입 재원을 소모하게 되어 2024년 기금수입 부족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다섯째, 외국환평형기금은 2023~2024년 2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36개 사업, 376억 8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사업은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에 설치된 임시조직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금융투자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 4개가 신설되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는 정부 부처 관련 청사 등의 신축·증축 등을 위하여 26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포함하여 5개 사업이 신설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199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712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836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374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120
국유재산 관리기금 (26개)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청사 신축	4,764
	주세네갈대사관 관저 점유토지 취득	5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 신축	2,154
	법무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신축	1,006
	법무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	7
	행정안전부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	199
	질병관리청 기타시설 취득	728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	5,104
	인천세관 청사 신축	1,824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	63
	경찰청 서울경찰 훈련센터 증축	307
	경찰청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신축	1,800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355
	경찰청 충남 부여경찰서 신축	153
	경찰청 대구청 제1기동대 신축	60
	경찰청 충남청 경찰특공대 신축	123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후생복지관 신축	194
	경찰청 대구경찰수련원 신축	253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촌진흥청 기타시설 취득	495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	513
	해양경찰청 동해청 강릉항공대 격납고 신축	407
	안양세관 통합청사 신축	473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신축	1,195
	천안세관 복합개발 신축	864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	113
	강남통합청사 신축	773
기후대응기금 (5개)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2,000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1,150
	탄소중립분야아이디어거래사업화지원	600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2,275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	2,410
합 계		37,608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시차입금이자상환(일반회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일반회계), 지방채 인수(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대외경제협력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기후대응기금) 등이 있다.

①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은 2022년까지 편성되었다가 2023년 미편성된 사업으로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누적된 국고금운용수익금 외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②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는 금융 제공이 곤란한 국가 소재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기존 재원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2023년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24년 1,000억원을 출자하게 된 것이다. ③ 지방채 인수(융자)는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저리로 인수해주는 것으로 2조 5,9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다. ④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은 전년 대비 87.7% 증가한 6,08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⑤ 기후대응기금의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사업은 1,116억원 증액된 2,58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9개)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305	1,225	920	301.6
	국내조세협력	605	1,027	422	69.8
	일시차입금이자상환	-	349,209	349,209	순증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국고채무부담행위)	-	35,293	35,293	순증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159,348	443,454	284,106	178.3
	대외경제협력력강화	778	1,160	382	49.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특별계정)	-	100,000	100,000	순증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200	1,633	433	36.1
	예비비	4,600,000	5,000,000	400,000	8.7
복권기금 (3개)	복권사업비	4,003,172	4,323,397	320,225	8.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56,754	68,451	11,697	2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58,664	70,138	11,474	19.6
공공자금 관리기금 (3개)	지방채 인수(용자)	10,000	2,600,000	2,590,000	25,900.0
	국고채이자상환	24,811,837	28,409,942	3,598,105	14.5
	기타경비(총괄계정)	45	3,205	3,160	7,022.2
대외경제 협력기금 (3개)	아시아차관(용자)(ODA)	705,400	849,890	144,490	20.5
	아프리카차관(용자)(ODA)	304,852	416,981	112,129	36.8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용자)(ODA)	324,356	608,861	284,505	87.7
국유재산 관리기금 (64개)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2,882	5,440	2,558	88.8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278	4,237	2,959	231.5
	대법원 창원가정법원 신축	927	5,273	4,346	468.8
	대법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21,050	31,100	10,050	47.7
	인권위 인권교육원 신축	3,209	5,380	2,171	6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225	333	108	4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영등포 복합청사 신축(위탁개발 임차료 정부지급금)	457	770	313	68.5
	비축토지매입	80,000	100,000	20,000	25.0
	법무부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3,360	7,089	3,729	111.0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1,610	9,566	7,956	494.2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11,571	28,312	16,741	144.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법무부 태백교정시설 신축	4,525	7,848	3,323	73.4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10,522	38,044	27,522	261.6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	657	1,980	1,323	201.4
	국민소통광장(민원동) 증축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10,882	24,767	13,885	127.6
	행정안전부 국과수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사업	2,820	17,283	14,463	512.9
	행정안전부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	3,559	5,347	1,788	50.2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	2,165	4,984	2,819	130.2
	국가보훈부 청사시설 취득	237	4,021	3,784	1,596.6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1,625	7,146	5,521	339.8
	국세청 관사시설 취득	55	311	256	465.5
	관세청 기타시설 취득	508	2,810	2,302	453.1
	통계청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46	655	309	89.3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3,409	11,761	8,352	245.0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1	159	158	15,800.0
	경찰청 경기남부청 사건기록관 신축	198	442	244	123.2
	경찰청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100	358	258	258.0
	경찰청 강원청 수사동 신축	246	561	315	128.0
	경찰청 종합교육훈련센터 신축	260	608	348	133.8
	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신축	289	674	385	133.2
	경찰청 경북청 경찰특공대 신설 신축	83	470	387	466.3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333	764	431	129.4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631	1,115	484	76.7
	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125	636	511	408.8
	경찰청 충남청 수사동 증축	50	599	549	1,098
	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신축	475	1,106	631	132.8
	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573	1,210	637	111.2
	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163	950	787	482.8
	경찰청 양산동부경찰서 신축	1,003	2,203	1,200	119.6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145	1,618	1,473	1,015.9
	경찰청 해화경찰서 신축	86	1,699	1,613	1,875.6
	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110	2,543	2,433	2,211.8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839	3,404	2,565	305.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경찰청 광주 중부경찰서 신설 신축	3,000	6,355	3,355	111.8
	경찰청 정읍경찰서 신축	4,631	9,105	4,474	96.6
	경찰청 인천남동 경찰서 신축	5,188	12,455	7,267	140.1
	경찰청 여주경찰서 신축	7,775	15,242	7,467	96.0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71,657	104,394	32,737	45.7
	산림청 청사시설 취득	1,581	4,982	3,401	215.1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격납고 시설 취득	409	876	467	114.2
	기상청 국가기상수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1,280	4,848	3,568	278.8
	소방청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1,252	6,553	5,301	423.4
	소방청 기타청사시설 취득	5,438	15,397	9,959	183.1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3,349	7,415	4,066	121.4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4,906	9,666	4,760	97.0
	창원통합청사 신축	252	372	120	47.6
	용인통합청사 신축	279	414	135	48.4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재건축	1,003	1,933	930	92.7
	천안통합청사 신축	1,363	3,000	1,637	120.1
	성남 3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합개발	239	2,378	2,139	895.0
	대전통합청사 신축	19,222	34,400	15,178	79.0
	관악복합관사 신축	1,004	1,493	489	48.7
	부산통합관사 신축	200	3,798	3,598	1,799.0
	국유 일반재산 리모델링	3,362	5,154	1,792	53.3
기후대응 기금 (18개)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61,400	109,500	48,100	78.3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6,350	38,710	32,360	509.6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356	480	124	34.8
	중소기업탄소중립전환지원	5,450	11,305	5,855	107.4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10,350	23,550	13,200	127.5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40,000	50,000	10,000	25.0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 지원	147,000	258,600	111,600	75.9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000	81,000	36,000	80.0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1,000	16,235	15,235	1,523.5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1,600	2,422	822	51.4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90,975	108,333	17,358	19.1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환경교육강화	921	2,144	1,223	132.8
	해양해운목표관리제	440	630	190	43.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국토부)	345	2,320	1,975	572.5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10,223	14,639	4,416	43.2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 (ODA)	12,357	30,102	17,745	143.6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6,699	22,608	15,909	237.5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R&D)	40,996	82,366	41,370	100.9

1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비비¹⁾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비목으로,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²⁾ 및 「국가재정법」 제22조³⁾에 근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확정되는 자금이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억원이 증액된 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예비비	4,704,873	4,600,000	5,000,000	400,000	8.7
일반예비비	1,357,538	1,800,000	2,000,000	200,000	11.1
목적예비비	3,347,335	2,800,000	3,000,000	200,000	7.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칙에서 사용용도를 규정해놓은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069-300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중 목적예비비는 3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중 목적예비비 관련 규정]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예산안」

최근 10년간 예비비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특이 소요⁴⁾를 제외하고는 2014~2019년간 3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본예산까지 3.4조원으로 편성되어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총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예비비가 5.6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2022년 역시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 각각 9.7조원, 5.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등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방역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소요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4.6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4) 2013년에는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규모가 증가하였다.

[2013~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2013	본예산	39,000	11,000	28,000
	추 경	53,290	11,000	42,290
2014	본예산	35,354	12,000	19,564
2015	본예산	30,064	12,000	18,064
	추 경	31,564	12,000	19,564
2016	본예산	31,500	12,000	19,500
	추 경	33,780	12,000	21,780
2017	본예산	30,000	12,000	18,000
	추 경	30,000	12,000	18,000
2018	본예산	30,000	12,000	18,000
	추 경	30,500	12,000	18,500
2019	본예산	30,000	12,000	18,000
	추 경	30,000	12,000	18,000
2020	본예산	34,000	14,000	20,000
	1회추경	44,000	14,000	30,000
	2회추경	44,000	14,000	30,000
	3회추경	55,600	14,000	41,600
	4회추경	56,100	14,000	42,100
2021	본예산	86,000	16,000	70,000
	1회추경	97,000	16,000	81,000
	2회추경	97,000	16,000	81,000
2022	본예산	39,000	18,000	21,000
	1회추경	45,000	18,000	27,000
	2회추경	55,000	18,000	37,000
2023	본예산	46,000	18,000	28,000
2024	예산안	50,000	20,000	30,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회계연도 「예산총칙」을 바탕으로 재작성

1-1. 일반예비비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액된 2조원으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예비비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예비비의 경우 최근 연례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예비비 편성 및 집행 실적을 보면, 2014~2019년간 1.2조원을 유지하였는데 2020년부터 2,000억원씩 증액되어 2023년 1.8조원이 계상되었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2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편성 · 집행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비비	30,500	20,333	30,000	26,901	56,100	54,467	97,000	92,721	55,000	47,049
일반예비비 (집행률)	12,000	11,236 (93.6)	12,000	11,014 (91.8)	14,000	13,239 (94.6)	16,000	14,008 (87.6)	18,000	16,048 (89.2)

주: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각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국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국회에서 총액만을 심의하고 집행 내역을 사후승인하고 있어 일반 예산보다 편성 · 배정 ·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도 중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편성규모 한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제한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등 목적예비비보다 상대적으로 집행재량이 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예비비는 연례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예비비 용도와 유사한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의 편성 및 집행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중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총칙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으며, 2024년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재해·재난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987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⁶⁾의 내역사업인 ‘재난복구 지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1,500억원) 대비 4,500억원 증액된 6,0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⁷⁾는 전년(2,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된 3,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⁸⁾는 전년(200억원) 대비 8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의 ‘하천재해대책비’⁹⁾ 및 ‘재해복구비’¹⁰⁾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지원시기 지연을 방지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각각 2,500억원, 5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5)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코드: 일반회계 2734-300

7)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8) 코드: 일반회계 2331-300

9) 코드: 일반회계 5340-300

10)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7140-300

[2024년도 재해·재난대책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632,152	150,035	600,040	450,005	299.0
	재난복구 지원	632,117	150,000	600,000	450,0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65,039	200,000	300,000	100,000	50.0
해양수산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15,396	16,346	85,000	68,654	42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27,934	20,000	100,000	80,000	400.0
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	-	250,000	250,000	순증
	재해복구비	-	-	50,000	50,000	순증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4년도 부처별 재해대책비 예산안이 2023년 피해에 대해 2024년에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는바, 이러한 예산 편성·집행방식의 변경에는 2023년 세수결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편성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책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단계에서 적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서 목적예비비 지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편성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재해·재난대책사업비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배정 또는 이·전용 등 재원 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원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해·재난대책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각 부처 불용액 및 이·전용을 통해 조달하고 향후 국비 소요액은 2024년도 각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로 편성하여 지출함에 따라 동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입장이다.

2023년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계획 및 농·축·수산 분야 피해 상향·확대 지원(안)”에 따르면, 호우·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중 국비 소요액은 총 1조 2,169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에서 이·전용 등을 통해 3,216억원(26.4%)을 확보하고 8,953억원(73.6%)은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다. 즉, 2024년도 각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9,987억원 중 89.6%인 8,953억원은 2023년에 발생한 피해 복구 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3년 국비 소요분 8,953억원을 제외한 1,034억원은 2024년 발생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추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호우 및 태풍 피해 재난복구비 국비소요액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호우			태풍		
	계	금회	향후 ¹⁾	계	금회	향후 ¹⁾	계	금회	향후 ¹⁾
총계 ²⁾	1,216,910	321,625	895,285	1,177,800	302,174	875,626	39,110	19,451	19,659
행안부	690,893	150,609	540,284	669,299	141,503	527,796	21,594	9,106	12,488
환경부	299,212	57,411	241,801	290,794	51,734	239,060	8,418	5,677	2,741
농림부	105,634	56,747	48,887	103,088	54,201	48,887	2,546	2,546	-
산림청	69,821	5,508	64,313	65,005	5,122	59,883	4,816	386	4,430
해수부	2,205	2,205	-	1,220	1,220	-	985	985	-

주. 1) 향후 국비 소요액은 2024 회계연도 소관 부처별 재난대책비로 지원

2) 제시된 부처 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복구비는 491억원이며, 향후 국비소요액은 없음

자료: 행정안전부

당초 피해복구비 8,953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 발생한 재해 피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이·전용을 통해 소규모 공사비 및 설계비를 배정하고, 차년도에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8,953억원이 올해 지출되지 않게 된다.

예산안 편성 방식의 변경은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¹¹⁾에서 올해 예비비 등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1) 기획재정부는 2023. 9. 11. 2023년말까지 약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정부는 세수결손과 무관하게 재해·재난대책비의 과도한 이월 방지를 위하여 실집행 소요를 기반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 편성방식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2023년도 목적예비비는 2.8조원이며,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23년 집행가능한 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이·전용 등을 통해 소요분을 조달하고 추후 소요분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을 뿐 2023년 9월말 현재까지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재해·재난대책 관련 지출은 그 소요액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신속한 집행을 요하므로, 발생 당해연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용도에 재해대책비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¹²⁾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 조달 문제로 예비비를 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시 2023년 확정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 내에서 재해·재난대책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2023년에 발생한 재해·재난의 피해복구 중 2024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는바, 이러한 예산 편성·집행방식은 재해·재난대책비 편성 취지, 「국가재정법」상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신규편성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2024년도 예산총칙안」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1-3.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2024년도 목적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규모(2020년 4.21조원, 2021년 8.1조원, 2022년 3.7조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4~2019년에 비해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023년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음에도 2023년도 예산보다 증가한 규모이다.

나. 분석의견

2024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이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및 최근 재해대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가 추후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재확산될 경우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 물가 상승 등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의무지출 규모가 증가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증액시켰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종료되었음에도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정병상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 등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이 마련된바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분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정부가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23년 3.3%보다 1%p 낮은 2.3%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급여지급 등 물가에 연동되는 의무지출의 추가 소요를 대비해 예비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2023년 발생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2024년도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에 복구비용을 반영하고 2024년에 발생할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만 계상하는 방식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인바, 이 경우 재해·재난 발생 당해연도에 목적예비비를 배정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목적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소요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재해·재난 대책사업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당해연도에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례도 있다. 산림청의 경우 2022년 예비비 400억 7,200만원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 411억 6,400만원이었으며, 2020년 환경부는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외에 예비비 4,606억 5,600만원을 배정받고 4,666억 9,500만원을 집행한 후 1,158억 1,000만원을 이월한 바 있다. 2024년도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와 같이 편성한다면 예비비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 재해·재난 대책 관련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연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청	산림 재해 대책비	2020	30,000	30,000	3,696	9,469	47,972	91,137	82,889	7,528	719
		2021	180,000	180,000	7,528	32,076 △32,076	-	187,528	185,426	271	1,830
		2022	50,000	50,000	271	11,505 △31,471	40,072	70,377	27,934	41,164	1,279
환경부 ²⁾	-	2020	-	-	12,354	109,495	460,656	570,151	466,695	115,810	-
		2021	-	-	115,810	43,812	29,086	188,708	138,162	-	50,546
		2022	-	-	-	53,088	247,295	300,383	294,016	3,636	2,731

주: 1) 재해대책비는 2022년까지 재해대책비(보조) 사업과 재해대책비(융자)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위 표에서는 두 사업 예산 및 집행비를 단순합한 것임

2) 하천재해복구사업 중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대상 사업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단순합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2024년도 예산안 중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가 전년 대비 9,987억원 증가하였는데, 2023년 국비 소요분 8,953억원을 제외한 1,034 억원은 2024년 발생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추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목적 집행액의 추이를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조원 미만으로 집행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재해대책비 목적의 목적예비비 증액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목적 집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예비비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¹⁾
2018	예산	30,500	18,500	-
	지출결정액	21,214	11,909	2,703
	지출액	20,333	11,236	2,703
2019	예산	30,000	18,000	-
	지출결정액	27,230	15,925	6,692
	지출액	26,901	15,887	6,654
2020	예산	56,100	42,100	-
	지출결정액	55,992	42,056	40,994 (11,743)
	지출액	54,467	41,228	40,167 (11,152)
2021	예산	97,000	81,000	-
	지출결정액	96,996	81,000	58,420 (2,154)
	지출액	92,721	78,713	58,330 (2,150)
2022	예산	55,000	37,000	-
	지출결정액	49,415	15,527	2,964
	지출액	47,049	13,575	2,964

주: 1) 2020·2021년 괄호 안 수치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규모임

자료: 대한민국정부의 각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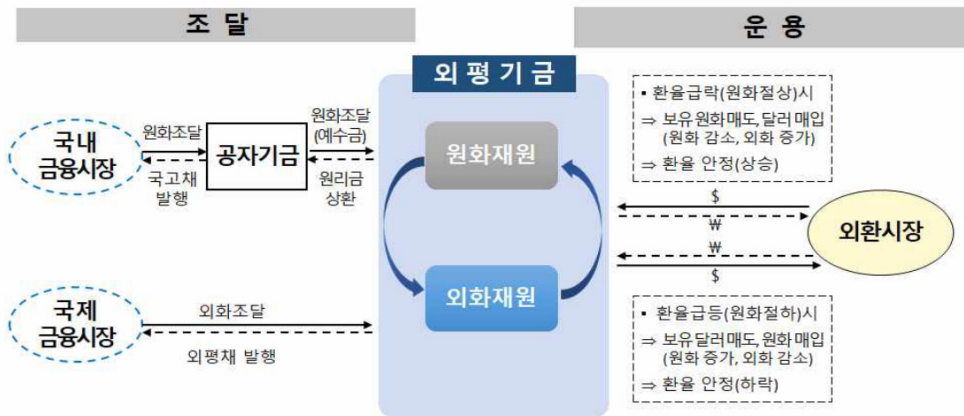
즉, 예비비는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더 커 필요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2024년에는 2020~2022년 대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및 피해 보상 등 예측치 못한 재정지출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2024년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안에 2023년 확정된 피해복구비용 외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용도로 증액 편성된 점, 향후 동 예산 편성방식의 유지 여부 및 최근 재해대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적예비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1. 외국환평형기금 일반 현황

가. 기금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 개요(2023년 기준)]



주: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18조원 한도)을 통해서도 원화재원 확보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확보한 외화자금은 한국은행 예치 또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위탁하여 관리하며²⁾,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이규민 예산분석관(dlrba90@assembly.go.kr, 6788-4623)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안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나. 2024년도 외평기금 계획안 현황

2024년도 외평기금의 수입계획안은 전년 대비 68조 8,326억 8,300만원 증액된 205조 1,201억 4,9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6조 6,475억 5,000만원, 국공채 수입 19조 6,900억원, 법정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1,399억 5,200만원, 정부출자수입(KIC 출자배당금) 567억 2,000만원, 한국은행 등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 125조 9,838억 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 대비 국공채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가 크게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공채 수입의 경우 외화표시 외평채 1조 6,900억원(13억 달러) 외에 원화표시 외평채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발행(18조원 한도)하고, 공자기금 예수금 43.5조원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외평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계획		2024계획안 (B)	증감 (B-A)
		당초	수정(A)		
합 계	84,747,641	136,287,466	136,287,466	205,120,149	68,832,683
공자기금 예수금	27,967,051	55,301,850	55,301,850	56,647,550	1,345,700
국공채 수입	-	3,483,000	3,483,000	19,690,000	16,207,000
법정부담금	119,519	125,007	125,007	139,952	14,945
정부출자수입	117,617	38,040	38,040	56,720	18,680
여유자금 회수	54,600,663	75,485,107	75,485,107	125,983,811	50,498,704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	1,942,791	1,854,462	1,854,462	2,602,116	747,65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외환보유액 운용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사무 처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다음으로 2024년도 외평기금의 지출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94조 6,475억 5,000만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조 9,183억 1,600만원, 국공채 원금 상환 1조 7,150억원, 국공채 등 차입금 이자상환에 1조 1,657억 8,100만원, 기금 운영비로 12억 5,700만원, 여유자금 운용 101조 6,728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 대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여유자금 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의 경우 당초 일정 대비 약 43.5조원을 조기상환하기 때문이며, 여유자금 운용액 증액의 경우 2024년도 외환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024년도 외평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계획		2024계획안 (B)	증감 (B-A)
		당초	수정(A)		
합 계	84,747,641	136,287,466	136,287,466	205,120,149	68,832,683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26,681,460	49,801,850	49,801,850	94,647,550	44,845,700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4,667,782	5,606,219	5,606,219	5,918,316	312,097
국공채 원금 상환	-	1,290,000	1,290,000	1,715,000	425,000
차입금 이자 상환	673,401	754,266	754,266	1,165,781	411,515
기금 운영비	1,029	1,103	1,103	1,257	154
여유자금 운용	52,723,969	78,834,028	78,834,028	101,672,838	22,838,8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외평기금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43.5조원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21년만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으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인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국공채 수입을 분석한다.

2-2.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분석(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가. 현 황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사업³⁾은 외평기금이 원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과 예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중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4조 8,457억원 증액된 94조 6,475억 5,000만원이다.

[2024년도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6,681,460	49,801,850	49,801,850	94,647,550	44,845,700	9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1)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배경·규모 분석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20조 원 내외로 활용하고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겠다고 밝혔는데, 2023년의 경우 정확한 조기상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2024년의 경우 43.5조원을 조기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59.1조원 부족할 것이라 예측하며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재원(24조원 내외), 세계잉여금(4조원 내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23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3~2024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사유로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원화재원을

3)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9110-910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⁴⁾된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여 외평기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는 외환시장 여건,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발표 시 2023년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며,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22년 수립한 「2022~2026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51조 1,475억 5,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수립한 「2023~2026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과거 계획 대비 43조 5,000억원 증액한 94조 6,475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초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규모 대비 확대된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조기상환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⁵⁾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관련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수립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2026 (2022)	26,681,460	49,801,850	51,147,550	35,926,251	40,103,549	-
2023~2027 (2023)	-	49,801,850	94,647,550	35,926,251	40,103,549	10,000,000
조기상환분 추정	-	-	43,500,000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조기상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 외평기금 여유재원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을 뿐, 여유재원의 사용방식,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공자기금 예수금은 예수 시 국고채금리와 일정한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상승하여 공자기금 예수금리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5)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는 외환시장 여건, 외평기금의 시장안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조기상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시 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⁶⁾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⁷⁾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55.3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외평기금의 재정 현황 검토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상환할 경우 외평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예수 등⁸⁾을 통해 확보한 원화재원과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화재원의 감소가 해당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재정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환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정확한 규모, 원화/달러 거래규모 등은 비공개하고 있어 외평기금의 정확한 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①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외환보유고 등을 통해 외평기금의 재정 현황을 현재 시점에서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② 공자기금 조기상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 2023 ~ 2024년 외평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한다.

① 외평기금의 재정 현황 분석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의 각 분기별 순거래액(달러 매수액-매도액)을 해당 분기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고 있으며, 외환당국은 외평기금 외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통해서도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분기별 순거래액을 근거로 외평기금의 외화·원화재원의 변동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외환당국은 총 627.23억 달러를 순매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화재원 역시 상당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 2020년 제2회 추경 시 2.8조원, 제3회 추경 시 1.2조원

7) 외평기금 외에 다른 기금·회계로 해당 재원을 예탁

8) 2024년부터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환보유액은 2020년 1월 4,096.5억 달러에서 2021년 12월 4,631.2억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23년 8월 4,28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20~2023년 분기별 외환당국 분기별 순거래 규모]

대상기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0년 전체
공개시점	2020.6.30	2020.9.29	2020.12.31	2021.3.31	-
순거래규모	△58.51억 달러	△3.45억 달러	0.0억 달러	115.43억 달러	53.47억 달러
대상기간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1년 전체
공개시점	2021.6.30	2021.9.30	2021.12.31	2022.3.31	-
순거래규모	△1.03억 달러	0.0억 달러	△71.42억 달러	△68.85억 달러	△141.3억 달러
대상기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2년 전체
공개시점	2022.6.30.	2022.9.30.	2022.12.30.	2022.3.31.	-
순거래규모	△83.11억 달러	△154.09억 달러	△175.43억 달러	△46.04억 달러	△458.67억 달러
대상기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반기	합계	
공개시점	2023.6.30	2023.9.27	-	-	
순거래규모	△21.0억 달러	△59.73억 달러	△80.73억 달러	△627.23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3년 외환보유액 현황]

대상기간	2020년		2021년	
	1월	12월	1월	12월
외환보유액	4,096.5억 달러	4,431.0억 달러	4,427.3억 달러	4,631.2억 달러
대상기간	2022년		2023년	
	1월	12월	1월	8월
외환보유액	4,615.3억 달러	4,231.6억 달러	4,299.7억 달러	4,283.0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2023~2024년 외평기금의 재정 영향요인 분석

2023~2024년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외에 외평기금의 재정 증가 요인으로는 공자기금 예수와 외평채 발행, 감소 요인으로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외평채 원금 상환이 있다.⁹⁾

먼저 2023~2024년 공자기금 예수 및 예수원금 상환을 검토하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20조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⁰⁾ 2024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은 56.6조원, 상환액은 94.6조원으로, 이에 따르면 예수 대비 상환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38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외평채 발행 및 원금 상환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의 경우 27억 달러 한도(3.5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고¹¹⁾ 1.3조원 수준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상환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외평채의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외평기금의 외화재원은 2.2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13억 달러 한도(1.7조원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고 유사한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상환할 예정으로, 발행과 상환이 상쇄되어 2024년에는 외화표시 외평채로 인한 외화재원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4년 18조원 한도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9)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외평채 이자상환 역시 외평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상환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0) 당초 외평기금은 2023년 공자기금으로부터 55.3조원을 예수받고 49.8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5.5조원이 증가할 예정이었다.

11) 2023.9.7. 5억 달러 규모의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연내까지 22억 달러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외평기금 재정의 증감요인 분석]

구분	합계(A+B)	2023(A)		2024(B)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원화 재원	40조원 감소	-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20조원 내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18조원) 공자기금 예수 (56.6조원)	공자기금 상환 (94.6조원)
외화 재원	2.2조원 증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3.5조원)	외화표시 외평채 상환 (1.3조원)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1.7조원)	외화표시 외평채 상환 (1.7조원)
※ 2023~2024년 중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리하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세수결손 대응, 공자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 예수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2023~2024년 2년간 40조원 가량 감소하고, 외화재원은 같은 기간 외화표시 외평채 순발행으로 2.2조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¹²⁾

(3)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적정성 검토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시 적용되는 예수금리는 공자기금의 자금조달금리인 국고채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외평기금에 적용되는 예수금리 역시 상승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예수금리는 2021년 1분기 1.55%였으나, 2023년 4분기 3.71%까지 상승하였다.

12) 다만 이는 2023년 및 2024년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며, 시장 개입방향에 따라 원화재원과 외화재원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2021~2023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수금리	1.55	1.10	1.28	1.57	1.96	2.18	3.15	3.31	4.04	3.54	3.31	3.71
한도	-	3조원	3조원	4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주: 1. 자금을 예수받는 회계·기금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예수금리라고 기재하며, 자금을 예탁하는 공자기금 기준으로는 예탁금리임

2. 한도는 외평기금이 다른 회계·기금과 별도의 예수금리를 적용받을 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수금의 규모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된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공자기금 예수금의 조기상환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②2023~2024년 외평기금의 재정 영향 요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2023~2024년 2년간 약 40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627.23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원화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환율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원화재원의 보유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p로, 동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 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p, 선진국 0.65%p, 신흥국 0.58%p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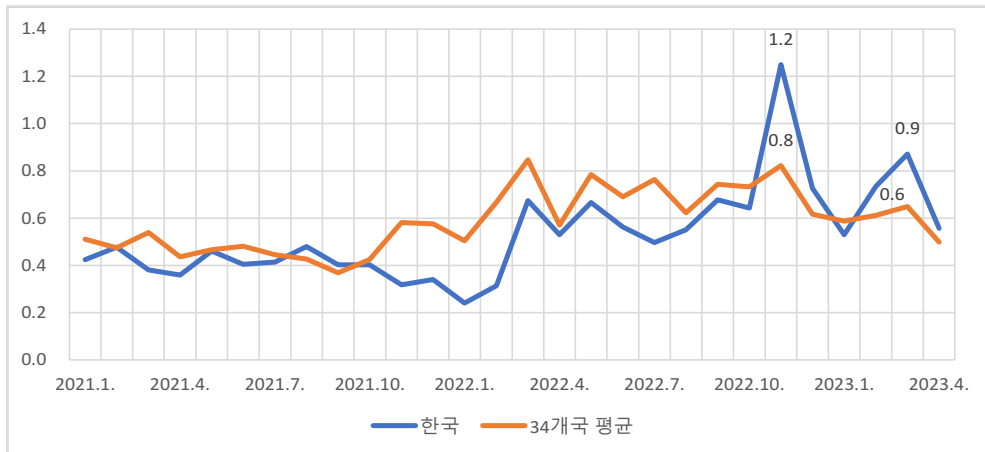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p)

구 분	2020~2021	2022	2023.1~4.
전체(평균)	0.58	0.74	0.60
선진국(평균)	0.56	0.74	0.65
신흥국(평균)	0.59	0.75	0.58
한국	0.51	0.67	0.70

자료: 한국은행

(단위: %p)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 2008년 2월 937.5원까지 하락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월 1,475원까지 상승하였다가 12월에는 1,246원으로 하락하여, 한 달만에 환율이 200원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2년 9월 1,430.5원을 기록한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통화긴축 속도 완화 등으로 인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2023년 1월 1,270원까지 하락하는 등 환율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등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하여 외화 및 원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¹³⁾

13) 참고로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전망(2023년 10월)을 살펴보면 2024년 환율을 1,315원으로 전망하는 기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¹⁴⁾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의 개방성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차원에서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화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유재원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민간부문¹⁵⁾에서도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평기금 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MMF의 환매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유동성 위축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셋째, 외평기금은 2024년 역시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받을 계획이나 2024년 예수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과 공자기금 신규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중 예수금리가 높은 것을 조기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2024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56.6조원으로 계상하고

관(Barclays)도 있는 반면, 1230원(Credit Agricole), 1,180원(ING Financial Markets)으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어 기관별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출처:연합인포맥스)

14) 15시 30분까지인 개장시간을 익일 02시까지 연장

15) 「BondView- 남은 약세 재료와 내년 인하 가능성 점검」, 하나증권리서치센터, 2023.9.7. 등

있다. 당초 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규모가 51.1조원임을 감안할 때, 조기상환과 별도로 공자기금 신규예수(예수-상환)규모는 5.5조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9월 FOMC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인상되거나 2024~2025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¹⁶⁾ 국고채 금리역시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외평기금이 조기상환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의 예수금리보다 2024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로 5.5조원을 예수할 때 적용되는 예수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이자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것보다 공자기금 신규예수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¹⁷⁾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¹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목적인 “원활한 외국환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율·금리 전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16) 국제금융센터의 「9월 FOMC 회의결과 및 평가」에 따르면 2023년 9월 미국 FOMC는 기준금리는 5.25~5.50%로 동결하였으나 2023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5.625%로 0.25%p 추가인상을 전망하였으며, 2024년말과 2025년말 전망치는 5.125%, 3.875%로 과거 대비 0.50%p 상향되었다.

17) 예를 들어 2022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시 적용받은 최고금리는 3.53%였으며 2023 최고금리는 4.04%인데, 2024년 공자기금 예수금리가 그보다 높을 경우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분보다 2024년 공자기금 신규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클 수 있다.

18)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3.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분석(국공채수입)

가. 현 황

국공채수입 사업¹⁹⁾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4년 최대 1.3억 달러의 외화표시 외평채와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국공채수입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국공채수입	-	3,483,000	3,483,000	19,690,000	16,207,000	465.3

자료: 기획재정부

당초 외평기금은 외화표시 외평채와 원화표시 외평채를 모두 발행하여 자체적으로 외화·원화재원을 조달하였으나, 정부는 2003년부터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는 발행하지 않고 공자기금이 국고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재원을 외평기금이 예수하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조달방식을 변경하였는데,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를 18조원 한도로 재발행할 예정이다.²⁰⁾

[2024년도 국공채수입 사업 편성내역]

연도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	3,483,000	■ 27억 달러 × 1,290원/달러 = 34,830억원
2024계획안	19,690,000	■ 외화표시 외평채 13억달러 × 1,300원/달러 = 16,900억원 ■ 원화표시 외평채 180,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19)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20) 2024년 외평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18조원,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 56.6조원을 확보하여 총 74.6조원의 원화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1)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배경

현행 공자기금 예수금리 산정방식은 외평기금의 운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단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짧은 만기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축할 계획으로, 이는 현재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함에 있어 예수금리가 높게 책정되면서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²¹⁾에 따르면 타 회계·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할 경우 예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수금리는 예수 시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와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므로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를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로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의 인상 등으로 인해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가 상승²²⁾함에 따라 외평기금의 예수금리 역시 상승한 상황이다. 2021년 1분기 1.55%였던 예수금리는 2023년 1분기 4.04%까지 상승한 이후 4분기 3.71%로 소폭 하락하였다.

21)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 상기 규정은 공자기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예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을 빌리는 외평기금 기준으로는 예수에 해당한다.

22) 국고채평균조달금리: 2020년 1.38%, 2021년 1.79%, 2022년 3.17%, 2023년 9월 3.52%

[2021~2023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수금리	1.55	1.10	1.28	1.57	1.96	2.18	3.15	3.31	4.04	3.54	3.31	3.71
한도	-	3조원	3조원	4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주: 1. 자금을 예수받는 회계·기금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예수금리라고 기재하며, 자금을 예탁하는 공자기금 기준으로는 예탁금리임

2. 한도는 외평기금이 다른 회계·기금과 별도의 예수금리를 적용받을 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수금의 규모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고채는 2·3·5·10·20·30·50년물²³⁾까지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장기채 권일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체 국고채의 평균조달금리는 2·3년물 등 단기 국고채의 조달금리 대비 높게 설정된다.²⁴⁾ 반면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보유 자산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상품으로 운용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공자기금 예수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외평기금이 필요한 자원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단기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여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2027년간 매년 19조원 수준의 외평채를 발행하고, 2025~2027년간 매년 유사한 규모의 외평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어 원화표시 외평채는 1년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공표만으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²⁵⁾ 등에서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3) 이들 국고채는 원금과 이자가 고정되며, 그밖에도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연동 국고채는 10년물로 발행하고 있다.

24) 일례로 2022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3.17%, 국고채(10년물) 조달금리는 3.22%, 국고채(3년물) 조달금리는 2.93%였다.

25)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추진할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임박하였다는 신호로 작용하여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여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고채 발행량 감소 착시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없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은 공자기금 예수금리는 예수 시 공자기금의 평균자금조달금리와 가산금리(상한 0.10%p)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회계·기금의 성격, 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금리 책정 시 해당 회계·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예탁금리 등) ①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기금(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주: 상기 규정은 공자기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예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금을 빌리는 외평기금 기준으로는 예수에 해당함

자료: 법제처

실제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수금리는 다른 회계·기금 대비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인하 수준(최대 기준)은 2021년 0.63%p, 2022년

0.37%p, 2023년 0.16%p로²⁶⁾, 이는 외평기금이 보유자산 중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환율의 변동성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1~2023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리 인하 수준]

(단위: %, %p)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회계·기금 예수금리 (A)	1.55	1.73	1.91	1.93	2.32	2.55	3.21	3.53	4.04	3.57	3.47	3.81
외평기금 예수금리 (B)	1.55	1.10	1.28	1.57	1.96	2.18	3.15	3.31	4.04	3.54	3.31	3.71
한도	-	3조원	3조원	4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3조원	3조원	3조원	1조원
인하 (A-B)	-	0.63	0.63	0.36	0.36	0.37	0.06	0.22	-	0.03	0.16	0.1

주: 1. 자금을 예수받는 회계·기금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예수금리라고 기재하며, 자금을 예탁하는 공자기금 기준으로는 예탁금리임

2. 한도는 외평기금이 다른 회계·기금과 별도의 예수금리를 적용받을 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수금의 규모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을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 별도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별도발행 시 금리가 공자기금 예수금리보다 낮아야 외평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이 가능한데, 원화표시 외평채와 유사한 규모로 발행되는 국고채 2년물의 경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⁷⁾²⁸⁾

26) 인하 수준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시점의 국고채 조달금리, 발행규모와 같은 공자기금 운용상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2022년 국고채 2년물의 금리는 3.16%(발행규모 15.2조원),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3.17%

28)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를 3.45%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고채 금리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원화표시 외평채의 금리 역시 당초 예상 대비 높아질 수 있다.

②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

첫째, 원화표시 외평채가 통화안정증권 등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를 구축하거나 외평채의 만기가 단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외평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원화표시 외평채는 주로 1년물로 발행될 예정인데, 유사한 만기를 지닌 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존재한다.

통화안정증권은 주로 91일물, 1년물, 2년물이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발행내역²⁹⁾을 살펴보면, 2022년 91일물, 1년물, 2년물은 각각 51회, 36회, 36회 발행되었는데, 낙찰률이 100% 미만이었던 경우는 각각 19회, 17회, 3회였다. 또한 2023년 경우 9월까지 91일물, 1년물, 2년물은 각각 39회, 25회, 27회 발행되었는데, 낙찰률이 100% 미만이었던 경우는 각각 8회, 6회, 0회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내역]

(단위: 조원, 회)

구분	연물	발행액	발행횟수	낙찰률 100% 미만 횟수
2022	91일물	46.1	51	19
	1년물	11.1	36	17
	2년물	36.3	36	3
2023.9	91일물	47.8	39	8
	1년물	8.9	25	6
	2년물	32.8	27	0

주: 정례모집 및 경쟁입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경우 91일물, 2년물 대비 발행액은 크지 않으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 유사한 만기를 지닌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될 경우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³⁰⁾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채 역시 유사한 만기를 지닌 국고채 대비 금리가 높게 설정되고

29) 정례모집 및 경쟁입찰 기준

30)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시 통화안정증권의 만기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논의를 통해 발행물량, 시기, 만기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있는 상황³¹⁾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이 발행될 경우 금융채 시장의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원화표시 외평채를 1년물로 발행할 경우 외평채의 만기 단기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즉, 발행 1년 후 만기가 돌아올 때 외평기금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상환하거나 차환발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채권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거나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예정되어있는 시점에서 외평채의 만기 도래로 대규모 차환발행을 실시할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특정시점에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더라도 만기가 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기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예수할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장기화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감소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화표시 외평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고채 발행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2022년 기준 180.5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2022년 168.6조원, 2023년 167.8조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2024년의 경우 국고채 발행량은 158.8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조원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2024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액 18조원은 제외한 것인데, 원화표시 외평채는 외평기금이 원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중앙정부가 사용할 원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적인 국고채와 만기만 다를 뿐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합하여 발행액을 계산할 경우 2024년 발행액은 전년 대비 9조원 증가한 176.8조원이다.

31) 2023년 9월말 기준 금융채 1년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4.03%, 4.37%, 국고채 1년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3.66%, 3.89%이다. 이때 국고채 1년물은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2020~2024년 국고채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고채 발행액	174.5	180.5	168.6	167.8	158.8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액	-	-	-	-	18
합계	174.5	180.5	168.6	167.8	176.8

주: 2023년은 계획, 2024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리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국고채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하며,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가채무의 분류 기준상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응자산³²⁾ 관리를 강화하여 이자 등 발행비용의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원화표시 외평채는 전체총량 및 발행비용 보전 측면에서의 관리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동 채권은 단기로 발행되어 상환일정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도래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수급여건을 고려한 발행이 필요하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수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의 발행은 「국채법」 제15조³³⁾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한국은행은

32) 한국은행에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된 외화자산을 의미한다.

33)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³⁴⁾한 국고채전문딜러³⁵⁾ 등을 대상으로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고채전문딜러를 두는 것은 이들에게 국고채 발행 시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대신 국고채의 인수·유통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여 국고채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과 유사하게 관련 시스템 구축, 전문딜러 지정 등을 통해 시장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³⁶⁾ 반면 외평기금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수금리를 낮게 설정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고채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³⁷⁾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단기로 발행하여 외평기금의 자금 조달비용을 낮출 계획이나, 현행 규정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우려, 국고채 발행량 감소 착시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발행을 위해서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별도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³⁸⁾

34)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5) 2023년 8월 기준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SC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등 1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36)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4년 2분기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7)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및 고금리 지속기간 등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국제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내에서 국고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고국과 국제금융국으로 이원화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관련 규정에서 '외화국채의 발행'을 담당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채권'을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원화표시 외평채가 외화채권에 포함되는지 일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8) 이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①공자기금 예수규모를 확대하거나 ②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기타 검토사항: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한 외평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해왔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조정함에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외평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적정규모, 운용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3~2024년 2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40조원 수준인데³⁹⁾, 이는 그동안 외평기금이 달러 매도 위주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재원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외에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환당국이 546.5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원화재원을 확보하는 동안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신규예수한 원화재원은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2020~2022회계연도 공자기금 · 외평기금의 예수 ·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공자기금 예수금(A)	42,271,320	39,685,926	27,967,051	109,924,297
공자기금 상환	39,710,237	38,771,079	31,349,242	109,830,558
원금(B)	34,308,200	33,893,026	26,681,460	94,882,686
이자	5,402,037	4,878,053	4,667,782	14,947,872
공자기금 신규예수(A-B)	7,963,120	5,792,900	1,285,591	15,041,611

자료: 기획재정부

즉, 외평기금은 달러 매도 위주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원화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자기금 예수를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였는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평기금으로의 예수를 위해 공자기금이 국고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는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39) 2023년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분 20조원 + 2024년 원화재원 감소분 20조원

으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가 37.6%에서 49.4%⁴⁰⁾까지 증가한 시기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조정 등을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면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기획재정부가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조정한 규모는 8.8조원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제2회 및 제3회 추경 시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각각 2.8조원, 1.2조원 감축하고 2022년의 경우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32.7조원에서 27.9조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023~2024년 2년간 조정하려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과거 3년 대비 4~5배에 달하는 40조원대로, 단기간 내에 원화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외평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화재원의 적정규모, 운용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37.6%에서 2022년 49.4%까지 증가하였다.

가. 현 황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장기간 저리의 양허성 차관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개요]

공적개발원조	주요 내용
정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유형	공적개발원조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구분 -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 - (유상원조)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함
현황	2022년 ODA 규모(잠정치)는 27억 8,600만 달러로 양자간 원조 21억 8,900만 달러, 다자간 원조 5억 9,700만 달러로 구성되며, 양자간 원조 21억 8,900만 달러는 무상원조 14억 9,800만 달러와 유상원조 6억 9,100만 달러로 구성됨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사업¹⁾은 지역 및 분야별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290억 300만원 증액된 2조 31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규민 예산분석관(dlrba90@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

[2024년도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계획		2024계획안 (B)	증감 (B-A)
		당초	수정(A)		
대개도국차관	1,217,604	1,502,976	1,502,976	2,031,979	529,003
아시아차관(융자)(ODA)	464,154	705,400	705,400	849,890	144,490
아프리카차관(융자)(ODA)	304,946	304,852	304,852	416,981	112,129
중동-CIS차관(융자)(ODA)	21,260	131,972	131,972	112,383	△19,589
중남미차관(융자)(ODA)	29,230	36,396	36,396	43,864	7,468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융자)(ODA)	398,014	324,356	324,356	608,861	284,50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695불 이하인 국가가 보건·인프라·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원조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심사, 차관계약, 집행, 사후관리 등의 실무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요건]

구분	내용
지원조건	금리 0.01~2.5%, 상환기간 12~40년 (거치기간 : 3~15년)
지원대상국가	ODA 적격국(1인당 GNI 12,695불 이하) 중 77개국
지원대상사업	교통·전력·보건·교육 등 개도국 경제·복리증진 기여사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분석의견

(1)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경우 복잡한 사업절차와 수원국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절차를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의 계획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와 상이한 방향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을 통한 사업발굴 및 정부간 협의, ②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 ③ 수원국의 공식적 차관신청 이후 수출입은행의 사업심사,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사업승인, ⑤ 수원국과 외교부의 정부간 협정체결, ⑥ 수출입은행과 수원국 간 차관계약 체결, ⑦ 수원국의 컨설턴트 고용 → 구매 →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진행절차]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발굴	◦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의제 또는 후보사업 협의를 위한 사업발굴 미션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 정부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 확정
타당성조사(F/S) 실시	◦ 수원국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사업 건의를 하기도 하며, 수원국에서 요청할 경우 수출입은행 발주를 통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유무 조사
사업 심사 (현지심사 포함)	◦ 수원국의 공식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 의뢰 ◦ 수출입은행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승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교부, 과기부 등 사업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
정부간협정 체결	◦ 수원국정부와 외교부가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체결 단,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체결시, AR 생략
차관계약교섭 및 체결	◦ 정부간 협정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 체결
컨설턴트 고용	◦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구매	◦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와 구매계약 체결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	◦ 수원국 정부가 사업의 공정 이행정도에 따라 자금지출을 요청하면 수출입은행이 집행
사후관리	◦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 ◦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동 사업의 경우 ① 수원국의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②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및 승인, 정부 간 협정 및 차관 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사업의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혹은 부문(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세부사업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세부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중동-CIS 차관	중남미 차관	태평양 차관	민간· 국제기구 협력차관
2020	당초(A)	1,184,879	416,394	229,367	76,872	41,244	142,887	278,115
	계획현액(B)	984,879	328,632	99,485	56,473	22,138	185,310	292,841
	집행액(C)	902,423	324,954	74,279	51,210	20,178	175,349	256,453
	집행률	(C/A)	76.2	78.0	32.4	66.6	48.9	122.7
		(C/B)	91.6	98.9	74.7	90.7	91.1	94.6
2021	당초(A)	1,258,196	438,680	301,583	77,884	47,042	149,271	243,736
	계획현액(B)	1,258,196	230,070	283,767	18,154	18,067	176,656	531,482
	집행액(C)	1,226,658	217,682	275,586	16,111	15,161	173,428	528,690
	집행률	(C/A)	97.5	49.6	91.4	20.7	32.2	116.2
		(C/B)	97.5	94.6	97.1	88.7	83.9	98.2
2022	당초(A)	1,333,423	639,379	319,980	79,531	47,171	-	247,362
	계획현액(B)	1,230,556	464,159	308,175	21,348	37,006	-	399,868
	집행액(C)	1,217,604	464,154	304,946	21,260	29,230	-	398,014
	집행률	(C/A)	91.3	72.6	95.3	26.7	61.9	-
		(C/B)	98.9	100.0	99.0	99.6	79.0	-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에서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과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반영된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주로 대륙별 차관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유상원조를 실시하는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을 증액함에 따라 전자는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게, 후자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아시아차관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72.6%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되면서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160.9%,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99.5% 수준이었다.

2023년 7월 기준 대개도국차관사업은 계획액 1조 5,029억 7,600만원 중 5,424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6.1%이며, 대륙별 차관사업은 모두 집행률이 30% 이하인 반면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은 76.6%이다. 다만 하반기 중 사업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과거와 같이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으로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개도국차관사업의 집행 자체는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기준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대개도국차관	1,502,976	542,469	36.1
아시아차관(융자)(ODA)	705,400	207,394	29.4
아프리카차관(융자)(ODA)	304,852	76,210	25.0
중동-CIS차관(융자)(ODA)	131,972	4,032	3.1
중남미차관(융자)(ODA)	36,396	6,280	17.3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융자)(ODA)	324,356	248,553	76.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중동-CIS 차관사업을 제외한 대륙별 차관사업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모두 계획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각 세부사업별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제고함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2024년도 대개도국차관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계획(A)	2024계획안(B)	증감	
			증감액(B-A)	증감률(B-A/A)
대개도국차관	1,502,976	2,031,979	529,003	35.2
아시아차관(용자)(ODA)	705,400	849,890	144,490	20.5
아프리카차관(용자)(ODA)	304,852	416,981	112,129	36.8
중동-CIS차관(용자)(ODA)	131,972	112,383	△19,589	△14.8
중남미차관(용자)(ODA)	36,396	43,864	7,468	20.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용자)(ODA)	324,356	608,861	284,505	87.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집행까지 평균적으로 2년 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²⁾ 이는 사업승인 이후 차관계약, 컨설턴트 고용, 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절차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수원국의 여건 변화로 집행이 지연된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대륙별 차관사업 중에서 사업승인, 차관신청, 차관계약 단계에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니카라과의 마나과 대중교통 현대화사업,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2차), 콘아일랜드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승인에 해당하는 지원방침 결정 단계로, 향후 정부간 협정, 차관계약,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 경쟁입찰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³⁾

차관신청 혹은 차관계약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도의 위험공유 퍼실리티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항로표지 유지보수선박 구매 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 역시 컨설턴트 선정 및 고용, 경쟁입찰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대규모 집행소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2) 이는 승인 후 집행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차관은 제외한 기간이다.

3)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집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도 대개도국 차관사업 중 사업승인·차관신청·차관계약 단계 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국가	사업명	사업단계	2023		2024 계획안
			계획액	집행액	
인도네시아	항로표지 유지보수선박 구매사업	차관신청	593	-	14,509
가나	지역해양대학(RMU) 현대화사업	차관신청	702	-	2,28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사업	차관계약	119	-	2,702
니카라과	마나과 대중교통 현대화사업	지원방침 결정	1,200	-	907
니카라과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2차)	지원방침 결정	649	-	313
니카라과	콘아일랜드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방침 결정	619	-	282
인도	위험공유 퍼실리티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	차관신청	3,926	-	32,525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 항만 개발사업	차관신청	3,008	-	3,010

주: 2023년 집행액은 7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집행액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계획안의 집행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아시아차관사업의 110개 내역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해당 기간 동안 집행액이 없었음에도 2024년 계획안으로 10억원 이상 반영되어 있다.

[아시아차관사업 중 2022~2023.7. 집행실적이 없는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국가	내역사업명	2022 계획액	2023.7 계획액	2024 계획안
아시아	라오스	문화유적지 소방방재시스템 개선사업	776	2,863	7,133
	몽골	국립환경연구소 확충사업	719	3,171	5,40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대화사업	369	3,965	4,363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59,666	8,067	9,913
	인도	나그부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227,533	11,936	2,648
	인도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12,147	35,938	31,584
	네시아	카리안담 건설사업(보충용자)	53,502	8,508	10,753
	캄보 디아	청정 시엠립을 위한 도시인프라(우회도로 건립) 개발사업	96,550	812	20,896
		청정 시엠립을 위한 도시인프라(하수처리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128,910	977	1,158
		필리핀	해상교통안전 개선사업	139,878	764
	두마게떼 신공항 건설사업		339,058	253	58,879
	합계		-	1,259,108	77,254

주: 2024년 계획안으로 10억원 이상 편성된 내역사업만 기재

자료: 기획재정부

정리하면,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여건변화,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승인 이후 집행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 또는 차관신청 등 사업초기단계임에도 2024년도 계획안이 상당 규모로 편성되어 계획액 전액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A)	156,204	147,292	113,955	315,131	183,061
사업비(B)	1,058,101	1,141,231	1,184,879	1,258,196	1,333,423
비율(A/B)	14.7	12.9	9.6	25.0	13.7
자체변경시점	2018.11.14	2019.12.16	2020.12.16. 2020.12.31	2021.12.15	2022.11.10. 2022.12.19

주: 1.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감액한 후 증액한 금액을 기재함

2. 사업비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당초계획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세부사업간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데, 개도국에 대한 신속한 유상원조의 필요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속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기금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규모가 2020년 1조 1,848억 7,900만원에서 2024년 계획안 기준 2조 319억 7,900만원으로 5년간 약 80%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이 계속될 경우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는 사례 역시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실시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중점협력국 지원 관련 개선방안 분석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통한 효율적 ODA 지원을 위하여 중점협력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중점협력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개도국차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ODA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외교적 관계,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을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7개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점협력국 현황]

대륙	1기(2011~2015) (26개국)	2기(2016~2020) (24개국)	3기(2021~2025) (27개국)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앙아시아 (CIS)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	-	-

주: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외된 나라는 굵게 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개도국차관사업을 통한 중점협력국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2조 4,112억 7,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024년 계획안까지 포함할 경우 총 4조 883억 7,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네팔, 우간다, 페루, 타지키스탄의 경우 3기 중점협력국 지정 이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2024년 중점협력국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대륙	국가	지원액		
		2021~2023	2024	합계
아시아	네팔	0	0	0
	라오스	78,409	65,742	144,151
	몽골	85,567	90,037	175,604
	미얀마	96,381	18,662	115,043
	방글라데시	412,980	47,140	460,120
	베트남	172,938	96,276	269,214
	스리랑카	15,778	3,717	19,495
	인도	0	165,273	165,273
	인도네시아	165,639	180,064	345,703
	캄보디아	211,812	165,601	377,413
	파키스탄	69,536	40,733	110,269
	필리핀	294,022	161,854	455,876
아프리카	가나	61,401	21,969	83,370
	르완다	20,885	29,163	50,048
	세네갈	42,828	15,971	58,799
	에티오피아	177,710	29,605	207,315
	이집트	169,556	166,081	335,637
	탄자니아	90,888	83,752	174,640
	우간다	0	0	0
중남미	볼리비아	6,227	42,342	48,569
	콜롬비아	156,423	0	156,423
	파라과이	59,607	19,067	78,674
	페루	0	0	0
중앙아시아 (CIS)	우즈베키스탄	22,689	102,292	124,981
	우크라이나	0	130,000	130,000
	키르기스스탄	0	1,761	1,761
	타지키스탄	0	0	0
합계		2,411,276	1,677,102	4,088,378

주: 2021, 2022년은 결산, 2023년은 계획, 2024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비중점협력국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5,726억 6,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2024년 계획안까지 포함할 경우 총 8,468억 9,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서 과거 중점협력국으로 포함되었던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솔로몬군도를 제외한 18개 국가에 대한 지원액은 2024년 계획안까지 포함하여 8,118억 6,900만원 수준이다.

[2021~2024년 비중점협력국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대륙	국가	지원액		
		2021~2023	2024	합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2,076	17,741	19,817
	말리	1,388	259	1,647
	모잠비크	21825	22,142	43,967
	시에라리온	7,355	0	7,355
	앙골라	24273	11,474	35,747
	카메룬	31,872	0	31,872
	케냐	32235	23,708	55,943
	코트디부아르	39,075	13,865	52,940
	콩고민주공화국	31,843	0	31,843
	튀니지	0	9,926	9,926
중남미	과테말라	20,477	29,287	49,764
	니카라과	72,995	6,290	79,285
	도미니카공화국	134,885	13,871	148,756
	에콰도르	16,532	18,546	35,078
	엘살바도르	105,716	76,888	182,604
	온두라스	11,404	14,070	25,474
	코스타리카	0	13,287	13,287
중앙아시아 (CIS)	요르단	17,865	373	18,238
	아제르바이잔	849	0	849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	0	2,303	2303
	파푸아뉴기니	0	198	198
합계		572,665	274,228	846,893
소계(과거 중점협력국 제외)		539,944	271,925	811,869

주: 2021, 2022년은 결산, 2023년은 계획 기준, 2024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중점협력국 21개국에 평균적으로 403억 2,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같은 기간 네팔, 우간다, 페루는 지원액이 전혀 없으며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각각 194억 9,500만원, 17억 6,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중점협력국보다 비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비중점협력국 역시 소득수준, 외교적 관계,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유상원조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중점협력국 중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대외채무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개별국가의 여건에 따라 유상원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나, 한정된 재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상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중점협력국 제도의 취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부는 각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지원계획 등에 관한 중장기 ODA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네팔, 우간다, 페루,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역시 인적교류 확대, 천연자원, 신북방정책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협력전략 개요]

국가 (계획수립연월)	전략적 중요성	지원계획	이행전략
네팔 (2022.1)	- 산업·관광 등 분야 인적교류 확대 -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가능성 다대	물관리,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에너지 분야 지원	- 타 공여기관과 원조 조화 - 민관협력 및 유무상 연계 강화 등
우간다 (2023.1)	- 안정적 경제성장 - 천연자원 및 식량 분야 협력 잠재력	지역개발, 교육, 보건 위생 분야 지원	- 민관협력 활성화 - 우간다 주재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 등
페루 (2023.6)	- 안정적 경제성장 - 외교경제분야 협력 - 구미, 아연,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 보유국	공공행정, 환경보호, 보건위생, 교통 부문	- 국제기구와 협력 활성화 - 각 부처별 ODA 사업간 효과성 연계 등
스리랑카 (2022.1)	- 해상물류의 중심지 - 높은 경제성장률	교육, 교통, 물관리, 보건위생, 지역개발 분야 지원	- 타 공여기관과 원조 조화 - 민관협력 및 유무상 연계 강화 등
키르기스스탄 (2022.1)	-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국 - 높은 대외경제 개방도 및 대외 안보협력 참여도	환경, 농림수산, 공공 행정, 보건위생 분야 지원	- 유무상원조 연계 - 민관협력 활성화 등
타지키스탄 (2022.1)	-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국 - 광물자원 및 천연자원 풍부로 높은 성장가능성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 수산, 교통 분야 지원	- 유상개발협력 신규추진 - 타공여기관과 원조 조화 - 인근 ODA 지원국가와 성과공유 등

주: 비중점협력국 대비 2021~2024년 지원액이 적은 중점협력국만 기재함
 자료: ODA 통합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채무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22년 1월 국가협력전략 수립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비중점협력국 대비 지원액이 부족하거나 지원액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대개도국차관 사업이 중점협력국 제도에 걸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부는 3기(2021~2025년) 중점협력국 지정 시 인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더라도 인도와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 7월까지 동 사업을 통한 유상원조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며, 타지키스탄의 경우 유상원조가 이루어진 바 없어 중점협력국 지정과 유상원조 간 연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중점협력국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개도국차관 사업에 따른 지원국가·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관련 분석

2024년부터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높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이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공적개발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국회의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개도국 대상 유상원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845억 500만원 증액된 6,08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개발원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통해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상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입찰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한정하는 구속성 원조⁴⁾의 비율이 대륙별차관사업 대비 낮다.

대개도국차관사업의 2022년 구속성,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살펴보면, 대륙별차관사업은 승인액 기준으로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각각 61.5%, 38.5%인 반면,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각각 38.2%, 61.8%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구속성·비구속성 원조 비율]

구분	대륙별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구속성	61.5%	38.2%
비구속성	38.5%	61.8%

주: 대륙별차관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원국과 국제사회에서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요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유상원조의 60%⁵⁾를 비구속성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반대로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5) 2019년 기준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은 49%이다.

다만 2024년도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전년 대비 5,290억 300만원 증액된 2조 31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이 2,845억 500만원 증액된 6,088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증액분의 50% 이상은 동 사업의 증액에 기인한다.

이처럼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인데, 유상원조의 목적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입지 확보 외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정보공유 등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2023년 9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차관을 공여하겠다는 공여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계획안 1,3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사무소를 운영중인 세계은행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기자재 차관⁶⁾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규모는 민간·국제협력기구차관사업의 21.4%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세부사업 중 상당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상원조에 관한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러시아와의 전쟁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여협정 이후 정책협의 및 차관신청, 현지심사, 지원방침결정, 정부간 협정, 차관계약, 입찰 및 구매, 자금지출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집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유상원조에 대한 국회의 실효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관련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전쟁 등 제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6) 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기자재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가. 현 황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¹⁾ 및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²⁾은 대한민국 정부와 녹색기후기금 간 협정에 근거하여 녹색기후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녹색기후기금의 재원 출연금 2억 달러 중 약속어음으로 출연한 1억 1,600만 달러를 연도별로 현금 지급하기 위한 예산 352억 9,300만원과 올해 하반기 공여협정 체결 예정인 2차 재원보충에 대한 출연금 3억 달러 중 연도별 현금공여 3,326만불에 대한 예산액 45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국고채무부담행위)	10,161	-	35,293	35,293	순증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33,069	42,905	45,500	2,595	6.0

자료: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Operation Entity)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으로, 2010년 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어 설립·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GCF 사무국을 유치(인천 송도)하였으며, 현재 제4기 이사진으로서 활동 중이다.

정부는 GCF 유치국 및 공여국으로서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초기재원 1억 달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133-330

2) 코드: 일반회계 3133-331

러 공여를 약정하였다. 공약 이행을 위해 GCF와 2018년까지 현금공여 5,800만 달러(사무국 운영비 연 100만 달러 포함) 및 2019~2022년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³⁾ 4,200만 달러 발행에 합의하여 2022년까지 1억 달러 출연을 완료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9년 UN기후정상회의에서 GCF 1차 재원보충에 2억 달러 출연을 약정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GCF와 2020~2023년 동안 현금공여 8,400만 달러 및 2024~2027년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 1억 1,600만 달러 발행에 합의하였다.

한편, 2023년 8월말 정부는 제2차 재원보충으로 GCF에 2024~2027년 간 3억 달러를 공여할 것을 선언하고 10월 5일 공여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억 달러의 11.7%인 3,5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455억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GCF 출연 현황(달러 기준)]

(단위: 만달러)

구 분	2012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약정 금액		10,000						20,000				30,000
사무국 운영비	316	100	100	100	100	200	-	-	-	-	-	-
현금 공여	-	1,000	950	1,000	1,050	884	-	422	2,226	2,426	3,326	3,500
약속어음 발행	-	-	-	-	-	4,200	-	-	-	-	11,600	-
(현금화)	-	-	-	-	-	-	1,100	1,100	1,100	900	-	2,900
누적 공여액	316	1,416	2,466	3,566	4,716	10,000	10,000	10,422	12,648	15,074	30,000	33,326

주: 2012~2022년은 결산, 2023년은 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begin{aligned} & \circ 45,500\text{백만원} = 3,500\text{만 달러} \times \text{편성환율 } 1,300\text{원} \\ & \quad - 3,500\text{만 달러} = 3\text{억 달러} \times 11.7\% \end{aligned}$
--

자료: 기획재정부

3) GCF는 미래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발행도 공여로 인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4년도 예산안 중 국고채무부담행위에 1억 1,600만 달러와 함께 1,496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약속어음 발행은 공여협정 상 약정액인 1,411억 7,200만원인바,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 산정 및 제출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0년 기획재정부 - GCF - 세계은행(WB)⁴⁾ 간 공여협정 체결 당시 GCF 1차 재원보충 공여액 2억 달러 중 8,400만 달러는 현금으로, 1억 1,600만 달러는 약속어음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속어음은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환율 1,217원을 적용하여 1,411억 7,200만원을 4년(2024~2027년)에 걸쳐 현금화 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1,411억 7,200만원을 균등분할한 352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다.

GCF에 현금화 조건 약속어음으로 출연하게 되면 차후 재정에서 약정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발행시기에 향후 실제 부담액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1억 1,600만 달러와 함께, 실제 부담액인 1,411억 7,200만원 대신 1,496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2023·2024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채무부담액과 다르게 기재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 제출 당시 약속어음 발행 1억 1,600만 달러에 예산 편성 기준환율인 1,290원을 적용하여 1,496억 4,000만원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약속어음 발행은 공여협정 상 약정액인 1,411억 7,200만원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4) 세계은행(WB)는 녹색기후기금의 수탁기관(Trustee)로, GCF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관련 보고서 작성·제출 등을 수행 중이다.

[GCF 출연 관련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단위: 백만원)

차입 연도	국고 채액	구분	연도별 상환액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2018	47,414	원금	12,418	12,418	12,418	10,160	-	-		47,414
2023	149,640	원금	-	-	-	-	-	35,293	114,347	149,64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5)에 따라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⁶⁾이므로 정부의 채무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산정 및 제출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2차 재원보충 공여예정액 3억 달러 중 2024년도 예산안에 현금공여분 4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지출 중인 1차재원 약속어음 현금화 부담과 2024년 세수여건 상황, 국고채무부담행위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금·약속어음 공여규모 및 출연 스케줄을 논의하고 내년에 공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은 2023년 429억 500만원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455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2차 재원보충액(2024~2027) 총 3억 달러 중 4년간 총 1.4억 달러(3,500억 달러 × 4년)를 현금 공여할 것으로 전제했음을 의미한다. 1차 재원보충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1.6억 달러는 약속어음을 통해 출연하고 2024년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2028년부터 520억원씩 4년⁷⁾에 걸쳐 총

5)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08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⁸⁾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2023~2027	42,905	45,500	45,500	45,500	45,500

자료: 기획재정부

[2차 자원보충 연도별 공여계획(추정안)]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공여 약정액	(만 달러)	30,000				-	-	-	-	30,000
현금공여	(만 달러)	3,500	3,500	3,500	3,500	-	-	-	-	14,000
	(백만원)	45,500	45,500	45,500	45,500	-	-	-	-	182,000
약속어음	(만 달러)	-	-	-	-	4,000	4,000	4,000	4,000	16,000
	(백만원)	-	-	-	-	52,000	52,000	52,000	52,000	208,000

주: 1차 자원보충과 동일하게 현금공여 및 약속어음을 각 4년간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차 자원보충에 대한 약속어음 공여분 1,411억 7,200만원을 상환 약정에 따라 2027년까지 매년 352억 9,300만원씩 상환하여야 하는바, 현 중기재정계획에 따를 경우 2024~2027년 동안 매년 807억 9,300만원씩 총 3,231억 7,2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2027년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2,080억원까지 반영되는 등 GCF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부담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7) 다만, GCF 공여정책은 최장 9년 이내에 공여액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2032년 내 2차 자원보충 공여액을 출연하면 된다.

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은 1,300원/달러이다.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2023~2027	-	35,293	35,293	35,293	35,293

자료: 기획재정부

[1·2차 재원보충 공여협정에 따른 재정부담 스케줄(추정안)]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31
공여약정액	(만 달러)	30,000				-
현금공여	(만 달러)	3,500	3,500	3,500	3,500	-
	(백만원)	45,500	45,500	45,500	45,500	-
약속어음 (1차)	(만 달러)	2,900	2,900	2,900	2,900	-
	(백만원)	35,293	35,293	35,293	35,293	-
약속어음 (2차)	(만 달러)	-	-	-	-	16,000
	(백만원)	-	-	-	-	208,000
연도별 부담액	(백만원)	80,793	80,793	80,793	80,793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예산안에 전제된 것과 같이 2,080억원 규모의 약속어음 발행 및 현금화를 협정내용에 포함하면 약속어음 발행 시점(2028년 예정)에서야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되는데, 기획재정부는 2차 재원보충에 대한 공여협정을 2024년에 GCF 및 WB와 체결할 예정이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제출 시점에는 국회가 현금·약속어음 간 배분과 상환(현금화) 기간에 관해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지출 중인 1차 재원 약속어음 현금화 부담과 2024년 세수여건 상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금·약속어음 공여규모 및 출연 스케줄을 논의한 후 그에 따라 내년에 공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⁹⁾

9) 2020년 1차 재원보충 당시 공여협정은 2020년 8~9월에 체결되었는데, 협정 체결 전 2020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2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22만 달러(174억 4,000만원)으로 감액되고 공여협정에 추정예산액을 반영한 바 있다.

가. 현 황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¹⁾은 IMD·WEF 발표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 증액된 12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데이터 발굴·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과 분석모델 구축 등 경기진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연구비 9억원이 계상되었다.

[2024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82	305	1,225	920	301.6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	-	900	9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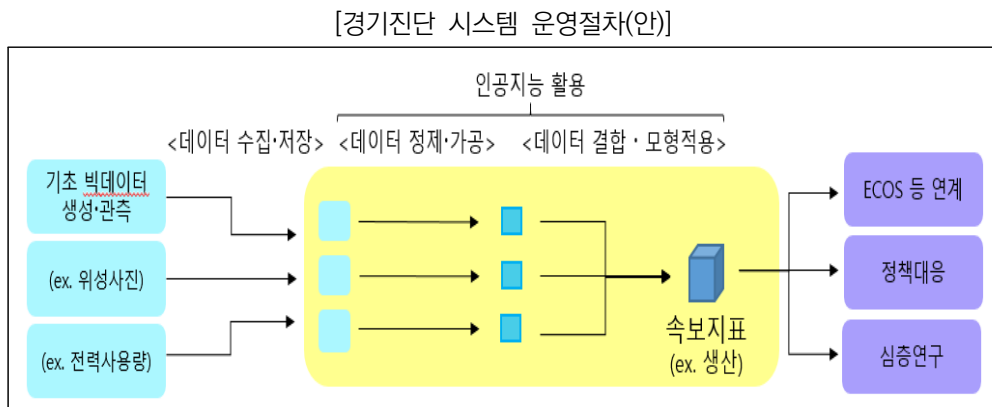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은 한국은행에서 2016년부터 관련 연구 및 경기진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경기진단 시 중요 데이터인 GDP 관련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이 산출·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필요시 속보성 데이터 및 분석내용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한국은행과의 협업체제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은 경기진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및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경기 속보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주요 경제 현안 분석 및 경기진단을 하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용역을 공모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 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속보지표개발 및 경기진단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용역을 맡아 DB 서버구축, 속보지표 개발 및 계량 분석, 주요경제지표 관리 및 심층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 및 분기별 GDP 등 현행 통계는 시차가 길어 경기상황에 대한 조기탐지에 한계가 있는바,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상황에 대해 조기 진단하여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모델을 연구해왔으며 2022년 동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²⁾ 거시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신용카드 데이터, 경제 뉴스기사 기반의 텍스트 자료 등을

2) 한국은행,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nowcasting) 시스템 개발」, BOK 이슈노트, 2022. 3.

포함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소비 Nowcasting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³⁾ 또한 속보성 지표 발굴에 필요한 GDP, 금융·통화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나우(Now)를 통해 전망모형에 포함된 주요 경제지표가 공표되는 시점마다 당분기 GDP성장률 예측을 공표하고 있으며, EU(ECB)·영국·일본·인도 등 타 주요국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시간 경제전망 관련 연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한국은행이 Nowcasting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활용해온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에서야 사전준비를 위한 연구용역⁴⁾에 착수하였으므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델 수준으로 맞추는 데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등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재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과 유사한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기 보다는 필요시 속보성 지표 현황 및 분석내용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동 사업에 편성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운영비용 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은행,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민간소비 예측」, BOK경제연구 제2022-16호, 2022. 9.

4)

(단위: 백만원)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대상	예산액	집행액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경기 진단과 경제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23.6.19. ~2023.12.31.	한국○○ 연구원	50	- (50)

가. 현 황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하 “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된 임시조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¹⁾ 5,800만원과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²⁾ 1억 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관련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	58	58	순증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	102	102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8월말 기준 관리단은 별도정원 5명을 포함한 현원 8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현원 중 기획재정부 5급 2명 및 6급 1명은 기획재정부 본부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111-227

2) 코드: 일반회계 7111-277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구성 현황(2023. 8월말)]

(단위: 명)

별도 정원 (5)			현원 (8)		
기획재정부	3·4급	1	기획재정부	3급	1
	5급	1		5급	3
				6급	1
행정안전부	5급	1	행정안전부	5급	1
보건복지부	5급	1	보건복지부	5급	1
국세청	5급	1	국세청	5급	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2년간만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므로, 별도의 기본경비 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주요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도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의 상시 업무로 규정³⁾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임시조직인 부정수급관리단을 별도 설치·운영하면서 조직운영비 충당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별도 기본경비 사업까지 신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관리단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임시조직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및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과 동일한 세부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 편성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조직은 범부처 차원의 국정과제·사업 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전문성을 가진 다수 부처 인력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이며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임시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기관운영 소요경비인 ‘기본경비’로 임시조직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주요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정수급관리단을

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제외한 기획재정부의 임시조직 운영사업은 모두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를 신설한 것은 동 관리단이 유일하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는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 임시조직과 달리 계속사업을 운용하고 있어 기본경비를 신설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기본경비의 신설이 부정수급관리단의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임시조직 상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시조직인 부정수급관리단 설치 목적을 감안할 때 기본경비로 조직 운영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관리단 운영비는 주요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내조세협력¹⁾ 사업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세정책을 개발하며 개정세법을 홍보하고 BEPS 프로젝트²⁾의 국내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억 2,200만원(69.8%) 증액된 1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국내조세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내조세협력	541	605	1,027	422	69.8

자료: 기획재정부

[2023 · 2024년도 국내조세협력 사업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7월말			2024 예산안(B)	(B-A)
	본예산 (A)	예산현액	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5	605	114	1,027	422
· 국내조세협력	605	605	114	1,027	422
○ 비목별 분류(합계)	605	605	114	1,027	422
· 상용임금(110-03)	80	80	49	82	2
· 일반수용비(210-01)	128	128	32	137	9
· 일반용역비(210-14)	240	240	-	640	400
· 국내여비(220-01)	17	17	3	17	0
· 사업추진비(240-01)	35	35	24	35	0
· 정책연구비(260-02)	90	90	-	70	△20
· 포상금(310-03)	-	-	-	30	순증
· 고용부담금(320-09)	16	16	6	16	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131-308

2)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는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방안으로,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각국에 이행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BEPS 과제를 지속 입법 및 검토하고 있음.

동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은 납세자의 날 행사를 위해 일반수용비 1,000만원, 일반용역비 4억원, 포상금 3,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³⁾ 성실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과거 집행사례에 비추어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실적을 보면,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부포상 전수식 형태로 참석자를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나,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모범납세자, 정부 관계자 등 1,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로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행사비 1억 2,500만원 및 포상금 3,000만원을 집행하였다.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말한다.

[최근 3년간 납세자의 날 행사 추진 실적]

연도	일시	장소	주요 참석인사	참석 인원 규모	집행액 (단위: 천원)	
					행사비	포상금
2021	3.3(수), 14:00	서울 은행회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0명 내외	17,559	30,000
2022	3.3(목), 14:00	서울 은행회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0명 내외	29,876	30,000
2023	3.3(금),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	대통령,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1,000명	125,134	3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에 동 행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세제실)’에 일반수용비 2,190만원, 포상금 3,000만원 및 임차료 등 총 9,190만원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주요사업인 ‘국내조세협력’ 사업에 동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4억원 등 총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3 · 2024년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명	비목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비목명	예산액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세제실)	일반수용비 (210-01)	21,900	국내조세협력	일반수용비 (210-01)	10,000
	임차료 (210-07)	40,000 ¹⁾		일반용역비 (210-14)	400,000
	포상금 (310-03)	30,000		포상금 (310-03)	30,000

주: 1) 임차료는 납세자의 날, 세발심 등 행사·회의 장소 임차료 전체를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행사비 예산안 편성규모는 2023년도 예산 9,190만원의 3.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2023년 집행액 대비로도 2.8배 수준으로 크게 증액되었는데, 정보보호의 날, 발명의 날 등 일부 타 부처의 주관 기념일 행사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감액된 사례도 있는 상황⁴⁾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예산 증가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4)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무역의 날’ 행사 규모와 유사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기관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적절한 사업 집행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검소하게 실시하도록 명시⁵⁾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재정 정상화로 정하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여 폐지·삭감하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관 기념일 행사 관련 예산안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주관부처	기념일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의 날	120	90	△30
해양수산부	바다의 날	300	300	0
금융위원회	금융의 날	80	76	△4
특허청	발명의 날	369	300	△6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의 날	650	530	△12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현 황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중 상속세 세입은 8조 5,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9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여세는 6조 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144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2024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상속세	7,611,302	8,954,600	8,594,700	△359,900	△4.0
증여세	6,982,717	8,172,800	6,058,400	△2,114,400	△25.9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최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관련 규정과 달리 시중금리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상속·증여세를 일괄납부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중금리와 가산금 이자율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세의 일부를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장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경우에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¹⁾ 연부연납을 할 경우 납부세액에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²⁾ 이 때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³⁾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2023년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2.9%로 규정⁴⁾하고 있다.

2021년 이전 가산금 이자율 추이를 보면 매년 1회 적용금리를 조정하여 왔고 시장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2년의 경우 시중 평균금리가 1.19%에서 3.11%로 상승하였음에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1.2%⁵⁾로 유지하였는바, 이로 인해 연평균 금리 기준으로는 0.92%p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2년 3분기 금리차는 3.49%p에 이르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5) 이는 최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및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추이]

(단위: %, %p)

구 분	1년 만기 정기예금 ¹⁾ 평균금리 (A)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B)	(A-B)
2013	2.89		3.4	△0.51
2014	2.53		2.9	△0.37
2015	1.81		2.5	△0.69
2016	1.56		1.8	△0.24
2017	1.66		1.6	0.06
2018	2.02		1.8	0.22
2019	1.85		2.1	△0.25
2020	1.16		1.8	△0.64
2021	(1분기)	0.95	1.2	△0.25
	(2분기)	0.97		△0.23
	(3분기)	1.19		△0.01
	(4분기)	1.66		0.46
	평 균	1.19		△0.01
2022	(1분기)	1.89		0.69
	(2분기)	2.35		1.15
	(3분기)	3.51		2.31
	(4분기)	4.69		3.49
	평 균	3.11		1.91
2023	(1분기)	3.85	2.9	0.95
	(2분기)	3.62		0.72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통화금융통계」) 및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로 인해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특히 2021년에 대규모 연부연납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상당 규모의 기회손실을 발생시켰다.

[2018~2022년 상속세 · 증여세 신고세액 및 연부연납세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귀속 연도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연부연납세액		신고세액		연부연납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8	8,449	3,975,696	1,210	1,736,198	145,139	4,468,521	4,108	1,360,827
2019	9,555	3,672,276	1,406	1,424,896	151,399	4,910,395	3,866	1,200,243
2020	11,521	5,176,495	1,695	2,067,454	214,603	6,852,792	7,232	1,740,045
2021	14,951	20,448,353	2,605	13,657,180	264,274	8,351,445	10,516	2,236,239
2022	19,506	13,725,275	4,756	4,360,501	215,640	6,822,908	9,156	2,032,201

자료: 국세통계포털

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국세환급 또는 상속 · 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하여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연부연납에 따른 기한의 이익 외에도 금리차에 따른 추가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상속 · 증여세를 원칙에 따라 일괄 납부한 납세자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즉, 납세자의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과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¹⁾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자금을 통해 예수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3조 7,815억 4,000만원 증액된 18조 2,658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0,455,761	14,484,321	18,265,861	3,781,540	26.1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18조에서는²⁾ 세출재원을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으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공자기금에서 예탁하고 있으며,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 및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규모만큼을 예탁하고 있다.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은 2022년말 86.2조원에서, 2023년 45.8조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2024년에는 81.8조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김운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133-330

2)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2014~2024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 규모 현황]

(단위: 조원)

회계연도	본예산	최종예산	예수 실적	연말 잔액
2014	27.7	27.7	27.7	200.6
2015	34.2	39.6	39.6	240.1
2016	41.4	36.5	33.0	271.3
2017	28.7	23.4	20.0	289.6
2018	28.8	24.0	15.0	300.4
2019	33.8	36.3	34.3	334.7
2020	60.3	104.0	102.8	437.5
2021	93.5	97.8	88.2	523.1
2022	76.2	91.2	86.2	605.8
2023. 8.	45.8	45.8	42.0	651.6
2024(안)	81.8	-	-	733.5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최근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추이를 보면, 불용액이 2019년부터 1조원 이상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2조원을 초과하였으며, 2023년 8월말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2조 7,827억원을 상환하였다.

[2014~2023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최종예산	지출금액	불용금액
2014	7,765,198	7,765,198	3,712,620	3,971,078
2015	8,707,634	8,779,710	8,757,224	486
2016	12,942,479	12,942,479	12,314,905	627,574
2017	8,035,086	8,035,086	7,696,294	338,792
2018	8,073,022	8,073,022	7,482,137	590,885
2019	8,561,943	8,583,981	7,529,708	1,054,273
2020	9,436,932	9,796,372	8,293,138	1,503,234
2021	10,897,448	10,802,320	9,004,870	1,797,450
2022	12,248,385	12,545,392	10,455,761	2,089,631
2023.8	14,484,321	14,484,321	2,782,665	-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http://www.openfiscaldata.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3년 하반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 및 과거 불용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규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은 기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분과 신규예수에 대한 금리 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 18.3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8.3조원을 산출하였으며, 2023년에 납입해야 할 이자 13.74조원, 2023년 7월말 이후 신규 예수금 7.8조원 및 만기가 도래한 차환 물량 34.1조원에 대한 예수이자 1.68조원, 2024년 신규 예수 81.8조에 대한 이자 1.93조원(7개월분) 및 2024년 차환예수 45.6조원(6개월분)에 대한 이자 0.91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예수금리는 2023·2024년 모두 4.0%로 가정하였다.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내역	규모	기간	금리	예산
□ 총계(①+②+③)				18.3조원
① 既 예수금 확정이자 (‘23.7월 기준)	643.8조원	잔여	확정	13.74조원
② ‘23년 신규 발행(7월말 이후)	41.9조원	1년	4.0%	1.68조원
- 신규분	7.8조원	1년	4.0%	0.31조원
- 차환분	34.1조원	1년	4.0%	1.36조원
③ ‘24년 신규 발행	127.4조원	6~7개월	4.0%	2.85조원
- 신규분	81.8조원	7개월	4.0%	1.93조원
- 차환분	45.6조원	6개월	4.0%	0.9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② 2023년 신규발행 41.9조원에 대해 4.0%의 예수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 및 예탁금리 공고” 내용을 보면 2023년 3분기 일반회계의 예수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는 3.474%, 4분기는 3.813%로, 정부가 적용한 금리 4.0%보다 낮아³⁾ 2023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상환이자 규모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023년 8월 4조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공자기금 예수금 예산(45.8조원) 대비 3.85조원이 남은 상황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리]

(단위: %)

구 분	예수금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	4.043	3.569	3.474	3.813

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지출 및 불용 현황을 보면,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예산의 불용규모가 2019년 이후 최종 예산 대비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분기 예수금리가 예산편성 기준금리인 4%를 초과한 4.043%인 상황에서 신규 예수분 45.8조 원 중 22조원⁴⁾이 예수되는 등 다소 높은 금리에서 예수가 발생했음에도 2023년 7월 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수이자상환을 13.74조원으로 추산하였는바, 기획재정부 추산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불용이 0.74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최종예산(A)	지출금액	불용금액(B)	불용률(B/A)
2018	8,073,022	8,073,022	7,482,137	590,885	7.3
2019	8,561,943	8,583,981	7,529,708	1,054,273	12.3
2020	9,436,932	9,796,372	8,293,138	1,503,234	15.3
2021	10,897,448	10,802,320	9,004,870	1,797,450	16.6
2022	12,248,385	12,545,392	10,455,761	2,089,631	16.7
2023 (안)	14,484,321	14,484,321	13,740,000	744,321	5.1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http://www.openfiscaldata.go.kr>)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2023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신규 예수

(단위: 조원)

구 분	신규 예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2023	4.0	6.0	12.0	4.0	4.0	4.0	4.0	4.0	3.8	45.8

자료: 열린재정 누리집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23년 7월말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해서는 예상금리 4.0%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최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예산 집행 추이 및 2023년 이자상환 실적·추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예수이자상환 예산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¹⁾은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지방채 인수(융자)	7,900	10,000	2,600,000	2,590,000	25,900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는 사업으로, 인수 시 해당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적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한다. 총 인수한도는 총괄계정 기금운용계획상 계상된 규모로, 통상적으로 인수기간은 거치 5년, 원금상환 10년으로 설정한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방채에 대해 2020년(1조 5,566억원), 2021년(1조 9,956억원)에 대규모로 인수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100억원을 계획하여 8월말 기준 43억원을 인수한 상황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매입·인수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계획
지방채	신규매입·인수	-	670	15,566	19,956	79	100
	평균금리	2.69	2.25	1.36	1.44	1.63	1.63
	이자수입	62	40	113	410	587	434
	잔액(연도말)	1,692	2,047	17,501	37,025	35,241	35,210
지방 교육채	신규매입·인수	-	-	-	-	-	-
	평균금리	1.99	2.07	1.94	2.22	1.92	-
	이자수입	645	530	315	298	63	-
	잔액(연도말)	28,374	16,957	15,095	3,683	-	-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과거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하기보다는, 재정여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순채무 증가 수준(2021년 31.5조원 → 2023년 전망치 34.2조, +2.7조원) 및 2024년도 국세수입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를 2023년 100억원에서 2024년 2조 6,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인수 대상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한 것은 2024년도 국세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보통교부세 예산안이 2023년 대비 대폭 감액(66.6조원 → 59.9조원)되는 등 지방이전재원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따른 총 대응지방비 소요는 38.0조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37.7조원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하였다.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재원 감소 및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3년간 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총대응지방비 추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	대응지방비 추계
2022년도 예산안	78,235,722	36,793,951
2023년도 예산안	82,303,626	37,738,676
2024년도 예산안	88,299,014	38,015,275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예산안 첨부서류」

그러나 최근 대규모로 지방채를 인수하였던 2021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인수 비중이 전체의 19.1%에 머무는 등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24년에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위주로 인수될 경우 지방이전재원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동 사업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2021년 지방채 인수 현황]

(단위: 억원, %)

자치단체	2021년	비중
광역	16,142.5	80.9
강원	1,000.0	5.0
경남	1,882.0	9.4
경북	850.0	4.3
광주	1,300.0	6.5
대구	3,624.0	18.2
대전	576.0	2.9
부산	1,813.0	9.1
세종	609.5	3.1
울산	400.0	2.0
인천	2,238.0	11.2
전남	1,000.0	5.0
제주	850.0	4.3
기초	3,813.9	19.1
계	19,956.4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지방채 인수 결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여력 및 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인수 규모를 산정하고, 특히 지방재정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재정여력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다.²⁾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서 전출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법정배분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하되, $\pm 20\%$ 이내에서 기금 등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결과 및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³⁾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

김운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복권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액과 사행심 억제와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제 배분비율이 법정배분비율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등의 경우 법정 배분비율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및 실제 배분비율]

(단위: %)

구 분	법정배분비율		실제 배분비율					
	2004년	2010년 이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안)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35%	35%	35%	35%	35%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13.287	12.956	13.746	13.285	10.370	12.017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10.454	10.620	10.461	9.438	8.705	8.838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6.372	6.372	6.372	6.045	6.213	6.10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6.356	7.627	7.627	7.627	7.581	7.627	6.992
문화재보호기금	-	14.286	14.052	13.574	12.079	14.354	15.572	14.672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16.529	16.080	16.791	15.479	17.087	16.33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14.504	14.504	15.195	17.267	17.267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3.643	4.072	4.607	4.072	4.559	4.00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7.015	7.015	7.015	7.015	7.015	7.0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6.517	7.371	6.107	5.464	5.634	6.74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각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른 2024년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5억 9,100만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
-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원(0.5%) 증액된 1조 401억 5,000만원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2024년도 계획액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이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이 150억 9,800만원으로 증액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4년도 복권기금의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¹⁾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01,244	109,957	109,957	125,055	15,098	13.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3,814	91,450	91,450	91,954	504	0.6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159,758	64,400	64,400	63,513	△887	△1.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4,666	78,907	78,907	72,752	△6,155	△7.8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140,643	158,339	158,339	152,611	△5,728	△3.6
지방자치단체지원	152,750	176,062	176,062	169,863	△6,199	△3.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67,851	176,999	176,999	179,600	2,601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55,253	58,664	58,664	70,138	11,474	19.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40,082	47,205	47,205	41,697	△5,508	△11.7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69,057	72,576	72,576	72,967	391	0.5
합 계	1,055,118	1,034,559	1,034,559	1,040,150	5,591	0.54

주: 1) 수정계획은 7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의 28.0%인 349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복권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운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축소 등을 위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250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복권수익금(2조 9,573억 8,400만원)의 법정배분액 외에 가감조정 및 2022년 법정배분액 정산금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도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산출내역]

-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022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25,055백만원(①+②+③) 배분
- ① 기본배분액: 2024년 복권수익금 × (2,957,384백만원)의 35% 중 12.583%인 130,245백만원
*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② 가감조정: △5,861백만원
- ③ 2022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671백만원
* 정산금 = (2022년 결산상 복권수익금 - 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022년 과학기술진흥
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전출금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⁴⁾에 해당하는 18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액 900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출금의 28.0%인 349억 7,000만원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획되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용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2024년도 복권기금 전출을 활용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안(B)	증감(B-A)
	당초(A)	수정		
합 계	109,957	109,957	125,055	15,098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09,957	109,957	125,055	15,098
①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781	4,781	3,711	△1,070
② 과학영재양성	14,363	14,363	14,463	100
③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R&D)	14,000	14,000	12,664	△1,336
④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3,996	3,996	3,876	△120
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4,000	4,000	776	△3,224
⑥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	1,380	1,380	-	△1,380
⑦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1,501	1,501	-	△1,501
⑧ 연구산업기반조성	1,460	1,460	1,460	-
⑨ 과학문화확산사업	15,538	15,538	14,767	△771
⑩ 과학문화육성	2,500	2,500	-	△2,500
⑪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1,530	1,530	-	△1,530
⑫ 여성과학기술인인육성지원	18,934	18,934	18,844	△90
⑬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678	5,678	5,024	△654
⑭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7,000	7,000	6,500	△500
⑮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4,760	4,760	-	△4,760
⑯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	1,500	1,500	1,500	-
⑰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사업	5,000	5,000	5,000	-
⑱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디지털콘텐츠제작확산	-	-	1,500	1,500
⑳ 여유자금운용	2,036	2,036	34,970	32,934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21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 대비 전출금이 많아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계상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이를 지적함에 따라 2021·2022년에는 여유자금운용으로 편성된 금액을 복권기금에서 미전출하여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여유자금 운용 중 208억 7,400만원을 감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용 및 감액이 있었음에도 2024년에 여유자금 운용금액 349억 7,000만원이 재차 계상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보유하게 되는 복권기금 여유자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으로 매칭되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인 금액으로, 2023·2024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복권기금 사업 성격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사업 예산으로 활용(이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을 지출하는 것은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 및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는 2020년 327.3억원, 2021년 480.4억원, 2022년 616.9억원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 558.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⁵⁾ 2024년에는 358.1억원 증가한 916.7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0 계획	2021 계획	2022 계획	2023 계획(A)	2023 계획안(B)	증감(B-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728	48,041	61,692	55,861	91,671	35,810

주: 각 연도 최종계획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⁶⁾이 있어 심의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⁷⁾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였으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을 종료하고 1개 사업을 신설하는 데 그쳐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지는 않았다. 또한, 202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위탁계획이 없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은 비통화금융기관예치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세수여건 악화로 국세수입이 2023년도 국세수입(400.5조원) 대비 △8.3%인 367.4조원으로 예상되고 2024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88.1조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와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

5)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지적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208억 7,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비통화금융기관예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다.

6)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25~29

7) 코드: 과학기술진흥기금 1744-402

법」상 법정한도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여유자금운용액을 감액하여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중장기적으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본 배분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나⁹⁾ 각 기금 및 기관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9) 2004년 법 시행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 동일한 상황이다.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 중 35%는 법정배분하고, 그 외 복권기금 중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¹⁾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인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전출²⁾ 사업 계획안은 2023년도 수정계획액 956억 4,600만원 대비 143억 9,700만원 증액된 1,10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후대응기금 전출	-	90,975	95,646	110,043	14,397	15.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코드: 복권기금 8924-889

나. 분석의견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이 복권기금 공익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초과 전출금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³⁾ 사업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열·창호·보일러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에서 복권기금 전출금을 재원으로 지출되는 유일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2023년도 수정계획액 995억 9,900만원 대비 87억 3,400만원 증액된 1,08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70121	90,975	99,599	108,333	8,734	8.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사업을 위한 2024년도 복권기금 전출금은 지출 계획액을 초과하는 1,10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복권기금이 기후대응기금에 지출계획안 대비 17억 1,000만원을 과다 전출하게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용도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 예산 규모만큼 기금 재원을 전출 또는 보조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전출금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동 초과 재원은 복권기금의 용도가 아닌 기후대응기금 내 타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중 과다 편성된 초과 전출금 계획액 17억 1,0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3)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401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¹⁾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집행 및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전체 지원분야 선정,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등 기금사업을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16개 부처(2024년도 계획안 기준)에서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을 실제 집행하는 이원 구조이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4,158억 4,4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계획액 2조 4,867억 2,300만원 대비 708억 7,900만원(△2.9%) 감액된 규모이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기후대응기금	2,046,509	2,486,723	2,491,394	2,415,844	△70,879	△2.9

자료: 기획재정부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3-1.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액의 적정성 검토

가. 현 황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4,15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인 배출권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1,494억 4,900만원 감액되었고, 교통시설특별회계·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및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액은 전년과 동일하며, 복권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2023년도 당초 계획액 대비 각각 190억 6,800만원, 473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 한편, 여유자금 회수에 해당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액이 121억 8,900만원 신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항목			2023		2024		
			당초 (A)	수정 (B)	계획액 (C)	(C-A)	(C-B)
합 계			2,486,723	2,491,394	2,415,844	△70,879	△75,550
자체 수입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배출권 매각대금	400,896	400,896	400,896	-	-
내부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에너지· 환경세(7%)	1,222,255	1,222,255	1,072,806	△149,449	△149,449
	특별회계 전입금	교통시설특 별회계	300,000	300,000	300,000	-	-
	기금전입금	전력산업기 반기금	200,000	200,000	200,000	-	-
		복권기금	90,975	95,646	110,043	19,068	14,397
	기금예수금	공공자금관 리기금	272,597	272,597	319,910	47,313	47,313
보전 수입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12,189	12,189	12,18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출권 매각대금이 전년과 동일한 4,00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배출권 경매시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수입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 관련 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배출권 매각대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 등²⁾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면서 발생하거나,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 공급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2항³⁾에 근거하여 매각대금 전액이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에 계상된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배출권 매각대금은 유상할당배출권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과 예비분대여상환료로 구성된다. 먼저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은 3,907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430만톤 공급을 목표로 예상단가를 2022년도 평균 공급단가인 24,000원/톤으로 하고 낙찰률을 67%로 설정한 데서 기인한다. 한편, 예비분 대여상환료는 10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2024년도 배출권 매각대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목) 수입 산출근거]

◦ 400,896백만원 =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 390,744백만원 + 예비분 대여상환료 10,152백만원 *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 = 공급량 2,430만톤 × 공급단가 24,000원/톤 × 낙찰률 67%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실적이 2022년에는 계획액 대비 43.6%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역시 8월말 기준 당초 매각 계획액 대비 12.8%에 불과하다. 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목표공급량 2,060만톤의 40.3%인 830만톤만 공급되었음에도 수요 부족으로 53%인 437.9만톤만 낙찰되었으며, 평균 공급단가는 계획기준 대비 42.8% 수준인 11,564원/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에 따른 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천ton, %, 원/ton)

구 분	2022			2023			2024 계획
	당초 계획 (A)	결산 (B)	(B/A)	당초 계획 (C)	8월말 실적 (D)	(D/C)	
유상할당배출권 매각대금	730,584	316,714	43.4	389,330	50,581	13.0	390,774
- 공급량	25,800	23,236	90.1	20,600	8,300	40.3	2,430
- 낙찰률	100	58.7	58.7	70	53	75.7	67
- 공급단가	28,317	23,243	82.1	27,000	11,564	42.8	24,000
예비분 대여상환료	-	2,112	순증	11,566	663	5.7	10,152
- 물량	-	268	-	600	316	52.7	-
- 단가	-	7,881	-	19,260	2,098	10.9	-
계	730,584	318,826	43.6	400,896	51,244	12.8	400,896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2023년 들어 유상할당배출권 낙찰가격이 하락하자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2023년 5월 및 6월 경매시장 휴장 조치를 단행하였다. 7월 경매가 재개되고 공급물량을 늘렸으나 오히려 응찰률은 30%대로 낮아졌으며, 낙찰가격도 하락하여 8월·9월에는 8,100원/톤으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2023년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단위: 톤, %, 원/톤, 백만원)

연	월	입찰수량	응찰수량	비율 ¹⁾	낙찰수량	낙찰가격	총 낙찰금액
2023	1	1,000,000	643,000	64	643,000	12,900	8,295
	2	1,000,000	642,000	64	642,000	12,750	8,185
	3	1,000,000	699,400	70	694,400	12,700	8,819
	4	1,000,000	806,500	81	806,500	13,200	10,646
	5	-	-	-	-	-	-
	6	-	-	-	-	-	-
	7	2,150,000	798,500	37	795,000	10,350	8,228
	8	2,150,000	798,000	37	798,000	8,100	6,464
	9	3,070,000	942,000	31	942,000	8,100	7,630
	10	3,070,000	958,500	31	946,200	10,500	9,935
계		14,440,000	6,287,900	31	6,267,100	10,883	68,202

주: 1) 비율은 (응찰수량/입찰수량)임

1. 2023. 5월, 6월 휴장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금을 2022년 실적 3,167억 1,400만원보다도 많은 3,90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최근 경매시장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수입계획액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가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및 선물 시장 도입, 배출권 이월제한⁴⁾ 완화(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 3배) 및 한국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중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는 2023년 9월에 도입되었는바, 아직까지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정책이 경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월제한을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로 제한하고 있었던 2022년의 경우 낙찰가격이 1월 35,250원/톤에서 12월 14,700원/톤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거 실적 및 현재 유상할당 경매 추이를 감안할 때 2024년도 수입계획안에 편성된 매각대금의 수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4) 배출권 이월제한 제도는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은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남은 배출권 이월규모를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재원없는 지출이월이 발생할 경우 2023년에서 이월된 지출사업에 2024년도 수입 재원을 소모하게 되어 2024년 기금수입 부족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2023년 8월말 기준 기금수입은 2조 1,478억원, 기금지출은 1조 9,887억원으로 기금수지는 1,591억원 흑자이다. 그러나 일반회계·특별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이미 계획액이 전액 수납되었기 때문에 향후 기금 수입은 기금전입금 297억원 외에는 배출권 거래대금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대금 수입은 8월말 기준 수입계획액 대비 12.8%로, 9월 수입(76억 3,000만원) 수준이 유지된다면 12월 말까지 305억 2,000만원이 추가 수납된다. 이 경우 기금수입은 약 2조 1,783억원으로서 지출이 수정계획과 같이 2조 4,914억원 전액 집행될 경우 3,131억원 부족하므로 결국 일부 사업에서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

재원없는 지출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가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⁵⁾에 반하는 것이나 기금의 경우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보다는 다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원없는 지출 이월로 인해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차년도 지출규모가 확대되므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월된 지출계획에 다음연도 재원을 소모하므로 재원없는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금별 지출사업 집행에 있어 수입재원 없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 첫 해부터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⁶⁾했을 뿐만 아니

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없는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재원없는 이월액	불용액
기후변화협약대응	12,114	12,114	12,114	12,013	50	50	51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	27,587	23,172	23,172	19,088	3,648	2,748	436
그린뉴딜유망기업100	23,700	23,700	23,700	21,200	2,500	2,500	-
탄소중립전환수도프로젝트응답지원	150,000	91,200	91,200	55,200	36,000	36,000	-
지역에너지센터지원	5,000	4,500	4,500	685	841	841	2,974
합 계	218,401	154,686	154,686	108,186	43,039	42,139	-

자료: 기획재정부

라,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곤란할 경우 지속적으로 재원없는 지출 이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금 수입의 추계정확도를 제고하고 수입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출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없는 지출 이월 발생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수입과목 편성 필요

가. 현 황

2023년 8월말 기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실적을 보면, 기타민간이자수입 9억 8,1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 79억 5,200만원, 배출권 매각대금 외 보조금·출연금 정산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 29억 2,500만원⁷⁾, 연기금투자폴 운용수익 등 기타재산이자외수입 7억 5,900만원 등이 수납되었다.

[기후대응기금 수입 수납 실적 및 2024년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안
		당초(A)	수정	8월말(B)	집행률 (B/A)	
총 계	204,650	248,723	249,394	214,761	86.4	241,58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38	-	-	9,692	순증	400,896
- 기타민간이자수입	251	-	-	981	순증	-
- 기타재산이자수입	3,187	-	-	7,952	순증	-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759	순증	400,896
별금몰수금및과태료	70	-	-	45	순증	-
- 과태료	70	-	-	45	순증	-
변상금및위약금	-	-	-	1	순증	-
- 위약금	-	-	-	1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318,842	400,896	400,896	54,169	13.5	-
- 기타경상이전수입	318,842	400,896	400,896	54,169	13.5	-
융자원금 회수	900	-	-	360	순증	-
- 민간융자원금 회수	900	-	-	360	순증	-
정부예금 회수	-	-	-	22,668	순증	12,189
- 비통화금융기관예금회수	-	-	-	22,668	순증	12,189
전입금	1,263,154	1,813,230	1,817,901	1,788,230	98.6	1,682,849
- 일반회계 전입금	763,154	1,222,255	1,222,255	1,222,255	100.0	1,072,806
- 특별회계 전입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00.0	300,000
- 기금전입금	200,000	290,975	295,646	265,975	91.4	310,043
예수금	460,105	272,597	272,597	272,597	100.0	319,910
- 기금예수금	460,105	272,597	272,597	272,597	100.0	319,910

자료: 기획재정부

7) 기타경상이전수입 541억 6,900만원 중 배출권 거래대금 512억 4,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나. 분석의견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용자원금상환 및 이자수입 등이 계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수입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이자·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⁸⁾ 또한, 용자사업의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 용자원리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액의 과오지급 시 반납이 이루어진다. 이 때 반납액 등은 기금의 수입에 계상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중 보조·용자·이차보전 및 사업출연금 관련 계획액은 2023년(당초) 1조 4,536억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조 3,6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기후대응기금 내 보조·융자 이차보전 계획액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계획(당초)	2023계획(당초)	2024계획안
합계	1,216,717	1,453,581	1,362,151
기타민간융자금	200,000	245,000	256,600
민간경상보조	402,540	375,236	317,646
민간자본보조	115,074	292,104	279,218
자치단체경상보조	52,859	56,759	26,053
자치단체자본보조	324,139	279,947	236,322
이차보전금	14,250	26,250	20,708
사업출연금	107,855	178,285	225,60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22년 기금 신설 당시부터 보조·융자·이차보전·출연금이 편성되어 2022 회계연도부터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등이 수납되었음에도 2024년도 수입계획안을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배출권 매각대금이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목으로 전환되었을 뿐, 보조금·융자금 및 각종 정산금액이 기타민간이자수입⁹⁾, 기타재산이자수입¹⁰⁾, 기타경상이전수입¹¹⁾ 등의 수입목에 편성되지 않았다.

보조금·출연금 반납금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은 정산 및 융자기간 만료 등에 따라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기금수입에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정산 및 원리금 회수 의지를 제고하고 기금 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인다. 타 기금 역시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있다.¹²⁾

특히,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수입이 전년 대비 12.1조원 감소한 612.1조원이고 국세수입 역시 전년보다 33.1조원 감소한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후대응기금에 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을 추산하여 수입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차외 수입을 의미한다.

10)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차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예치 이차수입, 세입·세출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차수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11) 연체료 및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1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기타경상이전수입은 56개 기금에 7억 6,406억원, 기타민간이자수입은 27개 기금 6조 3,797억원, 기타재산이자수입은 64개기금 30.0조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8개 기금 1조 9,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13-3.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 편성 필요

가. 현 황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액은 2조 4,158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규모이다. 총 16개 부처에서 144개 사업(인건비·기금운용비, 예수이자상환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는 제외)을 수행 중이며, 사업수행부처 기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8,169억 800만원) 소관 지출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환경부(7,998억 2,100만원), 국토교통부 1,654억 8,800만원 순으로 지출계획이 크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중 사업수행부처별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부처	2022결산	2023당초	2023수정	2024계획안
총	2,046,509	2,486,723	2,491,394	2,415,844
법무부	5,674	6,754	6,754	-
산업부	474,561	683,201	687,872	816,908
환경부	534,055	825,213	825,213	799,821
국토부	262,466	252,034	252,034	165,488
산림청	265,081	227,598	227,598	162,232
기재부	30,138	34,805	34,805	134,168
중기부	123,067	145,310	145,310	108,220
금융위	145,000	90,000	90,000	84,000
과기부	128,456	120,304	120,304	66,029
고용부	21,484	30,410	30,410	28,489
해수부	29,632	35,673	35,673	23,808
행안부	21,838	28,821	28,821	19,758
농림부	4,433	4,868	4,868	4,868
기상청	-	876	876	876
특허청	-	-	-	600
새만금청	624	356	356	480
소방청	-	500	500	9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안의 안정성이 낮고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할 경우 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어, 과거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및 사업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후대응기금 지출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집행을 또는 실집행률이 낮거나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행을 및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대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된 사업에 대해 계획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360억원의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8월말 기준 계획현액 1,830억원 중 917억원만이 교부되고 실집행은 445억원(48.5%)에 불과하여 향후 예산 집행이 불투명함에도 2024년에 2,586억원이 계획되었다.¹⁴⁾

13) 2023년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 중 2024년 계획액이 증액되거나 동일 규모인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 수행 부처	2023			2024	증감	
		계획 (당초) (A)	8월말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안 (C)	(C-A)	(C-A) /A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부)	4,500	0	0.0	4,500	0	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산업부)	6,350	209	3.3	38,710	32,360	509.6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 범산단 구축	(새만금청)	356	110	30.9	480	124	34.8
산업은행출자 (녹색금융)	(금융위)	50,000	20,000	40.0	50,000	0	0
습지보전관리	(환경부)	31,624	15,163	47.9	32,393	769	2.4

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2023년 8월말 기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제외) 전년대와 동일하거나 증액계획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27~131 참고

[2023년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4년도 계획액이 증액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 수행 부처	2023				2024	증감	
		계획 (당초) (A)	8월말 교부현액 (B)	실집행 액 (C)	실집행 률 (C/B)	계획안 (D)	(D-A) (D-A) /A	(D-A) /A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지원	(중기부)	5,450	5,450	89	1.6	11,305	5,855	107.4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환경부)	45,931	14,343	2,328	16.2	47,435	1,504	3.3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산업부)	1,600	1,200	368	30.7	2,422	822	51.4
탄소중립전환선도 프로젝트유자지원	(산업부)	147,000	91,770	44,538	48.5	258,600	111,600	75.9

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2023년 8월말 기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사업별 실집행률도 감안하여 2024년도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환경부의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2023년 8월말 기준 교부액 대비 15.6%, 계획액 대비 7.9%를 실집행하였으며, 이차보전지원금은 실제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신규취급액에 대한 이차보전 집행가능성 및 그에 따른 계획액의 적정규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¹⁵⁾

1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41~144 참고

[2023년 교부액 대비 실집행이 저조한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 수행 부처	2023				2024	증감	
		계획 (당초) (A)	8월말 교부액 (B)	실 집행액 (C)	실 집행률 (C/B)	계획안 (D)	(D-A)	(D-A) /A
청정수소 활용수소 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환경부)	1,000	1,000	0	0.0	16,235	15,235	1,523.5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환경부)	1,800	1,012	3	0.3	693	△1,107	△61.5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지원	(중기부)	5,450	5,450	89	1.6	11,305	5,855	107.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191,052	191,038	7,246	3.8	127,517	△63,535	△33.3
산업계순환경제 기반구축	(산업부)	11,892	10,047	1,355	13.5	9,782	△2,110	△17.7
녹색정책금융활성화	(환경부)	24,250	12,250	1,911	15.6	18,708	△5,542	△22.9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환경부)	45,931	14,343	2,328	16.2	47,435	1,504	3.3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중기부)	30,003	1,530	394	25.8	28,505	△1,498	△5.0
도시생태축복원사업	(환경부)	21,830	14,465	4,128	28.5	15,717	△6,113	△28.0

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2023년 8월말 기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계획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경우, 동 펀드의 출자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9월말 기준 약 1,000억원의 자펀드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2024년도 계획액이 1.8배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정부 출자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⁶⁾

한편, 사업목표 및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의 계획액에 대해서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일부 사업대상지는 타당성재조사 시행 예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024년도 계획안에 3차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¹⁷⁾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45~148 참고

1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36~140 참고

이와 같이 2024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의 집행절차·사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저조하여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 계획액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거나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타 기금·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¹⁸⁾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 2조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해당되어 세출용도에 부합하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며,¹⁹⁾ 2023년부터는 공익사업으로서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게 되므로 기후대응기금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²⁰⁾의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주 가능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 및 산업 전환 지원 등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타 이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²¹⁾·‘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²²⁾ 사업은 지원대상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에 해당하지만 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성이 없어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²³⁾

한편, ‘도시생태축복원사업’²⁴⁾ 및 ‘습지보전관리’²⁵⁾의 경우 각각 환경개선특별

18)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401(사업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1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23~126 참고

20)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1-500(사업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301(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22)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302(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23)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3. 8.

24)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3-401(사업수행기관 - 환경부)

회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로 이관되어 집행되었으나,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의 목적은 도시 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자생·고유종 재정착 유도, 도시의 쾌적성 증대 및 도시의 자기치유 능력 복원이며, 습지보전관리 사업의 목적은 주기적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한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이므로, 기후대응기금보다는 본래 편성되었던 환경개선특별회계²⁶⁾에 계상되는 것이 목적상 적절하다고 보인다.

즉, 기후대응기금 내 세부사업의 성격이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인 경우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하여 기금 지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25)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3-403(사업수행기관 - 환경부)

26)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에어컨 설치 지원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¹⁾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열·창호·보일러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3억 5,800만원 증가한 1,08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계획현액		B-A	(B-A)/A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70,123	90,975	99,599	105,730	108,333	17,358	19.1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일반 저소득가구나 아동·노인·장애인이용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천서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한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 가구별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실사 후 창호·단열·바닥공사 등의 시공을 하거나 노후보일러 교체와 같은 물품지원,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지원대상 가구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시공 및 물품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동 사업의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는 330만원이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21년까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는 2024년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 등 총 3.6만 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시공·물품을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401

지원하기 위해 90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에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계획안에 155억원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 산출 내역]

구분	집행 내용
시공·물품 지원	· 3.6만 가구 × 243만원 + 250개소 시설 × 11백만 = 90,230백만원
냉방지원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1.8만 가구 × 75만원 + 500개소 시설 × 4백만원 = 15,500백만원
에너지진단	· 사업효과 분석 및 진단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실태조사 등 500백만원
사업운영비	· 현장점검, 콜센터 운영 등 1,023백만원
인건비	· 사업수행전담인력 20명 인건비 1,08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냉방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구별 지원금액 및 지원가구수를 확대하며 전년 대비 173억원 증액된 1,083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전년 대비 지원 가구수가 감소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계획현액 868억 9,800만원 중 106억 4,300만원을 불용하고, 61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다. 불용은 동 사업의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2023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에너지 복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²⁾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2~2023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액				보조사업자 실집행액(2023년 8월 기준)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86,898	70,121	6,131	10,646	70,121	-	86,898	69,432	6,131	10,643
2023	99,599	60,975	-	-	60,975	6,131	105,730	39,345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냉방지원과 시공·물품 지원으로 구분된다.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시공·물품지원이 전년 대비 46억 8,700만원(5.5%) 증액되었으며, 냉방지원은 전년 대비 41억 4,500만원(36.5%) 증액되어, 냉방지원 예산이 2023년에 비해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의 주요 내용별 현황]

(단위: 만호, 백만원, %)

구분		2023(A)	2024(B)	증감	
				B-A	(B-A)/A
시공·물품 지원	지원가구수	3.43	3.6	0.17	5.0
	예산	85,543	90,230	4,687	5.5
냉방 지원	지원가구수	1.51	1.8	0.29	19.2
	예산	11,355	15,500	4,145	36.5

주: 지원가구수는 저소득층가구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인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은 2023년도 수정계획액 956억 4,600만원 대비 143억 9,700만원 증액된 1,10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냉방 지원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중 시공·물품지원은 주택의 상태, 시공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공이 불가하여 실제 지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냉방지원의 경우 지원요건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선호도가 높아 많은 수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안은 냉방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5%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2~2023년 지원 현황]

(단위: 가구, 개소)

연도	냉방지원 (저소득층 가구)			시공·물품지원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신청	지원	지원율
2022	13,495	10,017	74.2	51,151	29,444	57.6	424	326	76.7
2023	16,417	15,140	진행중	46,043	34,385	진행중	259	190	진행중

주: 2023년은 8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9조3)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고 있다. 냉방지원을 통한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에어컨 지원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주된 용도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냉방지원 중심으로 2024년도 계획안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수입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¹⁾은 철강, 정유, 시멘트 등 12대²⁾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및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16억원 증가한 2,58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안(B)	증감	
		계획(A)	계획현액		B-A	(B-A)/A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55,200	147,000	183,000	258,600	111,600	75.9
용자	54,000	145,000	181,000	256,600	111,600	76.6
이차보전	1,200	2,000	2,000	2,000	0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용자지원 예산 2,566억원과 이차보전지원 예산 20억원으로 구성된다. 용자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계속 용자액 666억원과 2024년 신규 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용자액 1,90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차보전지원 예산은 2022년 및 2023년에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이차보전 계속 지원액 2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400

2) 12대 업종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섬유·제지, 전기·전자, 기계, 조선, 바이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의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계획안
용자지원	2022년 선정 프로젝트 3차년도 지원 (6,600백만원) · 11개사×600백만원=6,600백만원 2023년 선정 프로젝트 2차년도 지원 (60,000백만원) · 12개사×5,000백만원=60,000백만원 2024년 신규 선정 프로젝트 지원 (190,000백만원) · 38개사×5,000백만원=190,000백만원	256,000
이차보전	2022년 선정 계속 프로젝트 지원 (1,200백만원) · 2개사×600백만원=1,200백만원 2023년 선정 계속 프로젝트 지원 (800백만원) · 2개사×400백만원=800백만원	2,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에서는 용자지원의 경우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원 또는 R&D 자금 100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기업별 프로젝트 비용 중 용자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의 용자지원 계획]

구분	내용
지원대상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업
지원조건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R&D 자금 100억원 이내
지원비율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지원기간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대출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차감 적용 (1년 변동금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360억원의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8월 기준 계획현액 1,830억원 중 917억원만이 교부되어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도 계획안은 기후대응기금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2년 결산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을 1,500억원에서 912억원으로 588억원 감액 변경한 이후, 계획현액 912억원 중 552억원을 집행하고, 360억원을 재원없이 이월하였다. 2023년에도 8월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360억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1,830억원 중 917억 7,000만원을 교부하고, 이 중 445억 3,8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8월 기준)			
	계획		집행	이월	계획	계획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전체	150,000	91,200	55,200	36,000	147,000	183,000	91,770	44,538
용자	150,000	90,000	54,000	36,000	145,000	181,000	91,770	44,538
이차보전	0	1,200	1,200	0	2,000	2,000	0	0

주: 실집행액은 2023년 8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3년 2월 이후 신규 용자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2년 용자추천서 발급 이후 재원부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청건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금 요청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3년 3~4월에 총 917억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 및 교부된 이후 8월까지 추가 자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부된 예산 918억원 중 실집행된 금액이 445억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교부액 및 실집행액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3년 용자 자금 교부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3	자금요청액	0	0	24,650	67,120	0	0	0	0
	자금배정액	0	0	24,650	67,120	0	0	0	0
	용자금신청액	0	1,242	14,226	5,277	19,326	879	1,279	3,624
	용자금요청액	0	145,000	0	67,120	0	0	0	0
	용자금교부액	0	0	24,650	67,120	0	0	0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재원없는 이월로 2023년 계획현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23년 8월 기준으로 계획현액의 50.1%만이 교부 되어 2023년에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재원없는 이월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도 계획안이 전년 대비 1,116억원 증가하여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4년 에도 재원부족으로 인한 불용이나 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도 수입 계획안은 전년 대비 708억 7,900만 원 감소한 2조 4,15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2022회계연도 결산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주된 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2년 결산 기준 7,631억 5,400만원보다 많은 1조 728억 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주요수입 내용	2022			2023	2024
		당초	수정	결산	수정	계획안
기타경상이전수입	유상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수입 등	730,584	447,639	318,842	400,896	0
일반회계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	1,076,635	763,154	763,154	1,222,255	1,072,806
특별회계전입금	교통회계 전입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금전입금	전력 및 복권기금 전입금	200,000	200,000	200,000	295,646	310,043
합 계		2,459,423	2,170,897	2,046,509	2,491,394	2,415,844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은 2023년 7~8월에 실시된 2024년도 용자 수요 조사에서 총 129건, 1조 1,365억원 규모의 용자 수요가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용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24년도 계획안을 전년 대비 1,116억원 증액된 2,58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용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이 지속될 경우 용자 수요에 대응한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교부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¹⁾은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쏠주기 지원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원 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123억 5,700만원 대비 177억 4,500만원 증액된 30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탄소중립·그린국제개발협력(ODA)	4,478	12,357	30,102	17,745	143.6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 추진되었으며, 22년도 신규사업 3개 과제의 3차년도 사업비 65억 8,300만원, 23년도 신규사업 5개 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203억 5,800만원, 24년도 신규사업 3개 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31억 6,100만원 등 총 301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그린ODA	총계 30,102
	- '22년 신규사업 3차년도 사업비×3개 사업(6,583백만원)
	- '23년 신규사업 2차년도 사업비×5개 사업(20,358백만원)
	- '24년 신규사업 1차년도 사업비×3개 사업(3,161백만원)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기후대응기금 6131-621

나. 분석의견

2022년도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이 당초 예측 대비 장기간 소요되어 실시설계 일정이 지연되었고, 2023년도 9월말 현재 공사비 실집행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2024년도 2차년도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3개 과제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개 과제는 2022년도 1차년도에 협의의사록 체결을 바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는 계획 하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DA사업 첫 해임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이 6월 및 11월 등으로 당초 예상 대비 지연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22년 10월 및 '23년 2월 등으로 지연 체결되었다.

[2022년도 신규과제의 사업 진행경과]

구분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협의의사록 체결	실시설계 용역기간	공사 발주
우간다 부수쿠마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및 역량강화사업	22~25 (81억원)	'22년 11월	23.2~11.	11월 예정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 위생개선 및 사막화 방지 사업	'22~'25 (73억원)	22년 11월	23.3~10.	11월 예정
라오스 세방하양 하천유역기후적응형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2~'24 (66억원)	'22년 6월	22.10~24.10.	(발주) 23. 7. (용역) 23.9~24.12

주. 라오스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설계비 및 공사비가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집행됨
자료: 환경부

이에 2022년도 예산의 실집행률은 2.1%에 불과하였고, 동 예산이 2023년도에 이월 집행됨에 따라 2023년도에 1차년도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시설계 용역이 10월~11월 완료되므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 발주를 11월부터 실시하여 연내에 공사용역을 체결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022년도 신규과제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9월말			2024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안
우간다 부수쿠마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및 역량강화사업	1,098	40	3.6	2,300	0	0	2,683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 위생개선 및 사막화 방지 사업	484	28	5.8	3,457	15	0.4	2,000
라오스 세방히양 하천유역기후적응형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396	15	0.6	2,300	150	6.5	1,900

주. 몽골 사업의 1,500만원은 부지 등 현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기관, 코디네이터 협약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라오스 사업의 1억 5,000만원은 역량강화 및 공사착수 보고회 비용으로 집행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3년도 연말에 공사용역이 체결되는 경우 1차년도 편성된 공사비 중 선금이 집행될 예정이고, 당초 계획 대비 공사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당초 수립한 계획의 연차별 예산소요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공사 지연에 따라 2차년도 편성 공사비가 전액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지연상황을 감안하여 동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수립한 신규과제 연도별 예산소요금액]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총사업비
우간다 부수쿠마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및 역량강화사업	1,098	2,300	2,683	2,019	8,100
몽골 울란바토르시 게르 위생개선 및 사막화 방지 사업	484	3,457	2,000	1,319	7,260
라오스 세방히양 하천유역기후적응형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396	2,300	1,900	-	6,596

자료: 환경부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우간다 및 몽골 사업 지원) 및 한국수자원공사(라오스 사업 지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체 발주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²⁾,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³⁾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지연에 맞추어 해당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환경공단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 요청('22.9.27, '22.10.4) 하였으나, 같은법 제3조제3항 [별표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제입찰 적용 불가함을 통보('22.10.26) 받고 자체발주로 진행하였음.

3) 제34조(적용범위)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기후대응기금)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비 감액 필요

가. 현 황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¹⁾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64억 9,900만원 대비 122억 6,500만원 증액된 18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200	6,699	22,608	15,909	237.5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200	6,499	18,764	12,265	188.7

자료: 환경부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의미하며, 정제과정을 거치면 메탄 순도가 95% 이상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도시가스 공급이나 발전, 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폐자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시설 설치사업비 ① 2022년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예산 104억 5,500만원, ② 2023년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비 예산 53억원, ③ 2024년도 신규 8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24억원 등 총 18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23의 내역사업

[20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 '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30-03, 환경부) : 18,154백만원 · 계속사업(8개소) : 15,754백만원(연부율 평균 89.45% 반영) · 신규사업(8개소) : 2,400백만원, 300백만원/개소(평균) 2)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 관련 자문회의, 정책설명회 등 운영 수용비(210-01, 환경부) : 10백만원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25~) 대비 연구(260-01, 환경부) : 600백만원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 필요, 사업 재추진 검토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024년도 3차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서울시+고양시, 청주시, 순천시, 구미시+칠곡군으로 이 중 서울시+고양시, 순천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사업으로, 청주시와 구미시+칠곡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2년 사업대상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고양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2022년 8월부터 추진되었으나 2023년 3월 사업부지 등에 관한 고양시 및 서울시 간 협의 필요에 따라 '23년 8월말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총사업비가 1,784억 7,000만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순천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완료되었으나, 총사업비가 1,695억 5,300만원에 해당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면제 곤란 통보를 받았고, 타당성재조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환경부 및 순천시는 타당성재조사 진행 또는 사업 취소 후 사업범위를 광역화하여 재진행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및 구미시의 경우 민자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제3자 공고를 2023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으며, 제안공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도 시범사업지 4곳 사업 진행경과]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유형	'23년 추진현황	총사업비
서울시+고양시	재정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22.8.~) * '23.3.~ 용역중지(관계기관 협의 필요) · 고양시 협의 중(사업부지 등) · 타당성재조사 시행 예정	178,470
순천시	재정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23.4.) · 예비타당성 면제 곤란 통보('23.8, 기재부) * 사업 계속추진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진행 필요 · 타당성재조사 진행 또는 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중	169,553
청주시	민자	· PIMAC(민자 적격성 검토) 완료('23.6.) · 제3자 공고문 심의 및 공고 예정('23.10~)	185,235
구미시+칠곡군	민자	· PIMAC(민자 적격성 검토) 완료('23.1.) · 제3자 공고문 심의 완료 및 공고('23.9~)	186,654

주. 총사업비는 표준사업비(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시설용량)에 따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지침에 따른 시설용량별 표준단가로 산정한 사업비)에 따라 잠정 산정한 후, 향후 설계 결과 및 재원협의 절차에 따라 확정

자료: 환경부

동 사업지의 2023년도 편성예산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면제 곤란을 통보받은 서울시 및 순천시의 경우 실집행액이 0원이고, 제3자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청주시 및 구미시의 경우에도 2023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0원이다. 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제3자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 일부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및 순천시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진행 및 사업취소 후 재진행 등이 확정되는 경우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각 사업지별로 편성하였다.

[2022년도 시범사업지 4곳의 예산 집행내역(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유형	23년예산 (실집행액)	'24년 예산	비고
서울시+고양시	재정	1,325 (0)	2,613.75	·고양시-서울시간 사업 부지 협의 필요 ·타당성 재조사 진행 예정
순천시	재정	1,325 (0)	2,613.75	·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 추진방향 검토중
청주시	민자	1,325 (0)	2,613.75	
구미시+칠곡군	민자	1,325 (0)	2,613.75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계속사업비 편성 시 모두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평균사업비 (552억원²⁾)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내역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편성방식은 각 사업지별 추진경과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방식에 해당하므로, 환경부는 각 사업지별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고양시, 순천시의 경우 2023년도 편성예산도 전액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도에도 타당성재조사 진행 및 관계기관 간 협의 등으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2개 사업지의 편성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³⁾

참고로, 2023년도 신규로 선정된 4곳은 대전, 김제, 김해, 남양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에도 2024년도에 일률적으로 설계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각 사업지별 집행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1만Nm³/일 이상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총사업비 평균 금액 산정치

3) 환경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지 2곳은 제3자 제안공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2024년 초에 기본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시협약안 검토 및 심의절차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2023년도 이월예산 및 2024년도 편성예산이 집행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3년도 신규사업지 4개소 진행경과(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유형	'23년 추진현황	'23년 예산 (실집행액)	2024년 편성예산
대전	재정	지방재정투자심사(23.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23.9.~'24.7.)	300 (300)	1,325
김제	재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3.9.~'24.3.)	300 (0)	1,325
김해	재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23.10.~)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예정('23년 4분기)	300 (0)	1,325
남양주	민자	민자적격성 검토('20.7.~'22.4.) 예비타당성면제검토('21.6.~'21.8., 결과:면제) 제3자 공고문 심의 및 공고 예정('23.10~)	300 (0)	1,325

주: 1. 대전, 김제는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2. 김제, 김해, 남양주는 '23.10~12월 중 편성예산 집행 예정

자료: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 이차보전 금리우대 차등 지원 강화 필요

가. 현 황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¹⁾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신설·증설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시한 대출이나 보증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242억 5,000만원 대비 55억 4,200만원 감액된 18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녹색정책금융활성화	600	24,250	18,708	△5,542	△22.9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2022년도(1차년도) 계속 지원 확정액에 대한 이자 지원액 30억 3,200만원, ② 2023년도(2차년도) 계속 지원 예상액에 대한 이자 지원액 66억 2,600만원, ③ 2024년도 신규 대출규모 2조원을 전제한 신규 이자지원금액 90억 5,000만원 등 총 18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은행에서 출시한 녹색금융상품의 금리와 일반 금융상품 금리간의 평균 이자차이 추정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대금리의 5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며,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1

[2024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산출) 18,708백만원 ① 2022년도(1차년도) 계속 지원 확정액 : 3,032백만원 ② 2023년도(2차년도) 계속 지원 예상액 : 6,626백만원 * 6,626백만원 = 7,321억(대출실현 예상액) × 1.81%(실제지원 평균금리) × 50% ③ 신규이자 지원 : 9,050백만원 = 2조원규모 × 1.81%(평균이자차이추정액) × 50%(정부 부담분) × 6개월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차보전지원금은 실제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대출실행액 추이를 고려하여 신규취급액 2조원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신규 대출규모를 5조원(2022년도) 3.52조원(2023년도) 2조원(2024년도)로 매년 축소하고 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이자비용이 대출 집행 이후 대출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규모가 예산 집행 및 편성의 대상이 된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대출 승인액 및 실현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도에는 총 8,359억원이 승인되었으나, 2,893억원이 실제 대출되었고, 이차보전금은 5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3년도는 8월말 기준 신규 대출 2조 2,605억원이 승인되었으며, 대출실행액은 1조 2,197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023년도 신규 승인사업 중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9,326억원에 해당하고, 2,870억원은 전년도 승인된 건 중 신규 대출액에 해당한다. 2023년도 이차보전지원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19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2023년도 예산 242억 5,000만원 대비 7.9%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도 신규 이차지원규모를 9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의 신규 대출 승인건 중 대출실행이 2조원까지 이루어져 6개월의 이자비용이 발생함을 전제한 것이다. 8월말 기준 대출실행액은 9,000억대에

불과한바 현재의 대출 추이를 고려할 때 환경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도 신규취급액 2조원 기준으로 편성된 이차보전지원금액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

[2022년 및 2023년도 대출 승인 및 실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취급은행	신청		승인		대출실행액		이차보전금집행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22	합계	18	835,900	18	835,900	11	289,327	11	589
	산업은행	17	832,900	17	832,900	10	286,727	10	579
	신한은행	1	3,000	1	3,000	1	2,600	1	10
2023 8월	합계	11	2,260,500	11	2,260,500	16 (11)	1,219,673 (932,600)	21 (6)	1,911 (172)
	산업은행	6	1,042,500	6	1,042,500	10 (6)	710,773 (424,100)	16 (3)	1,785 (65)
	신한은행	5	1,218,000	5	1,218,000	6 (5)	508,900 (508,500)	5 (3)	126 (107)

주: 1. 2023년도 2022년도 승인사업 및 2023년도 승인사업에 이차보전지원금이 모두 지원되었으며, 0는 2023년도 신규승인사업에 대한 지원분
 2. 2023년도 이차보전금 예산액 242억 5,000만원 대비 8월말 기준 실집행은 7.9% 해당
 자료: 환경부

둘째, 취급은행별 중소/중견/대기업에 적용하는 이차보전 금리우대폭이 큰 폭으로 차이므로,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이차보전 금리우대폭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8월말 기준 동 사업에 따른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다.

산업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평가등급(A-B등급) 및 기업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 금리우대차이는 0.1%p,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차이는 1.1~1.2%p로 설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환경부는 '23년 8월말 기준 대출실행액(1조 2,197억 원)이 '24년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한 규모(7,321억 원)보다 증가하여 '23년 대출기업 계속지원분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고, '23.9월 취급 금융기관을 4개소(국민은행, 농협 추가 협약)로 확대하여 2024년도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기업별 이차보전율 차이]

(단위: %p)

구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급			
	A등급		B등급	
	우대금리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2.6	1.3	2.4	1.2
중견기업	2.5	1.25	2.3	1.15
대기업	1.4	0.7	1.2	0.6

주. 우대금리는 대출금리 결정 시 감면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자료: 환경부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온실가스 예상 감축비율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며, 중소/중견/대기업간 0.2%p씩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중소/대기업은 0.4%p, 중견/대기업은 0.2%p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 기업별 이차보전율 차이]

(단위: %p)

구분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감축 비율)					
	10% 이상		5%이상~10% 미만		5% 미만	
	우대금리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0	1.5	2.8	1.4	2.6	1.3
중견기업	2.8	1.4	2.6	1.3	2.4	1.2
대기업	2.6	1.3	2.4	1.2	2.2	1.1

주. 우대금리는 대출금리 결정 시 감면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목적이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다는 점, 중소중견기업은 자금조달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국가 재정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폭이 적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이차보전 금리우대폭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¹⁾은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450억원 대비 360억원 증액된 8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0,000	45,000	81,000	36,000	80.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4년부터 벤처·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아이디어 단계인 초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펀드 2개, 성장사업화단계를 지원하는 펀드 1개, 사업확장단계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1개 등 4개 펀드 조성을 위해 총 81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총계: 81,000
	- 초초기 엑셀러레이터 펀드 6,000(3,000(3억*10개사)*2개
	- 사업화 펀드 45,000 (15억*30개사)*1개
	- 스케일업 펀드 30,000 (50억*6개사)*1개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0

나. 분석의견

동 펀드의 출자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9월말 기준 약 1,072억원의 자펀드 투자여력이 있으므로, 2024년도에 전년 대비 약 1.8배 증액 편성되고 있는 정부 출자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2017년부터 2023년 9월말 현재까지 총 9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2023년도에 10호 펀드가 결성 추진 중에 있다.

결성 중인 10호 펀드를 제외하면 2023년 9월말 기준 9개 펀드에 총 2,465억원이 조성(정부 출자금 1,378.4억원, 민간투자금 1086.8억원)되어 있고, 결성 펀드의 투자율은 75.9%, 총 78개 기업에 1872.3억원을 투자하였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2023.9월말)]

(단위: 백만원, %)

펀드	연도	결성액(결성일)	투자업체수	투자액	투자율	투자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1호	2017	420억원('17.12월) (정부 200, 민간 220)	13	39,219	93.4	'17.12월~ '20.12월	100
2호	2018	191.2억원('19.4월) (정부 130, 민간 61.2)	14	16,861	88.2	'19.4월~ '23.4월	100
3호	2019	217억원('20.3월) (정부 130, 민간 87)	8	16,101	74.1	'20.3월~ '24.3월	89.5
4호	2019	215억원('19.12월) (정부 150, 민간 65)	7	19,050	88.6	'19.12월~ '23.12월	93.8
5호	2020	200억원('20.11월) (정부 100, 민간 100)	11	19,187	95.9	'20.11월~ '24.11월	72.1
6호	2020	154억원('20.5월) (정부 100, 민간 54)	10	14,701	95.5	'20.5월~ '24.5월	83.7
7호	2021	285억원('21.8월) (정부 150, 민간 135)	12	21,607	75.8	'21.8~ '25.8월	52.4
8호	2021	353억원('21.8월) (정부 150, 민간 203)	6	34,501	97.7	'21.8월~ '23.8월	100
9호	2022	430억원('22.9월) (정부 268.4, 민간161.6)	5	6,002	14.0	'22.9월~ '26.9월	25.7
10호	2023	'23.10월 조성 예정					
합계		2,465억원	78 (중복 제외)	1,872.3억원	75.9		

자료: 환경부

2023년 결성 추진 중인 10호 펀드는 환경부의 2023년 출자예산 450억원 및 회수액 재투자 금액 50억원을 합한 총 500억원의 모태펀드 금액에 민간출자금액 275억원을 매칭해 총 775억원 규모로 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투자 운용사는 선정되었으나, 민간 투자금을 모집 중으로 투자조합 결성은 10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4년에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4개 신규펀드 조성비 8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기 조성 펀드의 추가 투자 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4년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기 조성펀드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투자율이 80%대 후반에 해당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 결성된 3호 펀드 및 2021년도에 결성된 7호펀드는 각각 투자율이 69.1% 및 75.8%로, 해당 펀드의 잔존 투자여력이 47억 4,100만원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결성된 9호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하여 현재 투자율이 14%인바, 향후 327억원의 투자여력이 존재하고, 2023년 현재 결성 추진 중인 10호 펀드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775억원 중 운용비용을 제외한 약 698억원이 잔존 투자여력에 해당한다.

[기 조성펀드의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2023.9월말)]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1호)	2018 (2호)	2019 (3·4호)	2020 (5·6호)	2021 (7·8호)	2022 (9호)	계	2023 (10호)
조성 펀드 규모(A)	미래 환경산업	42,000	19,120	21,700	20,000	63,800	43,000	209,620	77,500 (예정)
	미세먼지			21,500	15,400	-	-	36,900	-
투자된 금액(B)		39,219	16,861	35,151	33,888	56,108	6,002	187,229	-
잔존 금액(C=A-B)		2,781	2,259	8,049	1,512	7,692	36,998	59,291	-
운용비용(D) ¹⁾		4,200	1,912	4,320	3,540	6,380	4,300	24,652	7,750
투자잔여기간2)		-	-	(3호) 6개월 (4호) 3개월	(5호) 1년 2개월 (6호) 8개월	(7호) 2년 (8호) -	(9호) 3년 1개월	-	-
투자여력(C-D)		-	-	3,429	-	1,312	32,698	37,439	69,750

주: 1. 펀드운용 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등으로 운용비용 발생(약 10% 내외)

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조성된 2019년 4호 펀드(300백만원)는 투자여력규모 산정시 제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기존까지 조성한 펀드는 주로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에 지원되었는바, 2024년도에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펀드 2개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화 펀드 1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조성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라고 설명하였다.

[2024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예산안	사업 대상
엑셀러레이터펀드	6,000 = 2개 * 3,000(3억*10개사)	〈신규〉 - 초기 녹색창업기업 대상
사업화펀드	45,000 = 15억*30개사	〈기존 사업 내용〉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자펀드 투자여력 1,072억원 상당 존재
스케일업펀드	30,000 = 50억*6개사	〈신규〉 - 중견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가장 최근 결성(22.9.)된 9호 펀드의 경우 43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23년 9월말 기준 투자기간 경과율이 25%가 지났음에도 투자율이 14%에 불과한 실정이고, 현재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 조성 및 조성 예정 펀드(10호)의 투자여력이 1,072억원(47억원+327억원+698억원) 상당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신규 조성될 사업화펀드의 투자 대상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부 출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년간 1,310억원을 출자(재출자금액 68억원 별도)하였는데, 2023년 및 2024년 2년간의 정부출자금액이 1,260억원(재출자금액 50억원 별도)에 해당하여 급격히 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7~2024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부 출자금	200	130	280	200	300	200	450	810

주: 신규예산 기준(재출자금 제외)

자료: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NDC 목표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¹⁾은 환경 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에 투자 후 확보된 감축실적을 획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103억 5,000만원 대비 132억원 증액된 2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10,350	23,550	13,200	127.5

자료: 환경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2030년 국외감축분 37.5백만톤이 설정되었고, 환경 분야(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약 1.3배 확대 편성하였다.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타당성조사 사업이 2023년 4개에서 총 26개 과제로 확대되었으며, 감축실적 확보(설치지원)사업은 2023년 4개 사업에서 2024년 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감축실적 확보사업은 한 과제당 최대 지원한도가 42억원으로, 2차년도에 나누어 지원하는바 각 연도별 21억원이 지원단가 금액으로 적용되어 147억원이 편성되었고, 타당성조사는 과제당 평균 지원단가 3억원이 적용되어 78억원이 편성되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10

이 외에 정부간 양자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에 대해서 2023년도는 한국환경공단 1개소만 지원하였으나, 2024년에는 3개소(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위탁비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세부 편성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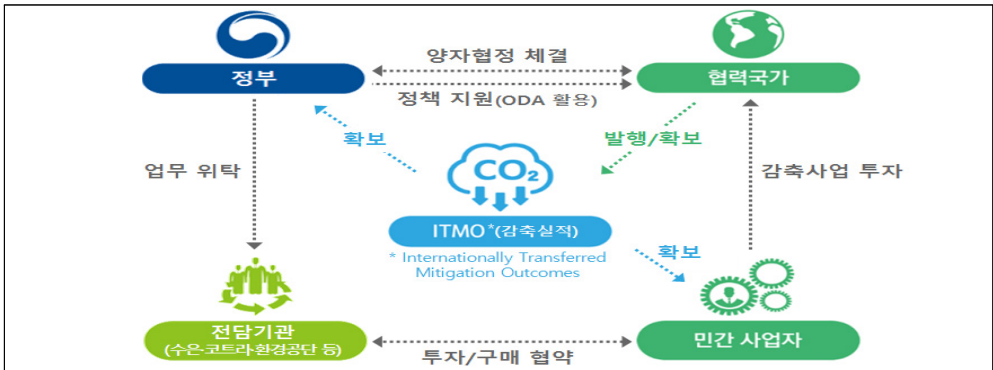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 국외업무여비(220-02) : 1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3,540 가. 감축실적 확보 : 22,500 · (감축실적 확보) 7개사업 × 2,100백만원 = 14,700 · (타당성조사) 본타 13개사업 × 400백만원 + 예타 13개사업 × 200백만원 = 7,800 나. 정부간 양자 협력 체계 구축 : 1,040 · 전담기관 위탁비 등 : 1,040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자(공공·민간)가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으며, 정부는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한 비용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메커니즘]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국제감축 부문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감축실적 확보사업이 목표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나, 2023년도 8월말 현재 목표사업 4개 중 1개만 선정되어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환경부는 2024년 확대 편성된 과제의 사업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3년도에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1차 공모를 4월 21일~5월 11일 진행하여 타당성조사 지원과제 4건을 선정(6월 초)하였고, 2차 공모를 8월말~9월 중순까지 진행중으로, 10월 초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추가 지원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추진 절차]

공모 및 사업 접수	⇒	선정평가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			
			⇒	선정사업 관리	⇒	결과 평가
		↓ 업무협약	(타당성조사 지원)			
			⇒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24년 설치 지원 사업 연계

자료: 환경부

타당성조사 사업은 조사비용의 90% 이내로 지원하며, 감축실적 확보사업은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80% 이내로 지원하나 지원금 상한액은 42억원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타당성조사 사업 4개 지원 및 감축실적 확보 사업 4개 지원을 목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타당성조사는 당초 목표대로 1차 공모에서 4개 사업을 모두 선정하였으나, 실제 설치를 지원하는 감축실적 확보사업은 2023년 1차 공모 결과 신규로 선정된 건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환경부는 2022년도에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마이돈 돌 매립장 사업지(22.12. 3차공모 선정)가 감축실적 확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023년도 사업 선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표	사업 선정내역			
타당성 조사	4개 사업	(본타)	광빈성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가스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발전	베트남	360
		(예타)	파리협정 6조 기반 베트남 하이퐁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베트남	238
			캄보디아 바이오매스 발전 예비타당성조사	캄보디아	300
			Hamici 매립장 LFG 포집 및 소각사업	알제리	150
감축 실적 확보	4개 사업	마이돈돌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22년 공모) 2023년 공모사업건은 진행중		우즈베키스탄	1,512 지원예정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국제감축실적 확보사업」 지침에 따르면, 감축실적 확보사업 지원금은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사업참여 의향을 서면 확인 후 선급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수행 여부를 점검하여 30%의 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사업의 경우 2023년 8월말 기준 2022년 이월금 및 2023년 지원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대상국 의향서 제출 및 의향서 검토 후 예산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²⁾.

[2023년도 8월말 기준 예산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타당성조사	1,600	1,048	65.5
감축실적 확보	8,400	0	0.0
총계	10,000	1,048	10.5

자료: 환경부

2) 환경부는 우즈베키스탄 마이돈돌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총 지원금액이 27억원으로, 2022년도 이월금액 11억 8,800만원 및 2023년도 15억 1,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2022년 이월금액 중 8억원은 9월말에 집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의 상대국 의향서는 23.6월에 제출되었으나, 지원금액은 검토기간을 거쳐 9월말에 집행되었다.

이는 공모로 대상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감축실적 확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가령, 올해 2차 공모를 통해 11월에 감축실적 확보 지원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더라도 사업대상국의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이후 검토기간 등에 따라 예산의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4년에 동 사업 지원과제를 7개로 확대 편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 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업 지연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실적 확보사업이 목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국유재산의 취득 및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에 사용된다.¹⁾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895억 900만원 증액된 3조 2,70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변경		B-A	(B-A)/A
국유재산관리기금	2,242,551	2,580,994	2,582,894	3,270,503	689,509	26.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87)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21-1.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위탁개발방식으로 신축한 공공청사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여 개발비용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에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청사에 대해 각각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총 전년 대비 1억 7,700만원 증액된 26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19,903	9,890	9,890	9,419	△471	△4.8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18,718	9,429	9,429	9,435	6	0.1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 신축	12,136	3,028	3,028	3,028	-	-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 신축	12,275	3,095	3,095	3,039	△56	△1.8
통계청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	346	346	655	309	89.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	225	225	333	108	4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영등포 복합청사 신축	-	457	457	770	313	△6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동구 복합청사 신축	1,168	230	230	198	△32	△13.9
합 계	64,200	26,700	26,700	26,877	177	0.7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공공청사 위탁개발은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유사한 사업구조로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미리 국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계획안 편성 없이 자체변경을 통해 임차료 조기상환을 하고 있는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침해하고 재정지출 및 채무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추진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기금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설계비·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그런데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자금으로 공공청사를 신축한 후 이를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개발제도 중 ‘위탁개발’ 방식을 공공청사 신축에도 적용한 것인데, 위탁개발은 「국유재산법」 제59조2)에 따라 총괄청 일반재산 및 기금·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처분 사무의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민간에 임대·분양하여 그 임대료 또는 분양대금으로 개발 및 운영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재정투입 없이 민간 수준에서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국고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공공청사의 경우 민간이 아닌 국가가 위탁개발재산의 사용자이므로, 민간에서의 수입이 아닌 국고금으로 개발비용 등을 보전하게 되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없는바, 「국유재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분양·관리의 방법은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비용을 선투자하고 국가가 이를 사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자금조달방식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오히려 기금개발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임차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에 따르면 위탁개발 정부지급금 8개 세부사업을 통해 7개 청사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개발 공공청사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탁운영 기간	총 사용료	연간 사용료	2022 결산	2023 계획액	2024 계획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2043년 (25년)	283,309	11,332	19,903	9,890	9,419
수원고지검청사		2019~2044년 (25년)	256,387	10,255	18,718	9,429	9,435
중부세무서		2021~2046년 (25년)	68,893	2,755	12,136	3,028	3,028
서대문세무서		2021~2046년 (25년)	42,362	1,694	12,275	3,095	3,039
남양주 복합청사	통계청	2023~2056년 (33년)	15,531	485	-	346	655
	선관위				-	225	333
영등포 복합청사		2023~2053년 (30년)	10,042	837	-	457	770
광주동구 복합청사		2021~2051년 (30년)	5,382	196	1,168	230	198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이전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취득한 공공청사에 대해 개별 부처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공공청사의 위탁개발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아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의 재정통

3) 나라키움 대전센터(통계청, 국가보훈부, 중앙선관위/2009~2039년 위탁 운영) 등

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 제58조에서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이에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⁵⁾

그런데 공공청사의 위탁개발 비용은 결국 국고로 상환하여야 하는바, 공공청사의 위탁개발은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

이와 유사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 있으며, 한도액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나,⁶⁾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은 이러한 심의 과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⁷⁾

4)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국회는 계획안 심사 시 이미 준공되어 개발비용을 상환하여야만 하는 청사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을 뿐, 공공청사 신축 여부나 규모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개발비용 상환에 대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였음에도 국가채무로 관리되지 않아⁸⁾ 국가채무를 실제보다 축소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사용료 산출 시 위탁수수료 및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고, 위탁운영기간이 25~33년 수준으로 길어 기금 사업으로 계획을 편성하여 개발하는 것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동안 국가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청사 신축 시 위탁개발방식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임차료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조기상환 소요를 당초 계획 편성시부터 반영할 경우 한정된 기금 재원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연말 불용액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연말에 상당한 규모의 계획 변경을 통해 조기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심의·의결 대상은 아니라는 점,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임차료 지급에 따른 상환계획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2020~2022년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계획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유형	변경 일자	사업명	계획				변경사유
				당초 (A)	변경 (B)	변경 후	변경률 (B/A)	
2020	자체 변경	12.2 1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11,883	21,707	33,590	182.7	원리금 상환, 이자부담 완화 및 집행률 제고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9,716	11,056	20,772	113.8	
			합 계	21,599	32,763	54,362	151.7	
2022	자체 변경	12.2 6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9,883	10,020	19,903	101.4	집행부진사업 불용예상액 및 집행잔액으로 위탁개발임차 료 증액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9,422	9,296	18,718	98.7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 신축	3,028	9,108	12,136	300.8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 신축	3,152	9,123	12,275	289.4	
			합 계	25,485	37,547	63,032	147.3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는 이미 준공된 사업의 계획안을 심사할 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정 소요를 알기 어려운바,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⁹⁾

따라서 구체적인 조기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추진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

9)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임차료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변경은 변경한도(주요항목의 20%) 내에서 수행하였으며, 건축사업 집행 부진 시 집행률 제고를 위해 그 불용액을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하는바, 자체변경은 예외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가 조기상환을 통해 사업 추진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당초부터 계획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2. 공용재산취득 사업 적정 규모의 계획 편성 필요

가. 현 황

공용재산취득 사업은 청사·관사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을 신축·매입 등 취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중앙행정기관별 ‘공용청사취득’ 프로그램 또는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7억 6,700만원 감액된 9,33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		2024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공용재산취득(감사원)	9,206	9,459	9,459	3,420	△6,039	△63.8
공용재산취득(경찰청)	240,249	286,556	286,556	279,359	△7,197	△2.5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8,047	12,518	12,518	10,114	△2,404	△19.2
공용재산취득(관세청)	20,327	58,370	58,370	5,501	△52,869	△90.6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부)	227	237	237	4,021	3,784	1596.6
공용재산취득(국세청)	75,861	57,832	57,832	60,858	3,026	5.2
공용재산취득(국토교통부)	-	779	779	5,271	4,492	576.6
공용재산취득(기상청)	625	12,923	12,923	17,885	4,962	38.4
공용재산취득(농림축산식품부)	4,853	7,852	7,852	9,726	1,874	23.9
공용재산취득(농촌진흥청)	-	-	-	495	495	순증
공용재산취득(대법원)	93,638	99,900	99,900	93,030	△6,870	△6.9
공용재산취득(대통령경호처)	2,765	7,351	7,351	7,442	91	1.2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65,108	174,472	174,472	172,737	△1,735	△1.0
공용재산취득(병무청)	151	4,544	4,544	11,761	7,217	158.8
공용재산취득(산림청)	5,196	10,630	10,630	5,858	△4,772	△44.9
공용재산취득(소방청)	2,488	6,690	6,690	21,950	15,260	228.1
공용재산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21	2,165	2,165	4,984	2,819	130.2
공용재산취득(외교부)	14,034	22,893	22,893	23,730	837	3.7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499	3,209	3,209	5,380	2,171	67.7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632	16,402	16,402	15,066	△1,336	△8.1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1,686	3,495	3,495	4,707	1,212	34.7
공용재산취득(통계청)	1,576	5,007	5,007	3,834	△1,173	△23.4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16,211	47,114	47,114	48,357	1,243	2.6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	38,925	32,483	32,483	49,576	17,093	52.6
통합청관사	36,108	58,700	58,700	68,752	10,052	17.1
합 계	749,433	941,581	941,581	933,814	△7,767	△0.8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계획안 심사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전반의 수급·개발을 목적으로 하나, 사실상 정부청·관사 등 공용재산취득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지출(9,338억원)은 총지출(1조 367억원)의 90.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년 평균 집행률이 79.5%로 저조한 편이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계획현액(A)	1,165,726	1,343,269	1,060,932	1,047,212	985,558	1,120,539
지출액(B)	777,632	1,114,312	946,745	859,646	753,785	890,424
집행률(B/A)	66.7	83.0	89.2	82.1	76.5	79.5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2023년도 계획에 편성된 공용재산취득 세부사업 157개 중 121개(77.1%)는 8월말 기준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하고, 그 중 42개 사업은 집행액이 0원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의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전년도(9,416억원)와 유사한 수준(9,338억원)으로 편성한바, 2022년도 결산액(7,494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2024년도 계획안을 연내 모두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안 심사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무부의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2024년도 계획안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사업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들이 합숙복무할 생활관을 교정시설에 증축하는 것이다. 이 중 ‘서울남부구치소 등 9개기관 대체복무생활관증축’ 내역사업을 제외한 4개 내역사업은 모두 증액편성되었으며, 착공을 위한 공사비·시설비·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사업 계획안 중 증액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2024 계획안(C)	증감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C-A	(C-A)/A
대구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452	132	29.2	1,435	984	217.5
기본설계비	317	63	19.9	0	△317	순감
실시설계비	135	0	0.0	0	△135	순감
공사비	-	-	-	1,400	1,400	순증
감리비	-	-	-	28	28	순증
시설부대비	-	-	-	7	7	순증
서울동부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246	0	0.0	1,569	1,323	537.8
기본설계비	111	0	0.0	0	△111	순감
실시설계비	135	0	0.0	0	△135	순감
공사비	-	-	-	1,549	1,549	순증
감리비	-	-	-	16	16	순증
시설부대비	-	-	-	4	4	순증
수원구치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246	63	25.6	1,569	1,323	537.8
기본설계비	111	63	56.8	0	△111	순감
실시설계비	135	0	0.0	0	△135	순감
공사비	-	-	-	1,549	1,549	순증
감리비	-	-	-	16	16	순증
시설부대비	-	-	-	4	4	순증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증축	187	0	0.0	1,165	878	523.0
기본설계비	85	0	0.0	0	△85	순감
실시설계비	102	0	0.0	0	△102	순감
공사비	-	-	-	1,148	1,148	순증
감리비	-	-	-	13	13	순증
시설부대비	-	-	-	4	4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2434-440

그러나 동 사업들은 모두 2023년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대구교도소 및 수원구치소는 집행률이 20%대이고, 서울동부구치소 및 원주교도소는 집행률이 0%이다. 이에 따라 4개 사업 모두 8월말 기준 기본설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며, 2023년에 실시설계비도 편성하였으나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구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및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은 사업이 지연되어 착공 시기가 당초 대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사업부지 내 지열배관 이전 문제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바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원주교도소는 2025년 착공 예정이므로 2024년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사업 중 지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구 분	대구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원주교도소
사업추진 지연사유	개발제한구역변경 등 인허가 협의 지연	사업부지내 지열배관 이전 문제로 사업타당성 검토 중	토지보상 지연
기본설계	2024년 상반기		2024년
실시설계	2024년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2025년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대구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및 원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획안에서 공사비를 반영하여 상당 규모를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1-3. 국유재산관리기금 일시차입 한도 설정 여부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예산총칙안은 정부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시적인 세입·세출간 불균형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초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총칙안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2,000억원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제8조 2024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 40,000,000,000,000원 |
|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 2,000,000,000,000원 |
|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 8,000,000,000,000원 |
|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 200,000,000,000원 |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하고,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하므로, 예산총칙상 일시차입 등 한도의 설정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신설 이후 2012년도 예산총칙부터 매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바, 2012년 및 2013년은 3,000억원, 2014년 이후로는 매년 2,000억원의 한도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최고액]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상 한도액	3,000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연중 차입·발행액	0	0	0	0	0	0	0	0	0	0	0	0

주: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그 특성상 일시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의 2023년 8월말 기준 연중운용평잔은 1조 2,116억원, 연도말 잔액은 1조 4,191억원으로 예산총칙상 일시차입한도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지출(1조 367억원)보다도 많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규모 역시 2019년 3,000억원에서 2023년 9,6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양호한 상황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유 자금	연중운용평잔 ¹⁾	6,294	8,446	11,120	11,016	13,029	9,337	8,948	9,239	12,116	16,097
	연도말잔액	5,397	7,711	10,497	14,585	9,386	7,402	6,583	9,877	14,191	17,485
공자기금예탁 ²⁾		-	-	-	-	3,000	4,516	4,750	8,609	9,600	12,500

주: 1) 2023년은 8월말 기준이며, 2024년은 전망치

2)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 및 2024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상황은 2024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유자금의 연중 운용평잔은 1조 6,097억원, 연도말 잔액은 1조 7,485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도 전년 대비 2,900억원 증가한 1조 2,5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30.1%)과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94.9%)이 가장 높으며, 절대적인 규모도 9,839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계	총지출	여유자금	여유자금 비중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 (총지출 대비)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1,036,609	983,894	30.1	94.9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181	1,162,238	283,159	17.5	24.4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3,614,398	253,692	5.6	7.0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1,676,469	983,957	28.9	58.7
기후대응기금	2,415,844	2,286,923	100,293	4.2	4.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4,770	2,140,414	238,426	10.0	11.1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3,019,399	2,909,217	110,182	3.7	3.8
농지관리기금	4,006,330	2,021,720	812,813	20.3	40.2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093,789	58,416	2.6	2.8
전력산업기반기금	4,501,041	2,057,146	836,519	18.6	40.7
주택도시기금	105,395,180	37,281,327	28,779,151	27.3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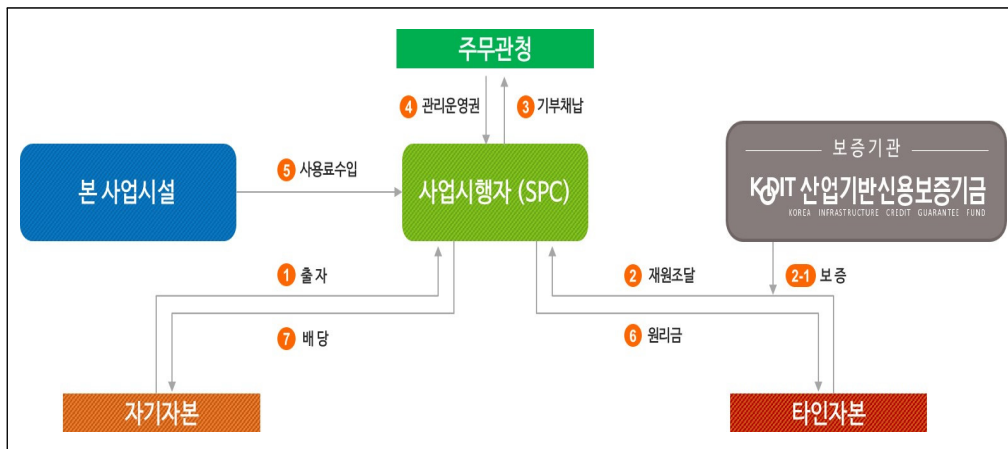
주: 여유자금 운용이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제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기금 설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일시차입 등 한도 설정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사업성 기금 대비 비중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기반신용보증은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 또는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①도로·철도·항만·하수도·하수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유치원·학교·도서관·과학관·복합문화시설·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공공청사·보훈시설·방재시설·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시설²⁾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동일 사업에 대해 최고 7,000억원이며 보상자금 선투입제도에 따른 보증은 최고 3,000억원으로 별도 운용하고 있다.³⁾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에는 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브릿지파이낸싱 보증(보상자금 선투입보증)이 있다.

22-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 재추계에 기반한 일반회계전입금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 수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일반회계전입금,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이 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이고,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금액 및 보증잔액에 대해 수수받는 보증료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이다.

202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은 8,132억 6,600만원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⁴⁾ 157억 4,0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⁵⁾ 228억 9,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⁶⁾ 100억원 및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7,61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7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4) 코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154-546

5) 코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365-651

6) 코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091-911

[202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	
				B-A	(B-A)/A
총 계	1,201,887	770,138	813,266	43,128	5.6
기타재산이자수입	10,158	19,690	15,740	△3,950	△20.1
면허료및수수료	21,806	24,064	22,899	△1,165	△4.8
일반회계전입금	15,000	10,000	10,000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8,060	418,252	284,169	△134,083	△3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86,458	244,419	477,393	232,974	95.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인 이자수입 및 보증수수료 수입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체수입 계획액 산출산식을 재검토하여 자체수입을 적정규모로 증액하고 수입 증액규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상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회계전입금은 기금이 민간투자사업 대출보증·유동화회사보증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고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재산 재원으로, 정부는 기금의 보증공급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운용배수 관리를 위해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며,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외에 보증료·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포함한다.⁷⁾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전년도 운용배수(14.7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00억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 보증기금 운용배수 산정 산식

$$\text{운용 배수} = \frac{\text{보증잔액}}{\text{기본재산(보증료 등 자체 수입 + 정부 출연금)}}$$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산출 근거]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A)	기본재산(B)	출연금	운용배수(A/B)
'22년 (실적)	23,106	128,873	8,789	150	14.66
'23년 (계획)	23,000	134,644	9,192	100	14.65
'24년 (계획)	24,000	140,916	9,592	100	14.69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그러나 2024년도 자체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면허료및수수료 계획액이 보수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등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 보증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방향과 달리 2024년에 수익률 하락을 예상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다.

2024년도 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입계획안 산출내역을 보면, 2023년 대비 여유자금운용규모는 증가하나 목표수익률을 2023년 계획 2.13%보다 낮은 1.56%로 설정하였다.

[2023·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액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19,690	여유자금운용규모(924,413백만원) × 목표수익률(2.13%)
2024계획안	15,740	여유자금운용규모(1,008,974백만원) × 목표수익률(1.56%)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2년 대비 2023년 연기금투자폴 수익률⁸⁾, MMF·CMA⁹⁾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였고, 실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도 2022년 총 수익률이 △0.75%에서 2023년 7월 기준으로 5.80%로 상승하였다.

[2021~2023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21	직접투자	현금 등	465,076	468,334	1.33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04,224	400,204	0.14
	계		869,300	868,538	0.87
2022	직접투자	현금 등	409,135	446,897	1.85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93,780	449,348	△3.84
	계		902,915	891,444	△0.75
2023	직접투자	현금 등	393,780	408,232	4.54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552,807	507,167	6.90
	계		946,587	915,398	5.80

자료: 기획재정부

8) [연기금투자폴 금리 추이]

(단위: 연 %)

구 분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MMF	1.49	1.69	2.46	3.63	3.96	3.77
채권형	-4.99	-6.51	-2.02	5.76	10.41	0.30
혼합형	-1.91	-4.95	-1.45	1.47	4.71	1.81
국내주식형	-6.59	-15.53	-7.54	4.95	10.52	4.64
해외주식형	-2.47	-9.60	2.61	-2.22	7.63	6.66

자료: 연기금투자폴 누리집(<http://investpool.go.kr>)

9) [2022~2023 2분기 MMF 및 CMA 금리 추이]

(단위: 연 %)

구 분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MMF(7일형)	1.39	1.60	2.34	3.47	3.89	3.70
CMA(수시형)	0.93	1.23	1.91	2.67	3.08	3.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특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및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인다.¹⁰⁾

[202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상 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익률		기타재산이자수입			
	2022	2023. 7. ¹⁾	2023계 획	산출근거	2024계 획안	산출근거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금	△0.75	5.80	19,690	여유자금 (924,413백만원) × 목표수익률 (2.13%)	15,740	여유자금 (1,008,974백만원) × 목표수익률 (1.56%)
신용보증 기금	△0.63	5.60	121,017	정기예금: 예상금리 3.0%, 확정금리 1.92% 유가증권 이자 등	218,939	정기예금: 예상금리 4.01%, 확정금리 4.53% 유가증권 및 요구불 예금 이자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예상 보증평균잔액이 감소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가 202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보증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왔으며 기획재정부가 2024년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보증 목표를 상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2024년도 228억 9,900만원으로 2023년 240억 6,400만원 대비 11억 6,500만원 감액한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2024년 예상 보증평균잔액이 2023년 대비 88.2% 수준인 915억 9,600만원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10) 이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2023년 상반기 고점 도달 후 인상이 종료되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신흥국 부채위험 등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 수익률을 2023년보다 낮게 계획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3 ·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24,064	예상 보증평균잔액(96,257억원) × 평균보증료율(0.25%)
2024계획안	22,899	예상 보증평균잔액(91,596억원) × 평균보증료율(0.25%)

자료: 기획재정부

보증료수입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0.05~1.5% 수준의 보증료를 수수하여 얻는 수입으로, 신규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이 증가하면 보증료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보증수수료 추이를 보면, 신규보증공급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도말 보증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기금 수입항목인 면허료 및 수수료의 수납액도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추이]

(단위: 억원, 건,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2024 계획
신규보증공급액	20,832	18,102	20,513	25,642	23,106	9,288	24,000
신규보증건수	16	12	14	16	13	2	-
연도말보증건수	121	124	126	127	125	126	-
연도말보증잔액	105,539	111,559	114,001	127,402	128,873	133,848	140,916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17,269	18,170	19,771	21,009	21,806	12,484 (계획액 24,064)	22,899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와 규모를 확대¹¹⁾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목표 신규보증공급액도 2023년 2.3조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11)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선보상 제외)를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2022.7.~2023.6. 동안 2.3조원에서 2023.7.~2024.6. 동안 3.0조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과 보증수수료 수입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2024년도 예상 평균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오히려 감액 편성된 것이다.¹²⁾

따라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자체수입인 이자수입과 보증수수료 수입이 제반 여건 및 과거 실적 등에 대비하여 과소하게 산정된바,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액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수입 계획액 산출산식을 재검토하고 자체수입을 적정 규모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 규모를 감안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배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운용배수(보증잔액 / 기본재산)는 기본재산의 20배¹³⁾이나, 기금은 기금 내부 적정배수를 기본재산의 12.5배로 정하고 있다. 이는 BIS자기자본비율 최소한도인 8%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다.¹⁴⁾

202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목표 운용배수를 2022년말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수준인 14.7배로 하였다.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 및

12) 이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는 보증승인 이후 실제 PF대출 실행시 보증금액에 대해 부과(은행 한도 대출 이자 부과와 유사) 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공사 진행을 등에 따라 PF대출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보증승인 시점과 PF대출 실행 시점 간에 일정 기간 차이가 발생하여 연말기준 증가된 보증승인금액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4) (금융당국 권고규정) 신BIS협약을 반영하여 금감원에서 제정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자기자본 비율 최소 8%이상)을 준용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 8%(=8/100)
 ⇨ 보증운용배수 = 위험가중자산(보증잔액) ÷ 자기자본(기본재산) = 12.5배(=100/8)

운용배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 적정수준인 12.5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14.6~14.8배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적 및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o	2024 ^o
보증잔액(A)	93,325	98,536	105,539	111,559	114,001	127,402	128,873	134,644	140,916
기본재산(B)	7,183	7,416	7,753	8,025	8,345	8,635	8,789	9,192	9,592
- 정부 출연금	180	180	180	100	80	140	150	100	100
운용배수(A/B)	13.0	13.3	13.6	13.9	13.7	14.8	14.7	14.6	14.7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나. 분석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상품의 성격상 정부의 재정투입이 수반되는바 대위변제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타 보증기금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기금의 법정 운용배수 및 적정 운용배수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 기금의 운용배수가 기금 내부에서 정한 적정 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인 것은 정부출연금의 감소 등으로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대위변제 역시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보증충당부채¹⁵⁾ 증가 및 보증보조비용 발생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⁶⁾

15)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16)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사고에 의한 예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으로, 매년말 산정하되 전년 대비 부족할 경우 보증보조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때 보증보조비용은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기본재산을 형성하는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므로 보증보조비용이 증가할 경우 기본재산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건, 배, %)

구 분	보증 공급액	누계	보증 공급 건수	누계	보증 잔액 (A)	기본 재산 (B)	운용 배수 (A/B)	대위 변제액	대위 변제율	구상 채권 회수액	회수율
2013	15,756	155,386	13	245	84,815	6,025	14.08	-	-	-	-
2014	19,994	175,380	12	257	81,464	6,462	12.61	-	-	-	-
2015	17,833	193,213	22	279	82,868	6,884	12.04	-	-	-	-
2016	25,905	219,118	17	296	93,325	7,183	12.99	-	-	-	-
2017	20,286	239,404	13	309	98,536	7,416	13.29	-	-	-	-
2018	20,832	260,236	16	325	105,539	7,753	13.61	-	-	-	-
2019	18,102	278,338	12	337	111,559	8,025	13.90	-	-	-	-
2020	20,513	298,851	14	351	114,001	8,345	13.66	-	-	-	-
2021	25,642	324,493	16	367	127,402	8,635	14.75	-	-	-	-
2022	23,106	347,599	13	380	128,873	8,789	14.66	-	-	-	-
2023 8월말	9,288	356,886	2	382	133,848	9,233	14.5	-	-	-	-
2024 계획 ¹⁾	24,000	394,599			140,916	9,592	14.69	141	0.15	31	21.98

주: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에는 매년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회수 계획액을 계상하나 집행되지 않음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또한, 보증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하수도나 유치원·학교·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생활체육시설 등 국민생활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이므로, 건설 및 관리·운영이 쉽게 중단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 중 재정지원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투자위험분담형보증 등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손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¹⁷⁾

17) 이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국내 PF시장 부실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대위변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현황]

상품명	주요내용
시설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주무관청으로부터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리파이낸싱보증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저금리로 재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토지보상비 부족예산을 선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정상화지원보증	부실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부실기업 또는 부실사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투자위험분담형보증	BTO-rs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험분담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자료: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법정 운용배수 및 적정 운용배수가 동일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비교하면, 동 기금의 대위변제율과 보증잔액 대비 보증충당부채 비율(설정률)이 여타 보증기금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타 보증기금에 비해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대위변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충당부채의 적립 필요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신용보증기금 간 대위변제율 및 설정률 비교]

(단위: 배, %)

구 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정 운용배수	20.0	20.0	20.0
적정 운용배수	12.5	12.5	12.5
2022년말 대위변제율	0.0	7.9	7.8
2022년말 설정률 (보증충당부채/보증잔액)	0.58	3.50	3.88

자료: 각 기금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무역보험기금의 목표 기금배수는 21배이며 2022년 말 운용배수는 25.4배로 나타나고 있고, 주택 관련 보증공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 보증배수는 70배, 2022년 말 보증배수는 54.4배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법정 보증배수는 50배, 2022년 말 보증배수 35.0배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법정 운용배수 20.0배 하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적정 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보증상품의 성격상 대위변제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타 보증기금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기금의 법정 운용배수 및 적정 운용배수 수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3.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 상향 필요

가. 현 황

선투입 보상자금(브릿지파이낸싱) 보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비용 중 추후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보전이 가능한 토지 등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보증으로, 주무관청의 토지보상비 등의 예산 지원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 조달하여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대출원금과 금융비용을 주무관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보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및 보상비 상승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14년 5월부터 실시되었다.

브릿지파이낸싱 보증은 2023년 8월말까지 총 14개 사업에 2조 5,587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에 대해 공급되었으며, 8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3,708억원이다.

[브릿지파이낸싱 보증지원 내역]

(단위: 억원)

업체명	사업명	승인일자	보증금액	보증잔액
서울북부고속도로(주)	구리-포천 고속도로	2014-06-03	3,000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상주-영천 고속도로	2014-07-28	660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광주-원주 고속도로	2014-09-26	350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2014-10-13	1,500	-
수원순환도로(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015-11-03	800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	2015-12-10	2,000	-
서서울고속도로(주)	광명-서울고속도로	2016-06-23	3,000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이천-오산고속도로	2016-12-01	3,000	-
구미맑은물(주)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2018-04-19	200	-
포천화도고속도로(주)	포천-화도 고속도로	2019-05-15	2,200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이천-오산고속도로	2019-05-15	1,765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봉담-송산 고속도로	2019-05-15	1,272	-
서서울고속도로(주)	광명-서울고속도로	2020-04-24	2,840	708
서부내륙고속도로(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2020-07-27	3,000	3,000
합 계	총 14개 사업		25,587	3,708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나. 분석의견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가 3,000억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선투입된 보상자금의 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조달비용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추이, 최근 보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선투입 보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산업기반신용 보증총액 한도¹⁸⁾는 2014년 3,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 11월부터 7,00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1조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브릿지파이낸싱 보증 한도는 2014년 이후 3,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9	2022	2023(예정)
신용보증	3,000	4,000	5,000	7,000	10,000
브릿지파이낸싱	3,000	3,000	3,000	3,000	3,0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한편, 토지선보상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브릿지파이낸싱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 “기준금리+가산금리+신용보증수수료”로 책정되는데,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¹⁹⁾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의 건설보상비 선투입규모가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인 3,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줄어들어 더욱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포천-화도 및 평택-익산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선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2019년 ~ 2023.9월말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단위: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9.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1.68	1.38	1.79	3.17	3.52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국채백서」 및 「월간 재정동향(2023년 10월호)」

투입규모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인 3,000억원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건설사업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기간 및 금융약정 현황]

사업명	선투입규모 (억원)		대출 기간	금융약정(%/연)				비고
				계	기준금리	가산금리	보증수수료	
포천 -화도	6,920	2,200	3년 (19~22)	2.17	1.37	0.70	0.10	
		2,620	3년 (20~23)	1.57	0.77	0.80	-	
		2,100	2년 (21~23)	1.95	1.20	0.75	-	
광명 -서울	2,840	2,840	3년 (20~23)	1.67	0.87	0.70	0.10	2023. 10. 연장 예정
			1년 (23~24)	4.43	3.78	0.55	0.10	
평택 -익산	10,000	3,000	3년 (20~23)	1.64	0.84	0.70	0.10	2023. 10. 연장 예정
			1년 (23~24)	4.43	3.78	0.55	0.10	
		5,000	2년 (21~23)	1.53	0.78	0.75	-	2년 연장 완료
			2년 (23~25)	4.34	3.64	0.70	-	
		2,000	3년 (22~25)	3.34	2.24	1.10	-	

주: 1. 이자율(고정금리): 기준금리(1년만기 산업금융채권금리 0.77~3.78%) + 가산금리(0.55~0.8%)

2. 이자지급: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인출 금액별 일할 계산) 및 그 후 1년마다 납부

3. 신용보증수수료: 인출 시 및 인출 후 1년마다 인출금액의 0.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과거 대비 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소요액이 증가하였음에도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가 3,000억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선투입된 보상자금의 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조달 비용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일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추이, 최근 보상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브릿지파이낸싱 보증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선투입 보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세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615억 2,6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70억 1,300만원(△15.6%) 감소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국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92,821	428,539	361,526	△67,013	△15.6

자료: 국세청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9,714억 9,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74억원 1,900만원(2.5%)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국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900,294	1,924,078	1,971,497	47,419	2.5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조 3,81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 9,800만원(2.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173명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284,769	1,352,747	1,381,345	28,598	2.1
인건비	1,275,622	1,343,111	1,371,587	28,476	2.1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9,147	9,636	9,758	122	1.3

자료: 국세청

[2024년도 국세청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세청	21,244	21,071	△173	△0.8

자료: 국세청

2024년도 국세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385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원(5.8%)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25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원(0.7%)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5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1,600만원(8.3%) 증가하였다.

[2024년도 국세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61,690	130,975	138,575	7,600	5.8
총액인건비 대상	41,942	42,305	42,589	284	0.7
총액인건비 비대상	119,748	88,670	95,986	7,316	8.3

자료: 국세청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의 경우 최근 징수실적, 징수액 증감 추이,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 전환 등 제도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670억 감액된 3,615억원을 편성하였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가 1억 3,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여 세출예산안 1억 9,715억원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386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4,51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정보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률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는데, 신청자 편의 및 우편발송 예산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제조세관리실 기본경비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인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및 디지털세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본경비에 별도로 편성하였는바, 사업비에 미반영되어 기본경비에 편성한 예산은 감액 또는 사업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의 국세청 청년인턴은 모두 일선 세무서에 배치되어 세금 신고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어 기존 국세청 사업인 세무서 납세도우미 지원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고 2023년 모집 결과 응시율도 저조하였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참여 수요 및 분야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13억원 규모이다.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은 2024년도 디지털세 시행에 따른 국제논의 참여, 제도홍보 및 성실신고지원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은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사업이며,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사업은 개도국 공무원 대상으로 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디지털세운영지원	196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1,000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100
합 계		1,296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등이 있다.

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 포상금 예산이 증액되었다.

②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은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및 우편봉투 구입 사업으로 우편물 발송량 증가 및 타사업에 편성된 우편물 발송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3,156	4,319	1,163	36.9
	납부고지서 등 발송	47,704	60,066	12,362	25.9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2,798	3,413	615	22.0

자료: 국세청

1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등 발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

가. 현 황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¹⁾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독촉장 및 각종 신고안내문을 송달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등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3억 6,200만원이 증액된 60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납부고지서 등 발송	61,584	47,704	60,066	12,362	25.9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일반우편물의 모바일 발송 확대를 통하여 우편요금의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도 국세청의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우편 발송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우편과 모바일 발송 건수를 비교할 경우 모바일 발송의 비율도 2.7%p 증가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00

[2021~2024년 일반우편 및 모바일 발송건수 현황]

(단위: 천건, %)

구분		일반우편 발송 (우편물센터)		모바일 발송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예산	7,681	20	30,722	80	38,403
	결산	16,342	40.2	24,273	59.8	40,615
2022년	예산	7,341	17.6	34,484	82.4	41,825
	결산	16,737	35.6	30,247	64.4	46,984
2023년	예산	16,341	34.1	31,601	65.9	47,942
2024년	예산	16,080	31.4	35,085	68.6	51,165

자료: 국세청

반면, 등기우편 발송 요금의 경우, 타 사업으로부터 이관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안내문 발송 예산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약 55억 8,51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등기우편 발송 예산 비교]

'23년 예산 산출내역	'24년 예산 산출내역	증감
37,540,666천원 (A)	43,125,811천원 (B)	
가. 우편물센터 등기우편 발송요금 ◦ 12,788천건 × 2,530원 × 96.6%(할인율) = 31,253,616천원	가. 우편물센터 등기우편 발송요금 ◦ 15,435천건 × 2,530원 × 96.5%(할인율) = 37,683,781천원	5,585,145 천원 (B-A)
나. 지방청 및 세무서 등기우편 발송요금 ◦ 2,485천건 × 2,530원 = 6,287,050천원	나. 지방청 및 세무서 등기우편 발송요금 ◦ 2,151천건 × 2,530원 = 5,442,030천원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 기반 재작성

이에 대해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일부 납부고지서 발송이 감소²⁾하였다가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정상 발송하여 2022년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다는 설명이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유예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전자송달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은 현재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방식으로만 송달하고 있고 5만 원 이상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신청자의 환급 편의성 제고 및 발송 예산의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방식을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³⁾ 상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⁴⁾에서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 서류를 납부고지서,

3)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⁵⁾에서는 다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전자송달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발송 단가가 높은 우편요금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와 현금 수령으로 나뉘는데, 계좌이체의 경우 신청자가 신청 당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바로 환급이 되므로 별도의 환급금통지서 송달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신청자가 현금 수령 방식을 선택한 경우 환급 대상자 확인을 위한 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이 필요한데, 국세청은 현재 환급금통지서를 모두 우편 방식으로 송달하고 있다(환급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5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에서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률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18억원 이상, 근로장려금의 환급금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13~17억원 수준 발생하는 등 매년 환급금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비용으로만 3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⁶⁾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6)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발송(5만원 이하 환급시) 비용은 제외한 것으로, 일반우편 발송 건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우편발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환급금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
장려금 외 세목 통지서	총액	1,895	1,560	1,885
	산출 내역	77만건×2,530원×96.5%	64만건×2,530원×96.5%	77만건×2,530원×96.5%
장려금 환급통지서	총액	1,505	1,758	1,318
	산출 내역	(48만건×2,530원×96.5%)	(72만건×2,530원×96.5%)	(54만건×2,530원×96.5%)
합계		3,400	3,318	3,203

주: 2023 예산 및 2024 예산안 수치는 예상치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이러한 점에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전자송달 방식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환급금 신청시, 즉 장려금을 신청하는 단계 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의 전자송달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출력물이 없어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 여부가 확인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⁷⁾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신청자의 환급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편 발송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둘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종류를 확대하여 각종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외에도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 규정된 서류를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및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송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기관 간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송달은 별도 전송비용(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전자송달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07년 고시 제정 당시 전자송달 대상 서류가 8종류⁸⁾였던 것이 현재는 10종류⁹⁾(2023년 8월 말 기준)로, 고시에 규정된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에서는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24년 12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종류 확대를 추진하여 각종 서류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납부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증여세 고지(수시부과 제외)이며, 세액공제 시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전자고지부터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¹⁰⁾

8) 채권압류통지서(갑),(을), 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급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9)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급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10) 징수결정 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세액(고지 건당 1천원)을 차감하여 고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활용 현황]

(단위: 천건, %)

2021년(7.1.~12.31.)			2022년			2023년(1.1.~8.31.)		
전자고지 건수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 비율	전자고지 건수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 비율	전자고지 건수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 비율
263	185	70.3	867	672	77.5	422	290	68.3

자료: 국세청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이후 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현재 등기우편 요금 단가가 2,530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자고지 혜택으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더라도 등기우편 발송 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액공제 제도 대상 세목의 확대, 공제 금액 및 공제 시기 관련 제도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 활용을 통한 모바일 발송 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는 이용자가 행정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으로, 받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모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비서 구삐와 KT카카오페이 비교]

사업명	모바일 안내문 (KT·카카오페이)	국민비서 구삐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참여사업자	KT, 카카오페이 등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전자문서 포함여부	본인인증 후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형식으로 발송	알림메시지(문자, PUSH 등) 발송
전자문서 효력	효력 있음	효력 없음
이용자 신청여부	납세자의 개별신청 없이 발송	반드시 개별신청 필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알림받을 앱(네이버, 카카오, 토스, 문자 등) 지정
비용지불 주체	발송기관(국세청)	행정안전부

자료: 국세청

특히 국민비서 구삐는 행정안전부와 민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발송 단가¹¹⁾가 훨씬 저렴하고, 카카오톡 외에 금융앱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 7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하나의 참여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 비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안내문에 대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개별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신청이 없는 경우 다시 일반우편을 발송해야 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것은 현행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문 방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하여 개별신청을 받은 건이 아직 1종¹²⁾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발송방식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모바일 발송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2022년도 협약 기준

① 카카오톡, 네이버: 5.06원/건
② 그 외 민간앱: 무료
③ 문자(LMS): 26.4원/

12) 국세청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별신청을 받은 안내문은 「23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안내」 1건으로 총 대상자 1,776천명 중 7천명(9.14.기준)이 신청(0.39%)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기존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및 일반우편을 통한 각종 안내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해당 발송 방식을 확대 및 홍보하고, 이를 통해 안내문 발송 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부과·징수지원 사업¹⁾은 국세청 직원의 조사, 체납처분, 주소지 확인, 세원발굴업무, 기타 각종 현장확인업무, 교육여비 등 국세 부과·징수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600만원이 감액된 45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부과·징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부과·징수 지원	26,038	47,111	45,355	△1,756	△3.73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출장 예상 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2023년도 분야별 비율로 배분하여 출장 인원 및 일수 등 산출 근거를 사후적으로 역산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과거 출장 실적 및 2024년도 실제 업무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장 경비 예산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전 직원의 업무 수행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를 동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관내·외 출장 대상 기준인원을 조사·체납분야 5,389명, 세원관리 분야 11,458명, 기타 분야 4,737명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총 21,573명으로 국세청의 전체 인원 21,598명의 약 99.9%에 해당한다. 즉, 국세청은 모든 국세청 공무원을 관내·외 출장 대상 인원으로 가정하고, 관내 출장의 경우 분야별로 연평균 32일~94일, 관외 출장의 경우 분야별로 연평균 6.3~30일을 책정한 것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131-300

[국내여비 산출내역]

• 출장비 총소요 45,355백만원 (①+②) (△3.7%)

① 관내출장: 27,447백만원

27,447백만원 관내출장	=	㉗ 10,163백만원 조사체납 분야	+	㉘ 14,290백만원 세원관리 분야	+	㉙ 2,994백만원 기타 분야
-------------------	---	------------------------	---	------------------------	---	---------------------

㉗ 10,163백만원 조사체납 분야	=	5,389명 인 원	×	94일 출장일수 (월 7.9일)	×	2만원 단가
------------------------	---	---------------	---	-------------------------	---	-----------

㉘ 14,290백만원 세원관리 분야	=	11,458명 인 원	×	62일 출장일수 (월 5.2일)	×	2만원 단가
------------------------	---	----------------	---	-------------------------	---	-----------

㉙ 2,994백만원 기타 분야	=	4,737명 인 원	×	32일 출장일수 (월 2.6일)	×	2만원 단가
---------------------	---	---------------	---	-------------------------	---	-----------

② 관외출장: 17,908백만원

17,908백만원 관외출장	=	㉗ 7,969백만원 조사체납 분야	+	㉘ 8,445백만원 세원관리 분야	+	㉙ 1,494백만원 기타 분야
-------------------	---	-----------------------	---	-----------------------	---	---------------------

㉗ 7,969백만원 조사체납 분야	=	5,389명 인 원	×	30일 출장일수 (월 2.5일)	×	5만원 단가
-----------------------	---	---------------	---	-------------------------	---	-----------

㉘ 8,445백만원 세원관리 분야	=	11,458명 인 원	×	15일 출장일수 (월 1.2일)	×	5만원 단가
-----------------------	---	----------------	---	-------------------------	---	-----------

㉙ 1,494백만원 기타 분야	=	4,737명 인 원	×	6.3일 출장일수 (월 0.5일)	×	5만원 단가
---------------------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분야별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 출장일수는 2024년 예산액(45,355백만원)²⁾을 2023년 예산액 기준 관내·관외출장 및 업무 분야별 비율로 배분한 후 출장비 단가³⁾×출장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 전액이 국세청 직원의 업무 수행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현지 출장여비를 지원하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전체 예산 규모를 실 소요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놓고 분야별 비율을 나누어 출장 인원 및 소요 예산을 도출하는 것은 실제 출장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방식과 같이 출장경비의 예상 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 예산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편성·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출장 경비 예산은 최근의 출장 실적 및 2024년도의 계획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출장 대상 인원 및 일수 계획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세청은 국세청 조직의 출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출장 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부서별로도 업무 성격에 따라 출장비 소요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 전 직원의 출장경비를 하나의 사업에 편성하기보다는 관서별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출장 소요 및 경비(국내여비)를 산정하여 이를 목적에 맞는 적정 사업비에 편성하게 함으로써 실제 예상되는 출장 소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세청은 2023년도 집행예산액(379억원)을 기준으로 대면 교육 추가 소요액(57억원) 및 출장 증가 예산액(18억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산출하였음

3) 관내 2만원, 관외 5만원

신규 사업비에 미반영되어 기본경비에 편성한 예산의 감액 또는 사업비로의 이관 필요

가. 현 황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¹⁾은 국제조세관리관실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1,939	2,167	2,367	200	9.2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2024년도 신규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감안하여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취지 및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어 있는 예산 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업성 예산은 감액하거나 사업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과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사업, 개도국 조세행정역량강화 사업(ODA)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11-253

[국세청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4년		담당부서
		요구	조정	
디지털세 운영지원	디지털세 운영지원	409	196	국제조세담당관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사업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1,381	1,000	국제협력담당관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ODA)	100	100	국제협력담당관

자료: 국세청

다만, 개별 신규사업 내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비가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을 보면 일반수용비에는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위한 인쇄물 등 제작 및 조달 수수료로 1억 2,36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용역비로는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운영지원회를 위한 행사장 및 기자재, 차량, 통번역비로 7,635만원이 편성, 업무추진비도 국세청장회의 등 해외출장 지원경비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1,452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중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관련 예산]

(단위: 천원)

[253]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210-01]일반수용비		
내역	산출근거	원화
3.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123,650
가. 인쇄물 등 제작	113,650,000 =	113,650
나. 조달 수수료	10,000,000 =	10,000
[210-14]일반용역비		
1.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76,350
가. 행사장 및 기자재	65,550,000 =	65,550
나. 차량	1,800,000 =	1,800
다. 통번역비	9,000,000 =	9,000
[240-01] 사업추진비		
1. 국세청장회의 등 해외출장 지원경비	14,521,000원=	14,521

자료: 국세청

그런데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예산은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주요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인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²⁾ 사업은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³⁾ 개최를 위한 것으로,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3138-300

3)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과세당국* 간 세정경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장 협의체

* 회원국: 한국,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2024년도 아시아 국제청장회의 개최 사업(신규)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4 예산안	
분류	금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
•행사장 및 기자재	675
•회의오만찬	86
•차량임차	39
•홍보운영비	16
•통번역비	50
•문화행사 및 기념품	68
•국외여비	43
•사업추진비	23
○ 비목별 분류(합계)	1,000
•일반수용비(210-01)	66
•일반용역비(210-14)	868
•국외여비(220-02)	43
•사업추진비(240-01)	23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은 아시아 국제청장회의의 사전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과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서, 아시아 국제청장회의의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직 운영이나 지속적인 운영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3년 아시아 국제청장회의 개최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는 회의 준비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경비에의 별도 예산 편성 필요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규 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예산을 확정된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신규사업 관련 예산 2억원은 감액하거나 사업비(아시아 국제청장회의 개최)로 이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세 운영지원⁴⁾ 사업은 2024년 디지털세 시행에 따라 국제논의 참여, 제도 홍보 및 성실신고 지원, 종사직원 직무능력 향상, 연구용역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및 정책연구비로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9,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

[2024년도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신규) 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4 예산안	
분류	금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6
•디지털세 운영지원	196
○ 비목별 분류(합계)	196
•일반수용비(210-01)	59
•국외업무여비(220-02)	92
•사업추진비(240-01)	10
•정책연구비 (260-02)	35

자료: 국세청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중 국제업무운영지원을 위한 ‘디지털세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중 디지털세 운영 관련 예산]

(단위: 천원)

[253]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210-01]일반수용비		
내역	산출근거	원화
1. 국제업무운영지원		
아. 디지털세 운영비 등	25,000,000원=	25,000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디지털세 운영비는 2024년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며, 구체

4) 코드: 일반회계 1136-300

적으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통번역비 등 비용과 업무인력 증원에 따른 전산물품 등 소모성물품 구입을 위한 항목으로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 예산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무인력 증원 부분의 경우 내년도 전담조직(과) 신설 또는 인력 증원 등을 위해 협의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2023년 8월말 기준), 국세청은 디지털세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서도 관련 책자 등의 발간 및 기타 홍보 비용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세 운영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일반사업비와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방식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제조세관리관실의 기본경비 결산내역을 보면 2020~2022년 연속으로 이·전용 감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세 운영 지원 관련 추가 소요 발생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액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에 편성된 디지털세 운영지원 관련 예산 2,500만원 역시 감액하거나 주요 사업비(디지털세 운영지원)로 이관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2,486	2,486	-	△851	1,635	1,459	58.6	89.2	176
2021	2,041	2,041	-	△21	2,020	1,499	73.4	74.2	521
2022	2,027	2,027	-	△54	1,973	1,939	95.6	98.2	34
2023	2,167	2,167	-	-	2,167	894	41.3	41.3	-
2024	2,367	-	-	-	-	-	-	-	-

주: 2023년은 7월말 기준

자료: 국세청

가. 현 황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¹⁾은 국세행정지원을 위해 공무원 등 근로자(청사미화, 시설관리, 사무원 등)와 사회복지요원 및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억 8,700만원이 증액된 4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행정지원인력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지원인력 운영	36,688	38,063	42,350	4,287	11.3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청년인턴 제도는 2023년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 사업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을 계획 중에 있는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은 모든 청년인턴을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여 세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국세청 사업의 세무서 납세도우미 지원 인력의 수행 업무와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화하여 청년인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참여 수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년인턴 확대 관련 보도자료²⁾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38-304

족하기 위해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청년인턴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청년인턴 주요 업무 예시]

- ① 정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
- ② 기관장 등 브리핑 참여 · 모니터링
- ③ 소관 정책 관련 제도 및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조사·정리
- ④ 청년보좌역 업무 및 2030 자문단 운영 지원 등 부처 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부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 참여
- ⑤ 회의 준비 과정 및 행사 준비 과정 경험(참석자 확인, 회의장 세팅 등)
- ⑥ 정부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 간담회 참석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3.1.17)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청년인턴 운영방안」(2023.3.)에서 단순 사무보조 · 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세청의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따르면 청년인턴 200명을 선발하면서 모든 근무지를 일선 세무서로 정하였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 청년인턴의 주요 업무로는 일선 세무서에서의 세금 신고업무,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이 제시되었다.

[국세청 청년인턴 주요 업무 예시]

- 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업무 및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 ② 민원 부서 상담 · 안내 업무 지원(전담 또는 순환)
- ③ 지역별 소상공인 · 직능 단체 등 납세자와의 소통 행사 등 참석 · 지원
- ④ 기타 회의 · 행사 준비 업무 등

자료: 「국세청 청년인턴 운영방안」(2023.3.)

2) “윤석열 정부,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 (작년 2.2만명 → 올해 3.5만명)”, 2023.1.17. 국무조정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납세자 세금신고지원³⁾ 사업을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채용된 위탁인력(세무서 납세도우미)도 국세청 청년인턴의 담당 업무와 유사하게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청년인턴과 세무서 납세 도우미가 수행하는 업무의 차별성이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국세청은 2024년에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의 전국 단계별 확대를 위하여 관련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국세청은 2024년 예산 확대시 기존 서울·경기·인천지역 49개 세무서에 더해 지방 10개 세무서(대전·광주·대구청 각 2개서, 부산청 4개서)에 위탁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제시한 청년인턴과 세무서 파견 위탁인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나, 배치 관서나 담당 업무의 범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청년인턴과 세무서 파견 위탁인력의 비교]

구분	청년인턴	세무서 파견 위탁인력
취지	공직 경험, 정책 이해도 제고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채용 대상	청년	위탁업체 전문인력
업무범위	신고업무지원, 민원상담·안내, 소통행사·회의 등 참석·지원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 상담·안내·교육
배치관서	전국 133개 세무서 대상	수도권 49개 세무서 대상

자료: 국세청

3) 코드: 일반회계 3134-300

즉, 위탁업체를 통해 세무서에 배치되는 세금신고 지원 인력과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가 사실상 유사한바, 이와 같은 인턴제도의 운영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 청년인턴과 기존 세무서 납세도우미 지원 인력과 업무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년인턴을 모두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여 세금 신고 지원 업무에만 한정하기보다는 국세청의 다양한 사업 및 청년 관련 정책 등을 배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화·체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3년도 국세청 청년인턴 참여 수요 및 업무 분야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국세청 청년인턴의 근무기간은 2023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총 6개월이고,⁴⁾ 담당 업무는 일선세무서에서 주요 신고업무 및 장려금 신청 지원, 민원상담 등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국세청 청년인턴 담당 업무]

채용 분야	채용 부서	담당 업무
세무 행정	95개 세무서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 민원 상담·안내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23.3.23.)

국세청은 지난 2023년 3월 24일 95개 세무서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채용 공고 결과 응시인원 미달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인원이 제일 많았던(64명) 서울청 세무서의 경우 1차 공고(2023.3.24.)의 응시율이 채용인원 대비 85.9%에 불과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2023년 4월 10일 응모가 없었던 33개 세무서 71명에 대한 채

4)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내에서 조정

용 공고를 다시 냈고, 2023년 5월 16일에도 26개 세무서 33명에 대한 채용 재공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2개 세무서(금천세무서 2명, 거창세무서 1명)에서는 응시인원 미달·응시포기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 최종 채용된 국세청 청년인턴은 목표 채용 인원 200명에 미달하는 190명이었고, 그 중 현재까지(2023년 8월말) 근무 유지 중인 인원은 165명(86.8%)이며, 해당 청년인턴들은 모두 일선 세무서에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인턴 21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예산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2023년도 청년인턴의 응시율 저조 및 중도 이탈자 발생, 향후 인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배치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2024년도 청년인턴 채용인원은 적정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 예산 산출내역]

- 청년인턴 2,800백만원
 - 일용임금: 2,343백만원 (인원 × 시급 × 월근로시간 × 개월수 = ① + ②)
 - ① $168 \times 9,900\text{원} \times 209 \times 6$ (6개월 근무가정)
 - ② $42 \times 9,900\text{원} \times 209 \times 3$ (3개월 근무가정)
 - 고용부담금: 257백만원 (2,343백만원 × 11.08%)
 - 일반수용비: 18백만원(청년인턴 교육·소통활동비)
 - 여비: 179,306천원($168\text{명} \times 10,000\text{원} \times 12\text{일} = 120,000\text{천원}$,
 $42\text{명} \times 10,000\text{원} \times 6\text{일} = 60,000\text{천원}$)

자료: 국세청

가. 현 황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¹⁾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과세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업자들의 세원관리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847	2,343	2,466	123	5.2

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제169조2)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제150조3)의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이상이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136-300

2)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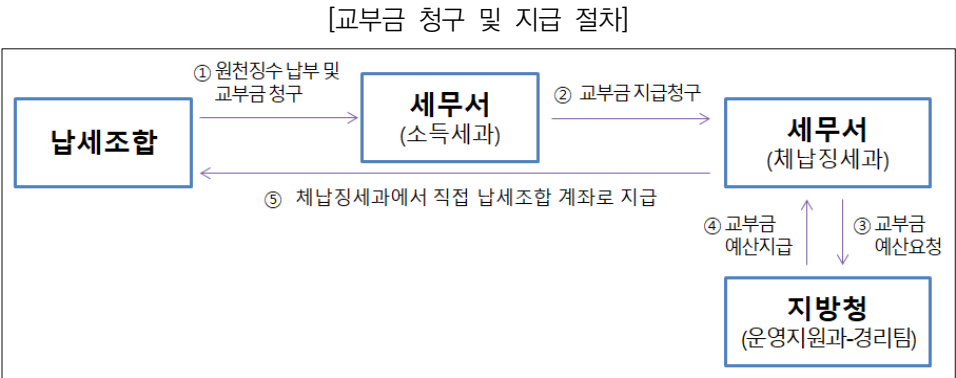
3)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납세조합 법정교부금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하는 납세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96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을 통한 납세조합 운영 지원 제도 유지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세조합 중 사업자 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8년 이후 복식부기 의무자의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면서 조합 수가 감소하고⁵⁾ 납세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⁶⁾

사업자조합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납세조합 및 징수세액, 교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조합 및 조합원 수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징수세액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자조합 및 사업자조합의 징수세액 및 교부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자 조합	조합 수	62	59	35	33	27
	조합원 수	4,760	4,317	3,481	2,946	2,185
	징수세액	554	485	449	442	389
	월평균징수세액	46	40	37	37	32
	교부금	16	9	9	9	8
근로자 조합	조합 수	21	21	18	18	20
	조합원 수	12,046	13,993	9,952	19,193	19,387
	징수세액	150,984	105,437	137,445	176,908	148,447
	월평균징수세액	12,582	8,786	11,454	14,742	12,371
	교부금	3,376	2,123	2,373	3,377	2,840

자료: 국세청

사업자조합제도는 1960년대 징수인력 및 인프라 부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현재는 홈택스로 대표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충·개편되고 있고 한국은행·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민간 모바일 세무서비스 등장 등으

5) ('08년) 130개 → ('22년) 27개

6) ('08년) 80억원 → ('22년) 4억원

로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등 국세청이 납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한편 근로자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조합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22년 근로자조합의 조합원 수가 약 2만 명 수준인데 국세청은 연 30억원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1인당 15만원의 징수비용이 소요되고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납세조합을 통한 징수세액 대비 교부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부여가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근로자조합원들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징수행정비용 절감 및 고액의 세수확보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제도이며, 세액공제 혜택 적용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비용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설명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과거와 달리 국세청의 납세지원 인프라가 고도화되었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세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조합비를 부담하면서 납세조합에 가입할 유인이 없으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동 제도의 지속 운영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세액공제 혜택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2024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7)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조합제도는 납부세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사업자조합의 납세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관세청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188억 7,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2억 4,900만원(25.6%) 증가하였다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8,217	94,624	118,873	24,249	25.6

자료: 관세청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6,576억 2,3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3억 7,400만원(2.7%) 증가하였다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89,275	640,249	657,623	17,374	2.7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463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2,900만원(1.7%)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과 소요정원 증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321,940	340,515	346,344	5,829	1.7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318,234	336,360	342,029	5,669	1.7
인재개발원인건비	3,706	4,155	4,315	160	3.9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2024년도 관세청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관세청	5,381	5,388	7	0.1

자료: 관세청

2024년도 관세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34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700만원(4.5%)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8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1.0%) 감소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5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800만원(6.5%) 증가하였다.

[2024년도 관세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30,920	33,027	34,514	1,487	4.5
총액인건비 대상	8,667	8,750	8,659	△91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22,253	24,277	25,855	1,578	6.5

주: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2024년도 관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 증액되었는데, ①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프로그램은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증액되고, 인천공항 T2(24.11월 예정) 등 공항만 확장 소요에 따른 통관감시장비 도입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2023년 874억원 → 2024년 1,180억원), ③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과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및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R&D) 등 3개 신규 사업이 신설되고,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이 완료되어 주요 사업비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가 30개에서 32개로 증가하였다.

2024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R&D 과제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전 기획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각 내역사업들의 목적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 신규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청은 2024년도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을 산출한 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 명목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관세청 인건비의 연례적인 불용 및 이·전용을 통한 감액 발생을 고려할 때 인건비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세청은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하거나, 기본경비에 편성해야 할 일반적인 성과 우수 직원 포상금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고 있는바,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 구분 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약 80억원 규모이다.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사업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마약 탐지·수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R&D)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창출까지 사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은「관세법」제233의2조의 개정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FTA 및 국제협력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 등을 출연사업으로 이관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4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500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R&D)	304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4,237
	인천공항본부 기본경비	2,949
합 계		7,990

자료: 관세청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항만 감시지원,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 등이 있다.

① 공항만 감시지원 사업은 기존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여행자 통관지원 내역사업이 이관되어 증액되었고, ②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은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사업의 장비 임차료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③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인천공항 T2 등 공항만 확장에 따른 장비 도입 등을 위해 증액되었고, ④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은 2023년도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2개국에 대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관세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개)	공항만 감시지원	5,921	16,632	10,711	180.9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61,190	79,148	17,958	29.3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10,360	22,683	12,323	118.9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8,046	10,890	2,844	35.3

자료: 관세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R&D 사전기획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적정 규모의 예산 산정 필요

가. 현 황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사업¹⁾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창출 등 사업의 쏘 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3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4년도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0	0	304	304	순증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을 수행 중으로 해당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 사업(2024~2026년)과 스마트세관 기술지원 사업이 신규 R&D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42-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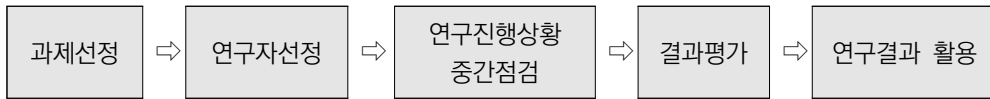
[관세청 R&D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수행주체	2024 예산안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21~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공동 (한국연구재단 출연)	3,600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	2024~2026	(재)과학치안진흥센터 출연	500(신규)
스마트세관 기술지원	2024~(계속)	관세청 직접 수행	304(신규)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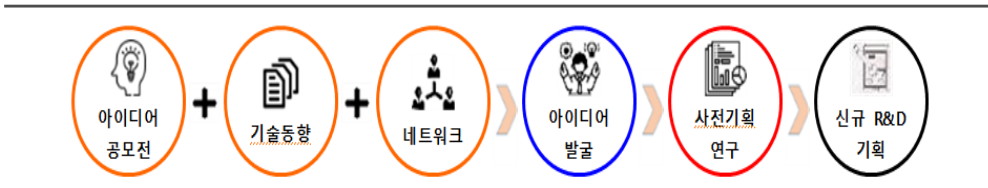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관세청은 R&D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전 기획 사업을 신규 R&D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별도 세부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 스마트세관 기술지원(R&D)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관세청은 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기획부터 후속 관리까지 사업 쉼단계에서의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이나, 관세청은 R&D 전문기관이 없어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동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R&D 사업 지원 단계]



자료: 관세청

이에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면 다양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수집·발굴하여 신규 R&D 과제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다.

[2024년도 R&D 과제 기획 사업]

내역사업	내용	2024 예산안	목적
① 연구개발 사업기획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40백만원	최신기술 수집
	과제 사전기획연구	147백만원	사전기획 연구
②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87백만원	아이디어 수집 및 발굴
③ 연구개발 기술교류	연구개발 기술교류	30백만원	관세청 연구개발 사업 소개 및 홍보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으로 재작성

다만, 관세청은 기존에도 별도의 사업 예산 편성 없이 아이디어 발굴 및 공모전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전 기획 사업들이 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 내역사업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공무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관세청은 2023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의 경우 관세청은 시범사업으로 참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을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하였으며,²⁾ 2024년에는 8,700만원이 동 신규사업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모전 사업 관련 비용을 주요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행정 R&D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자체 공모전을 2020년

2)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참가하여 발명품 모형 제작으로 1,600만원을 집행

* 수상작 8건 × 200만원 = 1,600만원

에서 2022년까지 추진하다가 종료하였는데, 이와 같은 R&D 아이디어 공모전은 관세청의 기관 포상금 등을 통해서도 추진이 가능하며, 관세청에 따르면 동 사업이 없었던 2020~2022년에도 내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 과제로 연계하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의 경우 주제가 안전 분야에 한정되어 오히려 기존의 관세행정 분야 R&D 공모전에 비해 아이디어 발굴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업의 신규 참여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다부처 참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은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관세청이 가장 많은 예산(8,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공모전 예산 편성 규모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개최 개요]

주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
추진경과	- '16년부터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추진된 '해경발명대전' 사업을 확대하여 "2018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추진하였고, '23년부터 관세청 참여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운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23. 3)
산출내역	(i) 아이디어 컨설팅: 8개 수상후보 × 3백만원 = 24백만원 (ii) 발명품 모형제작: 8개 수상후보 × 2백만원 = 16백만원 (iii) 시상식 개최·수상작 전시: 8개 수상후보 × 2.5백만원 = 20백만원 (iv) 대국민 및 전국세관 순회 홍보 및 설명회 개최: 25백만원 ○ 전국세관 및 대국민 순회 홍보: - 본부세관(6), 부속기관(3), 직할세관(1)별 10회 × 60만원 = 600만원 ○ 포스터 제작: 50개 전국세관별 평균 6개씩 300매 × 1만원 = 300만원 ○ 홍보 팸플렛 제작: 세관직원 및 민간인 배포 기준 6,000매 = 100만원 ○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용품 제작: 1.5만원 × 1,000개 = 1,500만원 (v) 전문가 자문, 간담회 개최 등: 2백만원(사업추진비)

자료: 관세청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예산 8,700만원에는 아이디어 컨설팅, 발명품 모형 제작, 시상식 개최 등 외에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대국민 및 전국세관(본부·직할 세관, 부속기관 단위) 직원 대상 순회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2,500만원의 홍보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공모전 홍보 예산 2,500만원 중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용품 제작 예산이 1,500만원으로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바, 관세청 직원 위주로 진행되는 홍보행사에 대한 단순 관심 및 참여 독려 목적으로 해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R&D 사업에의 기여도 및 효과성에 비추어 과도한 지출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기획 내역사업의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은 해외 관세당국의 신기술, 관세현장의 IoT 적용분야, 외국·타기관의 첨단기술 도입사례 등 관세행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기술 수집을 위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내내역사업 예산 산출내역]

내내역사업명	'24년 예산안 산출내역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 일반연구비(260-01) ◦ 관세행정 기술·분석 자료발간 2회 × 20백만원 = 40백만원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동 기술·분석 자료발간 사업의 목적은 관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R&D,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관세청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획 전문업체를 통해 신기술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작성을 진행하고 세관 현장의 요구사항과 소통을 위해 담당 업무 직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와 같이 기술분석이 단순 관심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 및 활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단순한 현황 분석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청은 이미 다수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분석, R&D 과제 개발 기획 및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관세청 직원의 R&D 분야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하여 자료발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기존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도 신규 내역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기술 관련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과제명	계약 금액	수행기관	연구기간
2022	관세행정 효율 증진 지능형 기술과 부처간 협업 방안 연구	20,000	(주)테크란	2022-02-24 ~ 2022-05-31
2022	수출입화물 검사 첨단 지원장비 개발 기획 연구	20,000	한국기계연구원	2022-03-07 ~ 2022-06-10
2022	계량모형 활용 등을 통한 관세청 조기정보시스템 고도화방안 연구	49,000	한국과학기술원	2022-10-07 ~ 2022-12-03
2023	커스텀즈랩2.0 공모과제 개발기획 정책연구	20,000	(주)테크란	2023-03-17 ~ 2023-06-14
2023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 내외 환경 분석 및 과제 발굴	99,800	(주)미래비전그룹	2023-05-09 ~ 2023-09-09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기술교류’ 내역사업은 국내 기술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기관, 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세행정 관련 과학기술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관세청은 그간 연구개발한 성과물(논문, 특허, 샘플 등)을 박람회 등에 전시·출품하고, 관련 정부기관, 연구자,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주고받음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이 처음 추진한 R&D 사업인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 2021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 시점

에서 관세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할 필요성이 낮고, 기술박람회 참여를 통한 관세청의 연구개발 사업 홍보가 향후 관세청의 R&D 과제 발굴 및 사업 기획에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실제로 관세청은 2023년에 국제기구, 국내 수출입기업 등을 초청하여 관세행정 기술 소개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K-Customs Week³⁾을 개최한 바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단순 홍보 사업 추진은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청은 본 R&D 사업 추진 이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기술교류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전 및 설명회, 자료 분석 및 기술교류 등 다양한 사전 기획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에 관세청이 추진해 오던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관세청 내부 직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홍보예산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별도 신규 사업 편성을 통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청의 기존 R&D 사업 수행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 바가 없고, 과제별 소요 예산도 당초 정확한 근거로 산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기획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동 사업에서 과제 사전기획연구를 위해 1억 4,700만원의 연구용역비 및 사업추진비를 편성하였다.

3) 2023년도 9억원 예산 편성

[과제 사전기획연구 내내역사업 예산 산출내역]

내내역사업명	'24년 예산안 산출내역
과제 사전기획연구	○ 일반연구비(260-01): 144백만원 ◦ 연구개발과제 사전기획연구: 3개 과제 × 48백만원 = 14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백만원 ◦ 연구과제 3개 × 6명 × 6회 × 3만원 = 3백만원

자료: 관세청

사전기획연구는 본연구에 앞서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과학 기술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본연구는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아이디어)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세청은 세관 현장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세청은 그간 파악된 세관현장 기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주요 현안(불법마약 대응) 등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 3개의 사전기획연구 과제를 이미 선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기획연구 과제 선정 내역]

◦ (과제1) 감시종합상황실, 컨테이너검색센터, X-ray검색기 등 각종 감시장비를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 (과제2) 특송, 우편, 휴대품 및 컨테이너 X-ray영상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방안 마련하고 구축비용, 운영조직, 운영절차 수립을 연구 ◦ (과제3) 별도 특수 제작된 밀폐 공간에서 여행자 수하물 및 특송물품 등을 오염없이 후각센서, Thz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분석할 수 있는 탐지 기술연구
--

자료: 관세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3항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기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를 사전 기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은 아이디어 공모전, 세관 현장 기술 수요 조사, 다수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감시 및 탐지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청은 이미 2021년부터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⁵⁾을 통해 X-Ray 장비, 검색 및 탐지 장비 개발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세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 관세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커스텀즈랩 사업단을 선정(2021.4.)하여 수요 발굴 → 기획 → 연구개발·적용까지 추진하였으며 R&D 아이디어 발굴 및 사전기획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바 없었다.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 연구과제 내역]

연구단명	과제명	총괄 주관기관명
커스텀즈랩1연구단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커스텀즈랩2연구단	X-Ray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커스텀즈랩3연구단	세관 통관 물품 3차원 방사선 복합 탐지 장비 개발	한양대학교
커스텀즈랩4연구단	AI기반 분산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커스텀즈랩5연구단	은닉물 탐지 대인용 THz 검색 장비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커스텀즈랩6연구단	컨테이너 적재 화물 세관 검사용 탐사 로봇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커스텀즈랩7연구단	생체신호 및 얼굴표정 기반 세관 검사 대상 여행자 선별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료: 커스텀즈랩사업단

특히, 관세청은 사전기획연구의 과제별 단가를 4,8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연구개발과제명을 '사전기획연구'로 검색하여 나온 총 135건의 사전기획연구비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⁶⁾ 이후 해당 단가 금액에 맞추어 연구비 산출 근거를 제

5) 사업기간: 2021~2024년

시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평균 단가 산출 방식은 연구과제의 분야별 특성, 요구되는 산출물의 내용, 투입 인원, 연구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동 사전기획연구 사업의 추진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사전기획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6) 총 135건, 사전기획연구비 66억 5,477만원, 평균 4,929만원

7) 인건비(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명) 30,880,417원, 일반경비 8,106,000원, 일반관리비 1,945,571원, 이윤 2,859,989원, 부가세 4,371,698원 등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및 신청 수요를 고려한 지급률 조정 필요

가. 현 황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¹⁾은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 비용 및 검사비용 지원 업무 영역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홍보 및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된 6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7,321	6,741	6,693	△48	△0.7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은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비용 부담 경감, ② 공익확보, ③ 민원해소 및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관세법」 제173조제3항²⁾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화주의 검사비용³⁾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

2)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컨테이너화물 정밀검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관세법」 제17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을 기존 100%에서 2023년 9월부터 60%로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지급률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이 시작된 2020년부터 비용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2020년)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지원 검사비용 집행률이 29.3%로 저조하였으나, 이후 비용 지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 예산 집행률이 100%인데, 실제 검사비용 지원 신청 액수가 77억 1,000만원으로, 2022년에 편성된 예산 6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검사비용의 100%를 지원함에 따라 신청 검사비용이 지원 예산을 초과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검사비용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원 예산액	신청 검사비용	지원 검사비용 ¹⁾	집행률
2020	7,134	2,836	2,090	29.3
2021	8,625	8,217	7,411	85.9
2022	6,800	7,710	6,800	100.0
2023. 8월말	6,200	5,702	5,340	86.1

주: 1)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건수(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입건)·수출적재지·수출반입후) 기준

자료: 관세청

한편, 2023년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예산이 68억원에서 62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검사비용 지원금이 53억 4,000만원 집행되어 2023년도 예산의 86.1%가 이미 집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전년 대비 예산감액,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 등으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전액 지급하던 검사비용 지원금을 2023.9.1.신청분부터 지급률을 60%로 조정하여 예산 소진 시기를 늦추고, 수혜자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급률 조정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 관세사회 공지, UNI-PASS 팝업 등으로 안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이 연중에 지급률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 받는 수혜자(화주) 입장에서는 검사비용 지원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수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출입 물량의 증가, 검사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검사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연말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금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수입·수출입검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⁴⁾

2024년도의 경우도 검사비용 지원 예산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비용 지원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잦은 지급률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혜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비용 지원 사업 예산 규모, 월별 검사비용 신청 건수 및 지급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지원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206)검토보고서, 2019.11. 기획재정위원회, p.30

가. 현 황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¹⁾과 인재개발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²⁾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각각 56억 6,900만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20억 2,900만원과 4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및 인재개발원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18,234	336,360	342,029	5,669	1.7
인재개발원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706	4,155	4,315	160	3.9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2024년도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인원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산출한 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정재원을 명목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관세청의 인건비 예산은 연례적인 불용 및 이·전용을 통한 감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매월 관세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공무원에게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인건비 예산안 규모는 정부 공통 기준 및 인력 운용 소요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01-100

2) 코드: 일반회계 7201-100

관세청은 관세청(본부), 세관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인재개발원³⁾별로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정한 부처별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2024년 관세청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직급	관세청 (본부)	세관관서	관세평가 분류원	중앙관세 분석소	관세인재 개발원
정무직	차관급	11,801	-	-	-	
일반직	고위공무원	11,597	11,344	-	-	11,685
	3급	9,001	9,410	-	-	
	4급	8,660	8,800	9,290	9,090	9,490
	5급	6,503	7,315	7,337	7,205	7,288
	6급	4,432	4,263	4,443	3,959	4,855
	7급	3,445	3,488	3,682	3,385	4,182
	8급	2,817	2,597	2,847	2,541	3,578
	9급	2,338	2,257	2,518	2,123	2,688
	전문경력관 나군	4,987	4,599	-	-	5,007
	전문경력관 다군	2,817	2,356	-	-	2,643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 기반으로 재작성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에는 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을 제외한 관세청(본부), 세관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예산은 2023년 3,364억원에서 2024년 3,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6,900만원(1.7%) 증액 편성되었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직급별 인원을 곱하여 인건비 예산을 산출한 후, 해당 산출 규모에 '조정재원'의 명목으로 관세청(본부) 인건비(보급)를 5억 4,900여만원 감액, 세관관서 인건비(보급)를 6억 2,400만원 증액하였는바,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의 2024년도 조정재원을 통한 증액 규모는 약 7,464만원이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인건비가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는 관세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 41억 5,500만원에서 43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3.9%)이 증액되었다.

3) 책임운영기관

동 사업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직급별 인원을 곱하여 2024년도 인건비 예산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적용된 조정재원을 통한 인건비(봉급) 증액 규모는 약 1억원이다.⁴⁾

이와 같이 관세청은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및 기준 인원을 고려하여 산출한 인건비 규모에 “조정 재원”의 추가 적용을 통해 2024년도 인건비(봉급)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해당 조정재원 규모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관세청 인건비 집행실적을 보면 인건비 사업의 경우 2020~2022년까지 매년 86억원~136억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용을 통한 감액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세인재개발원 인건비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4,200만원~3억 1,400만원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0년과 2022년의 경우에는 일부 이·전용 감액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건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C/B)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7101-100)	2020	313,201	△1,559	311,642	302,959	8,683	96.7	97.2
	2021	324,582	△1,273	323,309	309,639	13,670	95.4	95.8
	2022	327,314	△213	327,101	318,234	8,867	97.2	97.3
	2023	336,360	△1,630	334,730	221,818	-	65.9	66.3
	2024	342,029	-	-	-	-	-	-
인재개발원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7201-100)	2020	3,865	△12	3,853	3,811	42	98.6	98.9
	2021	4,002	-	4,002	3,688	314	92.1	92.1
	2022	4,056	△73	3,983	3,706	277	91.4	93.0
	2023	4,155	-	4,155	2,650	-	63.8	63.8
	2024	4,315	-	-	-	-	-	-

주: 2023년 집행액 및 집행률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4) 100,196,000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인건비 지출 한도에서 부처별 기준단가, 2024년도 처우개선율(2.5%) 및 소요정원 책정결과(+17명), 최근 3년간 불용률 및 2024년 집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 직제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관세청 요구	행정안전부 검토결과(+21명)	기획재정부 검토결과(+17명)
(본청) +1과/+17명 (소속) +6과/+394명	(소속) +21명	(소속) +17명(△4명)

자료: 관세청

그러나 처우개선율은 직급별 인건비 단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인건비 사업 예산의 연례적 불용 발생 및 이·전용을 통한 감액 추이를 고려하면 2024년도 관세청의 인건비 예산은 일부 감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 구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및 일부 감액 필요

가. 현 황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쟁점 현안에 대한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AEO²⁾에 대한 국내외 학술 연구자료 수집·정비를 통해 분야별 연구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1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518	563	462	△101	△17.9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174	157	56	△101	△64.3

자료: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³⁾ 사업의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은 위험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우수부서 포상, 업무매뉴얼·적발사례집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231-302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3) 코드: 일반회계 1333-304

[2024년도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592	741	741	-	전년동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12	12	-	전년동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⁴⁾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관 정보화 지원 사업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세청 및 산하세관에 네트워크 공사, 전산소모품 등 최적의 정보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억 100만원 증액된 9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53,426	61,190	79,148	17,958	29.3
세관 정보화 지원	9,532	9,199	9,300	101	1.1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관세청은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하였는바,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는 2023년까지 공모전 사업 수행을 위한 1억 5,700만원(일반용역비, 사업추진비, 포상금)이 편성되었으나, 공모전의 위탁용역 대신 직접 수행을 요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안에서는 일반용역비 예

4) 코드: 일반회계 1441-500

산(1억 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행사 진행을 위한 임차료(606만원) 및 포상금(5,000만원)만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7 백 만 원	○ 일반용역비(210-14): 100,957천원 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 사업 (84,000천원) 나. 국내외 관세평가·품목분류· AEO 정보수집 및 쟁점사례 연구 (17,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6,105천원 가.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 행사진행: 6,105천원 ○ 포상금(310-03): 50백만원 ◦ 우수논문 및 평석 시상: 연구논문 (1,667천원×24편=40,000천원)+ 판례평석(937천원×16편, 15,000천원)-절사(5,000천원)	56 백 만 원	○ 일반용역비(210-14): 전액감액 → 직접운영으로 전환 ○ 임차료(210-07): 6,062천원 가.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 행사진행: 공모전 개최 6,062천원 ○ 포상금(310-03): 50백만원 ◦ 우수논문 및 평석 시상: 연구논문 (1,667천원×24편=40,000천원)+ 판례평석(937천원×16편, 15,000천원)-절사(5,000천원)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동 내역사업에서 위탁용역을 통해 추진되던 공모전 운영이 직접 수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차료 및 포상금 외에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 사업 직접 수행을 위한 비용(홍보, 시상식, 책자발간, 심사·자문 수당 등)을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사업⁵⁾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정상적 경비로서, 주요사업비를 통해 수행되던 공모전 사업을 위탁용역이 아닌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하여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에서 기본경비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경비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5) 코드: 일반회계 7118-258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시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 사업’은 주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를 주요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둘째, 관세청은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하면서도, 일부 주요사업비에 성과우수 직원 포상금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성과 우수 포상금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324조1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실제 관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외에 「관세법」 제324조1항4호㉠에 근거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제도도 다수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본부 기본경비 사업에는 기관평가 유공자 및 우수기관 포상 등 기관운영 포상금과 규제개혁·제도개선 등 관세행정발전 유공자 포상금 등이 4억 2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각 실국의 기본경비 사업에는 통관심사업무, 밀수단속 등 업무성과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다.

6) 「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법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관세청의 기본경비사업 포상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
본부기본경비	435	407	402
통관국기본경비	35	35	35
심사국기본경비	22	22	22
조사국기본경비	10	10	10
정보데이터정책관기본경비	3	3	3
국제관세협력국기본경비	12	12	12
서울본부기본경비	20	20	25
인천공항기본경비	-	-	29
부산본부기본경비	30	30	28
인천본부기본경비	39	39	15
대구본부기본경비	7	7	8
광주본부기본경비	12	12	10
중앙관세분석소기본경비	2	2	2
관세평가분류원기본경비	9	9	9
평택직할기본경비	2	2	4
인재개발원기본경비	1	1	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사업비(세부사업)에 편성된 포상 예산은 해당 사업의 고유 목적에 따른 것이고,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은 관세청 포함 54개의 직속기관·세관에서 예산성과금, 소송 승소 기여자, 우수공무원 및 관세행정 협조자 등 포상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세청 본부 및 실국의 기본경비에 업무 성과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일부 주요사업비에 특정 사업 목적의 달성이 아닌 일반적인 성과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까지 편성하고 있다.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사업 포상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산출내역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7,000	
1.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6,000	2회 × 3,000천원
2.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	1,000	4회 × 250천원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먼저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의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내역사업에는 우수 위험정보 제공자, 고위험물품 선별·검사 적발자 및 정보분석 우수자 등 우수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포상을 위한 700만원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은 분기별 위험관리 활동을 부서별·개인별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것이고, 위험관리 경진대회 포상은 우수사례에 대하여 경진대회 형식을 통하여 포상하는 것이다.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비교]

구 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지급대상	우수사례 발표 직원	위험관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지급시기	상, 하반기	분기별(연 4회)
평가대상 및 방식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관리 활동 우수 사례를 경진대회 형식을 통하여 평가 * 예) 해외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한 마약적발정보를 위험분석하여 마약 적발	(우수부서) 부서별 정보마일리지*, 검사대상 선별기준 정비 노력도 등 * 등록된 위험정보의 가치성을 평가하여 마일리지 부여 (우수직원) 선별기준 착안사항에 대한 피드백, 우수 로컬선별 팀원 등
포상금	2회 × 3,000천원 = 6,000천원	4회 × 250천원 = 1,000천원

자료: 관세청

그러나 관세청의 본부기본경비 사업에는 위험관리 우수부서 등 포상 명목으로 500만원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별도로 위험관리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으로,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관 전산운영’은 전국 세관 토너 등 소모품 구입, 정보통신 공사 등 지원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데, 관세청은 해당 내역사업에 2,600만원의 포상금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사업 포상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산출내역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26,000	
1. 정보화 업무수행 우수자 및 기관 포상	13,000	50개 팀 및 기관 × 260천원
2. 각종 대회 등 정보화 발전 기여 우수자 및 기관 포상	13,000	50개 팀 및 기관 × 260천원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사업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9월
정보관리 (정보화)	지급액 계	26	26	26	26	26	10.2
	공무원	22	20.5	13	16	20	10.2
	민간인	4	5.5	13	10	6	-

자료: 관세청

그러나 해당 내역사업의 포상금은 ‘정보화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화 업무수행 우수자 및 기관 및 각종 대회 등 정보화 발전 기여 우수자 및 기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2022년 기준 포상금 예산 2,600만원 중 2,000만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되었는바, 정보데이터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에 ‘정보, 데이터 업무 발전 유공자 포상’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사업비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사업의 목적 달성이 아닌 일반적인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은 관세청이 기본경비에 별도 편성·지급하고 있는 포상금과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포상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서·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성과우수 포상금은 기본경비를 통한 포상과 별개로 주요사업비를 통해 지급할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는바, 관세

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의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 예산 및 관세행정 정보 관리(정보화) 사업의 ‘우수 직원 포상금’ 예산 중 기본경비와 중복되는 예산은 감액 하고, 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은 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357억 6,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5억 4,100만원(4.9%)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특별회계	339,165	320,228	335,769	15,541	4.9

자료: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415억 3,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5억 4,000만원(△8.2%) 감소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특별회계	280,633	263,074	241,534	△21,540	△8.2

자료:조달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7,24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72억 7,300만원(40.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특별회계	573,070	517,227	724,500	207,273	40.1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24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72억 7,300만원(40.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특별회계	477,274	517,227	724,500	207,273	40.1

주: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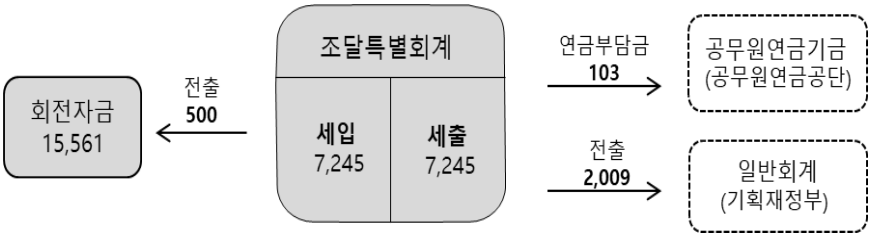
자료: 조달청

다. 재정구조

2024년도 예산안의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2,009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3억원 전출이 발생한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855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800만원(2.2%)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2.5%)을 반영한 데 기인한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76,194	83,727	85,575	1,848	2.2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24년도 조달청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조달청	1,119	1,114	△5	△0.4

자료: 조달청

2024년도 조달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36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900만원(8.7%)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0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만원(2.6%)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96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600만원(11.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2,318	12,589	13,678	1,089	8.7
총액인건비 대상	4,262	3,944	4,047	103	2.6
총액인건비 비대상	8,056	8,645	9,631	986	11.4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24년도 조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신성장·안전제품 구매, 해외실증 확대 추진을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이 증액되었고(2023년 483억원 → 2024년 530억원), ②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3년 26억원 → 2024년 36억원), ③ 국제기구와의 연대·협력 등으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ODA예산이 증액되었다(2023년 2억원 → 2024년 5.4억원).

또한 ④ 핵심 원자재의 목표재고량 확보를 위해 원자재 비축자금 500억원을 편성하였고, ⑤ 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비축창고 신축 예산 86억원, ⑥ 반도체 소재 인 형식 등 긴급수급조절물자 재고순환비용 3억원 반영 등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달청은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세입예산 규모를 회전자금 운용계획 대비 과소추계하여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 회전자금 평균 예치액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세입예산을 증액하고 해당 증액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당초 요소(수) 비축 목적으로 편성된 회전자금 전출금을 자체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는바, 조달청은 2024년 집행계획액을 제외한 2025년 계획분 및 집행잔액 중 적정 규모를 조달특별회계로 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중복에 따른 별도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의 조달청이 추진하던 수출 지원 사업과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수출지원 사업의 체계 정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는 그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제도 자체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역할 및 예비혁신제품의 데모데이 통과 실적을 감안하여 스카우터 성공수당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은 없다.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 등이 있다.

①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은 조달기업의 다양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은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아시아 지역 확산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증액되었다.

[조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조달 특별회계 (2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2,614	3,585	971	37.1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84	544	360	195.7

자료: 조달청

1

과소계상된 세입예산(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증액 편성 및 일반회계 전출 필요

가. 현 황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며,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편성된다. 손익계정의 세입은 주로 조달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손익계정의 세입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계정의 세입(타계정전입금)으로 전출하여 시설비 등 자본계정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자본계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일부는 조달사업을 위한 회전자금으로 전출되어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 등 조달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된다. 회전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매출차액, 수수료 등)은 다시 조달회계 손익계정의 세입에 편성된다.

조달특별회계의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¹⁾은 조달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의 일시적 여유자금을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 이자 수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억 4,600만원이 증액된 29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69-697

[2024년도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영업외잡수익 (회전자금 예치이자)	43,218	13,284	29,930	16,646	125.3

자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의 전년도세계잉여금²⁾은 2023년도 추정수입 총액에서 추정지출 총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예상액을 2024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 8,500만원이 증액된 79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년도세계잉여금	104,836	50,816	79,531	20,085	39.5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이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세입예산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의 초과수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회전자금 평균 예치액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세입예산(회전자금 예치이자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증액하고 해당 세입 증액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상 기타영업외잡수익 중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은 2024년도 예산안 기준 29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조달청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최근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연례적인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는바, 2022년의 경우 수납률이 363.9%에 달하였고 2023년에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수납률 178.4%를 달성한 상태이다.

2) 코드: 조달특별회계 89-893

[기타영업외잡수익(회전자금 예치이자) 최근 4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	12,655	12,655	12,655	12,877	12,877	101.8	100
'21	12,655	12,655	12,655	15,845	15,845	125.2	100
'22	11,875	11,875	11,875	43,218	43,218	363.9	100
'23	13,284	13,284	13,284	23,694	23,694	178.4	100
'24(안)	29,930	-	-	-	-	-	-

주: 2023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3. 7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3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 2022년 회전자금 운용결과 및 2023년 조달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일시적 여유자금 예상 평균 예치액을 1조 6,206억원, 관련 이자수익을 586억원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23년 예산에서는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이 13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2023년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 예상한 회전자금 예치이자수익 586억원과 약 453억원의 차이가 있다.

[2023년도 회전자금 여유자금 예치액 및 이자수익 전망(회전자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예치액		이자수익
정기예금	12,965	80%	492
MMDA(수시입출금)	3,241	20%	94
계	16,206	100%	586

주 1. 정기예금과 MMDA 비율: 22년 정기예금 예치 비율 확대(70% → 80%)로 8:2 운영하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22.10월 2.5% ⇒ 3.0% / '22.11월 3.25% / '23.1월 3.5%)

2. 이자율: '23년 1월 금리(정기예금 연 4.33%, MMDA 연 3.32%) × 0.9 기준 → 정기예금 연 3.8%, MMDA 연 2.9% 적용

자료: 조달청, 「2023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이와 같이 회전자금 예치이자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달청이 관행적으로 과거 장기간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최근 5년 평균예치액 및 수익률을 감안하여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산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3,284	■ 예상 평균예치액(10,141억원) × 예상수익률(1.31%) = 13,284백만원 * 최근 5년 평균 예치액 및 수익률 감안
2024예산안	29,930	■ 예상 평균예치액(12,419억원) × 예상수익률(2.41%) = 29,930백만원 * [(최근 5년 평균수익률 1.579%) + ('22년 말 한은 기준 금리 3.25%)] / 2 = 2.41%

자료: 조달청

특히 2018년 회전자금 여유자금 평균예치액은 7,16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조 9,71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예치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세입예산 편성시 회전자금의 예상 평균예치액을 5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경우 실제 여유자금 예치액의 규모와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회전자금 평균예치액]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160	6,751	11,231	17,240	19,713

자료: 조달청

또한 회전자금 여유자금은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이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 금리도 2023년 9월 기준 3.75%³⁾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달청이 2024년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도 예산안에서 회전자금 예치액의 예상 수익률을 2.41%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세입의 과소 추계로 인해 회전자금 예치이자액이 연례적으로 예산보다 과다 수납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예산보다 초과 수납된 금액은 세출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자본계정으로 전출하여 회전자금이나 일반회계로도 전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2024년 예산안의 회전자금 예치이자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계상할 필요가 있는바, 회전자금 평균 예치액이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점과 최근의 금리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회전자금 예치이자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⁴⁾

한편 조달청은 2024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79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 추정수입 총액에서 추정지출 총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예상액을 2024년도 세입예산상 전년도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는 2023년도의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예상액 약 24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2024회계연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익계정	자본계정	계
○ '22년도 세계잉여금(A=B-C-D)	35,687	1,810	37,497
- '22년도 결산상 잉여금(B)	78,238	17,558	95,796
- '23년도 이월액(C)	5,032	2,451	7,483
- '23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D)	37,519	13,297	50,816
○ '23년 예산대비 세입 전망[E=G-F+(G-1)]	26,801	-	26,801
- '23년 세입 예산(F)			
* 계정간전입금(146,014), 전년도세계잉여금 (손익 37,519, 자본 13,297), 기금전입금(169)제외	314,267	5,961	320,228
• '20~'22년 평균 수납률	100.9%	매각대금 결손	-
- '23년 추정세입(G=F×평균수납률)	317,095	-	323,056
-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예상액(G-1)	23,973	-	23,973

4)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조달청은 기타영업외잡수익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된 사유를 소명하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202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pp.87~88)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익계정	자본계정	계
○ '23년 예산대비 세출 전망($H=I-J$)	9,126	6,108	15,234
- '23년 인건비 등 세출 예산(I)			
* 자본계정 전출(146,014), 일반회계 전출(47,357), 회전자금 전출금(50,000) 제외	205,772	68,084	273,856
• '20~'22년 평균 집행률	96.2%	99.4%	
- '23년 추정세출($J=I \times \text{평균집행률}$)	197,953	67,675	265,628
- 서울청 불용 예상액	1,307	5,699	7,006
□ '23년 추정 세계잉여금($A-D+E+H$)			
→ '24년도 세입예산 상 전년도세계잉여금	71,614	7,918	79,531

자료: 조달청

그러나 조달청이 2023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회전자금 예치이자가 예산상 133억원인 반면, 실제 회전자금 운용계획 상으로는 586억원의 예치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므로 조달청의 자체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만 약 45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3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수납 예상액 450억원에서 2024년 세계잉여금에 “회전자금 예치이자 초과 수납예상액”으로 기반영된 240억원을 차감한 약 210억원의 회전자금 예치이자도 전년도세계잉여금에서 과소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4년 예산안의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⁵⁾

이상을 종합하면 과소계상된 2024년도 회전자금 예치이자액 및 전년도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 규모로 증액하고, 증액분은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조달청은 기타영업외접수익 및 전년도세계잉여금의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게 책정된 사유를 소명하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2022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pp.87~88)

2-1. 자체 집행계획 변경으로 전출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의 조달특별 회계 반납 필요

가. 현 황

긴급수급조절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²⁾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비축물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및 비축 현황]

구 분	지정 일자	비축 현황
① 마스크	'20.4.24	37,468,934개
② 차량용 요소	'21.11.10	3,000 톤
③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22.7.1	1,890 m³
④ 제설제용 염화칼슘	'22.11.30	3,000 톤
⑤ 형석	'23.3.14	5,000 톤

주: 비축현황은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조달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당초 요소수 사태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비축자금을 자체 집행계획 변경을 통해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는바, 조달청은 현재 집행잔액 중 2024년 집행계획액을 제외한 적정 규모를 조달특별회계로 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2년 요소수 생산 차질 문제 해소를 위해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 정부수요 물량 공급(381억원) 및 요소 및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100억원) 목적으로 총 481억원의 회전자금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은 요소 및 요소수 제조업체의 재고 확보 증가 및 수입 다변화 등에 따라 구매 필요성이 급감하여 요소 및 요소수 구매 예산 380억 6,600만원 중 2억 1,700만원만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나머지 378억 4,900만원 전액을 향후 다른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회전자금에 전출하였다.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요소 및 요소수	38,066	2,500		6.6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10,000	(활성탄) 4,900	10,200	102
		(염화칼슘) 1,000		
		(형석) 4,300		
합 계	48,066	12,700		26.4

주: 집행액은 2023.8월말까지의 구매계약 체결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에 따르면 동 자금을 활용한 연도별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 계획은 현재 다음과 같다.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479억원) 집행계획]

(단위: 억원)

연도별	품목별 집행(계약기준)계획					잔액
	활성탄	차량용 요소	염화칼슘	형석	계	
'22년	22 (1.8천㎥)	25 (3천톤)			47	19
'23년	27 (2천㎥)	30 (3천톤)	10 (3천톤)	43 (5천톤)	110	
'24년	93 (6.2천㎥)		10 (3천톤)	40 (5천톤)	143	
'25년				160 (2만톤)	160	
계	142 (1만㎥) (2.7개월분)	55 (6천톤) (1개월분)	20 (6천톤) (2개월분)	243 (3만톤) (3.6개월분)	460	

자료: 조달청

그러나 동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조달청의 요소 비축 소요액은 55억원에 불과하고 2023년 이후 신규 요소 비축 계획이 없으며, 요소를 제외한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만 405억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초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또한 조달청의 비축자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의 계획액 157억원 중 계약체결액은 127억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2023년 8월말 기준 90억원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요소의 경우 2023년 추가 3,000톤 비축을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4회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는 등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위한 회전자금 집행내역]

구 분	구매계약일자 (구매량, 계약금액)	대금지급일자(억원)	비 고
활성탄	'22.11.16 (1,890m³, 22억원)	'23.05.08(11억원) '23.07.06(3억원) '23.07.14(7억원) '23.07.26(1억원)	분할납품되어 분할 청구됨
	'23.06.09 (2,000m³, 27억원)	-	납기 미도래('23.12.06)
요소	'22.12.07 (3,000톤, 25억원)	'23.3.30(25억원)	
염화칼슘	'23.07.04 (3,000톤, 10억원)	-	검사완료('23.9.14) 후 대금청구 진행 중
형석	'23.05.04 (5,000톤, 43억원)	'23.08.02(43억원)	
합 계	127억원	90억원	

주: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결국 2022년에 회전자금으로 전출된 요소 비축자금 381억원 중 실제 요소 비축에 집행되었거나 집행예정인 자금은 55억원에 불과하고,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은 현재까지 총 102억원의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편성시 계획된 100억원을 이미 초과 집행하고 있는바, 요소를 제외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자금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목적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이다.

조달청은 2024년도까지 해당 비축자금을 집행한 후 그 외 잔액을 2025년도 조달특별회계로 세입처리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과정³⁾에서는 집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자금을 조달특별회계로 전출한 후 나머지 회전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달청은 2024년까지의 집행 계획액 및 여유분을 제외한 적정 규모의 회전자금은 미리 조달특별회계로 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3)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

2-2. 민·관 공동비축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재원상의 한계로 정부 단독으로는 충분한 비축재고를 확보가 어려운 반면, 민간의 경우 비축시설 관리비용, 재고비용 등 기회비용으로 인해 자체적인 원자재 비축에 소극적이다. 이에 정부 비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공동비축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조달사업법」 제32조⁴⁾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가 구매한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를 조달청 시설에 비축하는 것으로, 민·관 공동비축을 활용할 경우 민간은 저렴하게 비축시설을 사용하면서 장기비축이 가능하며 정부는 비상시 정부 우선사용 특약을 설정한 경우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제공한다.

4) 「조달사업법」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단위: %)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감면율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현재 조달청의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효과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 조달청이 발표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에서는 민·관 공동비축 제도 활용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 조달청 비축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민·관 공동비축 대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외 의존물자의 국내 재고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달청의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알루미늄, 탄산리튬의 비축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구리 1,713톤만 공동비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5) 구리실물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12.12)을 위해 민관공동비축 협약 체결('11.9)

[민·관공동비축 제도 활용 현황]

(단위: 톤)

연도	업체	품목	비축기지	비축기간	입고량	방출량	비고
2012	○○○○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12.12. ~ 현재	1,112	-	
2013	△△상사	알루미늄	부산청	'13. 1. ~ '16. 2.	5,807	5,807	종료
2015	□□□□	탄산리튬	부산청	'15. 9. ~ '17. 8.	2,076	2,076	종료
2021	○○○○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21. 6. ~ 현재	601	-	

자료: 조달청

특히 현재 유일하게 공동 비축 중인 구리의 경우에도 정부 우선사용 특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달청은 비축물자를 야적보관하거나 민간 창고를 임차하는 등 자체 비축여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⁶⁾에서 공동비축물자에 대한 우선 사용 특약 설정 등이 없이 민간에 비축시설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또한 민·관 공동비축사업 협약서(2018) 규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협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우선매각 협약이 미체결된 건이라도 국내 원자재 실물 확대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있으며, 우선매각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최대 40% → 50%)하고 매각물량에 따라 차등 부여(2023.3월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공동비축 중인 구리는 현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 자산으로서, 처분 가능성이 사실상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초 동 제도의 목적인 비상시 수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향후 민·관 공동비축 계약 체결 또는 연장시 최소 물량에 대한 우선사용 특약 설정을 의무화하거나, 우선사용 특약 설정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민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등의 공동비축제도의

6) 조달청은 비축공간의 부족으로 비축 알루미늄의 87%인 약 12만 톤을 야적 보관 중이며, 마스크 비축을 위한 민간창고 임차비용도 매년 지출되는 상황이다.

7) 사용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비축시설 연간 사용료를 1㎡당 단가로 간접 비교 시 민간은 약 138,000원/㎡·년, 조달청은 약 85,000원/㎡·년으로 조달청이 부과하는 비축시설 사용료는 민간의 62% 수준이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 (2022.9.)’에서 민·관 공동비축 확대를 위해 그 대상을 현행 비철금속 중심에서 경제안보 품목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비축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달청이 2차례에 걸쳐 민·관 공동비축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민간 기업의 참여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은 경제안보 품목 전반으로 공동비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 품목의 예시로 ‘긴급수급조절물자’를 제시하였는데, 긴급수급조절물자(정수용 활성탄, 차량용 요소, 제설제용 염화칼슘, 형석 등)의 경우 물자의 특성(물성변화, 변질 우려 등)상 보관 기한이 짧기 때문에 수요기업에 보관하면서 재고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간의 물자를 조달청 보유 시설(야적장 또는 창고)에 비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 달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는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장터 운영을 통해 공공혁신조달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025	9,833	9,642	△191	△1.9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2,036	2,836	3,050	214	7.5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내역사업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운영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이란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② 상용화 전 시제품,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혁신제품은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²⁾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7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2)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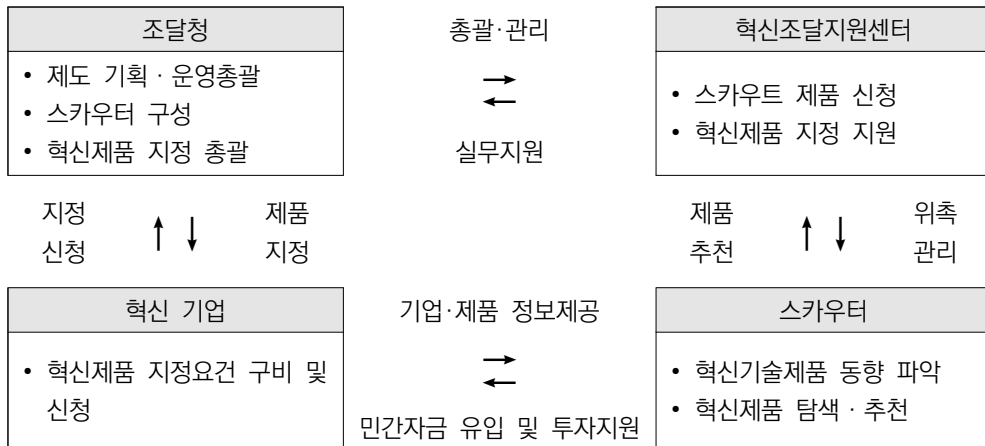
혁신제품 스카우터제도는 혁신·유망기업에 대한 접촉면이 넓은 전문가 네트워크(스카우터)를 활용하여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기업·유망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혁신제품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기업·기술·금융 전문가 등 기업과 접점이 많거나 혁신기술에 전문성을 지닌 자를 스카우터로 위촉하고 있다.

[스카우터 제도 개요]

- **(개념)**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기업·유망제품을 민간 전문가들이 발굴하여 혁신제품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 **(운영체계)** 조달청·전문지원센터·스카우터 간 협력 운영
 -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기획 및 운영, 스카우터 임명 및 제품 분야 선정·평가 등 총괄
 - **(전문지원센터)** 스카우터 모집·실무회의·교육 등 운영, 추천제품의 서류검토·사전심사(공공성·혁신성)·본 심사(데모데이 발표심사회) 등 실무 지원, 혁신제품 지정 신청 서류 검토 등 실무 지원
 - *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시범운영기관 지정)
 - **(스카우터)** 혁신기술·유망제품의 현황 조사, 스카우트 분야에 적합한 기업과 제품 탐색, 최종 추천, 평가 참여 등
- **(스카우터 위촉 기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혁신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공공조달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스카우터로 위촉
 - ① 공공조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제품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투자, 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④ 그 외 혁신기업 및 유망제품의 직접·선제적 발굴에 관해 위 ①~③항에 준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스카우터 위촉 현황)** '21년 20인 → '22년 74인 → '23년 7월(105인*)
 - * 벤처캐피탈, 테크노파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 17개 기관 소속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혁신제품 스카우팅 추진 내용]



자료: 혁신조달지원센터

조달청은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업 외에 공공조달을 모르거나 진입 자체를 어려워했던 신규기업(초기 창업 · 벤처기업 등 유망한 혁신적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적 ·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진입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익계약,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제품의 FT2(혁신시제품)³⁾ 유형 597개 중 스카우터 추천 제품은 55개로 그 비중이 전체의 9.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운영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유형별 혁신제품 지정 현황]

구분	FT1	FT2	FT3	합계(누계)	비고
제품 수(개)	563	597	577	1,737	FT2 중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55개

주: FT1(우수연구개발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기반 재작성

둘째,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역할 및 예비혁신제품의 데모데이 통과 실적을 고려할 때, 혁신제품 스카우터 성공수당 예산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4년도 예산안에 혁신제품 스카우터 성공수당으로 3,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스카우터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스카우터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규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성공수당 산출내역]

300천원 × 40개 × 3회 = 36,000천원
(위원회 참석비, 전문가 자문료 등의 성격으로 보아 일반수용비로 편성)

자료: 조달청

다만, 조달청은 제품 수(개) 당 30만원의 스카우터 성공수당 단가를 산정하면서 동 사업의 참고사례로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제시하였는데,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의 경우 활동 수당이 혁신제품 지정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밀착 컨설팅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카우터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 주요 활동]

활동 분야	주요 역할	주요 성과
기술·제품화	- 환경난제를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 유망한 제품 발굴 및 신청 안내 - 기업이 환경분야 혁신제품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자문 - 신청제품의 규격서, 품질인증서 등 지정 증빙자료 준비 지원	혁신제품 신청완료 및 최종지정
조달·사업화	- 환경분야 유망한 제품의 사업화 및 공공조달이 가능한 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 신청 및 평가에 대한 자문 - 환경분야 유망제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한 사업화 방안 자문 - 조달등록(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 가능여부 확인 및 공공조달이 가능하도록 사전작업에 대한 자문	
조달 구매연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중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화(거래) 성공 지원	혁신제품 구매지원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 분야별 활동 수당]

활동 분야	기술·제품화	조달·사업화	조달 구매연계
수당 금액	30만원	30만원	40만원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경우 공식적인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활동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혁신제품 지정 공고 일정에 따라 스카우트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활동 분야별로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기업 검토 및 자문, 증빙자료 준비 지원, 사업화 방안 자문, 혁신제품 사업화(거래) 지원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고하며, 그 수행 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격 적합제품이 혁신제품 지정까지 완료될 경우 지급되는 보상공금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팅 활동 수

당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수적인 보상이다.

반면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카우터는 공식 모집 공고 없이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위촉하고 있고,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으며, 제품 탐색 및 추천, 평가 등에만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카우터의 직접 신청을 기반으로 선정되어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컨설팅 활동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는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와는 그 역할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운영 절차]

제품 발굴 및 진입 유도	1단계	스카우터 구성	· 협력기관 협의 및 추천인 원 스카우터 위촉·구성	조달청 + 전문지원센터
	2단계	제품 추천 및 접수	· 스카우터의 제품 추천 · 추천제품 서류검토 및 접수	스카우터 + 전문지원센터
	3단계	사전심사	· 전문지원센터 사전심사 (공공성·혁신성 평가) 진행	전문지원센터 + 평가위원
	4단계	데모데이 실시 및 최종후보군 선정	· 데모데이 진행 후 최종 스카우터 제품 결정	조달청 + 스카우터 + 전문지원센터
	5단계	혁신제품 지정 후속지원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위한 서류검토 및 후속지원	조달청 + 전문지원센터
지정 구매 연계	6단계	혁신제품 지정 연계	· 혁신제품 지정 신청 (스카우터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조달청 + 혁신기업 + 전문지원센터
	7단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연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조달청 + 수요기관 + 혁신기업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에서 스카우터 간 수행 활동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카우터에게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와 유사한 수준인 3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스카우터 성공수당 단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이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과업을 환경분야 혁신제품 스카우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그 수행 결과를 내실 있게 관리 및 평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1년에 3차례 ① 스카우터 추천을 접수받아 ② 전문가 사전심사 및 데모데이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데모데이 1회당 40개, 총 120개(3회×40개)의 데모데이 통과 건에 대한 성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에 따르면 2021년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9월까지 228개 제품을 추천받아 7회의 데모데이를 거쳐 117개의 제품이 통과되었는 바,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46.8개의 예비혁신제품이 데모데이에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품 추천 및 혁신제품 지정 현황]

(단위: 건)

추천연도	제품 추천	선정(데모데이)	혁신제품 지정 추진 (컨설팅 등)	혁신제품 지정
2021	61	35	16	19
2022	92	49	22	27
2023	75	33	24	9
합계	228	117	62	55

주: 2023년은 9월말 기준 / 데모데이 개최횟수 : '21. 2회, '22. 3회, '23. 2회(연말까지 3회 예정)
자료: 조달청

그러나 현재 조달청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연 120건에 대하여 스카우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산출되었는바,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스카우터의 제품 추천을 통해 연평균 약 50개 정도의 예비 혁신제품이 데모데이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수당이 지급되는 건수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의 실질적인 수행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성공수당 적정 지급 단가 및 건수의 조정을 검토하고, 성공수당 예산 규모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¹⁾은 정부조달분야 협상참여 및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나라장터의 해외확산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100만원 증액된 3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사업의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구축 지원’은 글로벌 조달시장의 개방 추세에 따라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정부조달국제협력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2,697	2,614	3,585	971	37.1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구축 지원	2,144	1,899	2,759	860	45.3

자료: 조달청

주요 증액 사유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사업(10억원) 신규 추진으로, 동 사업은 해외조달시장의 복잡성, 진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단계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 개요]

진출단계	지원사업
수출준비	- 정부조달 필요 규격인증 획득작업 및 서류작성 등 지원, 대행 - 공공조달 참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통·번역 등 제공
시장개척	시장조사 → 바이어발굴 → 수출까지 장기지원
수출계약	- 수출국 정부조달규정 관련 납품검사, 통관 및 운송 등 지원 - 수출국 조달법령상 입찰, 계약분쟁 관련 법률지원·상담 등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동 사업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조달기업에 적시·통합 지원함으로써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기업 선정, 신청서비스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1억 2,000만원) 및 기업 지원금(8억 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나. 분석의견

2024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신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및 지원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중복에 따른 별도 추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조사에서 최종 영문 계약서 작성까지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업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기업 중심의 통합 지원 형태의 사업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조달청이 동 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예시)는 다음과 같다.

[종합지원 사업 제공 서비스(예시)]

구분	예상 단가(원)	지원예시
해외입찰 지원(제안서 작성 등)	3,500,000	주한 미국 입찰 등
해외조달벤더등록 지원	1,500,000	미국 SAM, UNGM 등록 등
해외전시회 파견 지원	5,000,000	해외 각종 전시회
전시모형 제작지원	6,000,000	시스템 모형 제작 등
현지 딜러발굴	15,000,000	해외바이어 탐색·매칭 등

자료: 조달청

그런데 중소기업부의 정부수출바우처 사업에서도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수출 지원, 해외전시회 등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긴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 서비스(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의	메뉴(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 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 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 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대분류	정의	메뉴(예시)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 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 원 ,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 지원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 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 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 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 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 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 비스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 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 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은 정산 제외)

자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에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조달청이 계획하는 서비스 유형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이미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모집 및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으로 추천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달청이 2024년부터 자체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

업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달청이 기존에 추진하던 다수의 수출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출지원 사업의 체계 정리 등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증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내역사업 예산은 27억 5,900만원으로 2024년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전체 예산(35억 8,500만원)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바, 조달청은 동 내역사업을 통해 이미 다수의 조달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안에는 동 내역사업의 전년 예산 규모의 45.3%에 해당하는 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의 별도 추진 필요성을 기존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 작성 및 컨설팅, 조달벤더 등록, 설명회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G-PASS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부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e-B2G) 사업 지원에 가점도 부여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국내기업과 해외조달기업의 매칭 및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20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조달청은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은 인증 비용 지원이나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등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종합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은 수출전략기업을 매년 10개 선정하여 2년간 수출전략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해외마케팅, 제안서 작성지원, 시장·품목분석, 홍보 등) 전반 및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검토, 해외정부조달 입찰참가 등 사업발굴,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등 기타 해외마케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달청은 동 종합지원 사업과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2개 사업 예산 1억 4,000만원²⁾을 2024년 예산안에서는 삭감하였는데, 이 외에도 조달청은 동 사업의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이나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³⁾ 사업의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사업 등 동 사업내용과 유사한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⁴⁾, 민·관 협력 수출컨소시엄 파견, 정보 제공 등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추진 내역]

구분	사업내용
유관기관 협력 강화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 협업 강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내 해외바이어 상담회 개최(4월)로 총 3,340만불 수출 계약 체결,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예정(11월)
해외전시회 참가	말레이시아 Smart Nation Expo(9월), 미국 세계한상대회(10월)에 우리기업 10개사를 파견할 예정
해외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18년부터 지속적 사업수행으로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해외 조달기업 매칭 및 수출 계약 체결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유엔기구 조달관을 초청하여 제품 홍보 및 유엔조달시장 진출설명회 개최(9월)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소기업 수출전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상담회 개최
G-PASS기업 지정 확대	G-PASS기업 지정 확대(1,022개사 → 1,132개사)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수출실적 16억불 달성 노력
코디네이팅 연계	혁신조달기업의 수출역량을 분석해 정부 수출지원 시책과의 연계 코디네이팅 및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자료: 조달청 제출기반 자료 재작성

2) 해외 입찰제안서 작성지원(△1.26억원), 해외조달벤더 등록지원(△0.14억원)

3)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4) 유망 해외전시회 선정 및 참가지원(조달청이 선정기업(5~6개사)와 동행하여 바이어 매칭 기회 제공 및 주선

또한 2023년 발족된 조달청의 국민참여 정책디자인단에서도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과제가 채택되어 수출역량이 부족한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국민참여 정책디자인단 추진 현황]

○ 2023년 채택과제

- ◆ (과제명) 국내 혁신기업을 더 넓은 해외조달시장으로 리딩하는 2인3각!
- ◆ (사업목표)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수출역량이 부족한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 및 개선

○ 2023년 추진 내용

- (구성) 조달청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수출유관기관(코트라 등), 일반 국민(혁신제품 기업), 해외 조달 수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 (실적) ① 혁신제품 기업의 현황파악 및 애로사항 취합
 ② 해외실증 시범사업의 현황 및 개선사항 건의
 ③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실증 지원 방안 모색
 ④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연계 방안 검토 등
- (운영) 관련 예산 부족으로 '23년 9월 말 기준 총 3회 회의 진행(2단계)
- (예산) 2023년 기본수용비 44백만원에서 집행 중

○ 2024년 추진 계획(안)

- “국내 혁신기업을 더 넓은 해외조달시장으로 리딩하는 2인3각!” 사업 계속 추진
 - ① 혁신제품 해외 수출 산업분야(농기계) 확대 및 수출 유관기관(농촌진흥청) 협력 다각화
 - ②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지원체계 다변화)
 - ③ 정책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지원 방안(인력지원 방안 등) 마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기반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이 2024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 사업은 중소벤처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이나 조달청의 기존 수출지원 사업들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없이 여러 사업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바, 조달청은 타 사업과의 연계, 기존 사업들과의 통폐합 가능성 및 향후 조달
기업 수출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¹⁾은 2023년부터 시작된 조달청 최초 R&D 사업으로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수요 중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결과물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하고(시범구매연계형), 기지정된 혁신제품 중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 R&D 과제를 수행하여 국내 확산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Scale-up형), 2024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	1,716	1,816	100	5.8

자료: 조달청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4년)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재)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달청은 2023년에 추진한 신규과제의 공모 및 선정 절차 지연으로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8

R&D 과제 1개월분에 해당하는 과제 예산을 202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인 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과제에 대한 1개월분의 예산은 감액하고 향후 협약 지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은 시범구매 연계형과 Scale-up형으로 구분되며, 조달청은 2023년도에 시범구매 연계형 2개 과제, Scale-up형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과제 유형별 지원 내용 및 목표]

과제 유형	시범구매연계형	Scale-up형
지원 내용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기존 혁신제품(FT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최종 성과 목표	혁신제품 지정 사전요건 확보 ①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 지적권 확보(또는 세부확보 계획) ③ 물품식별번호 발급 ④ 직접생산증명서 등	목표시장 준비 등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적용성 및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자료: 조달청

한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형 R&D 편성 기준]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이에 따르면 신규 과제의 경우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
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계속 과제의 경우 회계
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위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
(예산편성 개월수 축소, 단가 10% 삭감 등)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신규 사
업으로서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공고부터 지원기업 선정평가, 협약
체결까지의 관련 절차 지연으로 6개의 과제가 모두 2023년 5월에 협약이 체결되었
다. 이에 따라 2023년의 경우 모든 과제에 대하여 1개월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할 예정인데, 조달청은 미집행된 예산은 모두 2024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
겠다는 계획이다.

[R&D 사업 예산 산출내역 비교]

구분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연구개발 연구활동비 등 (360-05)	시범구매 연계형	(신규) 2개 과제 × 500,000,000원 × 9/12 = 750,000,000원	(계속) 2개 과제 × 500,000,000원 × 12/12 = 1,000,000,000원 (신규) 1개 과제 × 500,000,000원 × 6/12 = 250,000,000원
	Scale- up형	(신규) 4개 과제 × 300,000,000원 × 9/12 = 900,000,000원	(계속) 4개 과제 × 300,000,000원 × 3/12 = 300,000,000원 (신규) 1개 과제 × 300,000,000원 × 6/12 = 150,000,000원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360-06)		66,000,000원	116,000,000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Scale-up형 과제 중 2024년도 계속 과제(4개)의 경우 당초 단
년도 과제²⁾로서 2024년 4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

2) 2023.05.01.~2024.04.30.(12개월)

안에는 3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1개월분의 미집행 예산은 이월하여 2024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범구매 연계형 계속과제(2개)의 경우 2회의 협약 절차를 통해 2025년 4월까지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1개월분이 미집행되어 이월될 예정인바, 계속과제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 과제 2개에 대한 1개월분의 예산(약 8,400만원)은 감액하고 11개월분의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과제형 R&D 예산 반영 기준]

협약기간		예산반영기준
(‘23년) ’23.5~’24.4		’23.5~’24.1 (9개월)
(‘24년) ’24.5~’25.4	⇒	’24.2~’24.12 (11개월)
(‘25년) -		’25.1~’25.4 (4개월)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적어도 1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초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2023년도 연구개발과제 협약 절차가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이월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예산이 초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 및 중간평가를 초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동 R&D 사업의 성과지표로 과제 공모에 대한 응모 기업 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과제별 응모 기업 수’는 R&D 사업 수행의 성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성과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시작된 R&D 사업으로서, 조달청은 시범구매연계형 과제와 Scale-up형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시범구매연계형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제품화 수요 발굴건수 (단위: 건)	목표	4	2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지원과제수 1건의 2배수 목표 설정	수요 혁신제품화 R&D 수요건수건수	응모기업수
	실적	36	-			
	달성도	900%	-			
사업단에 대한 기업 만족도 (단위: %)	목표	60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연구단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적	-	-			
	달성도	-	-			

자료: 조달청

[Scale-up형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제품 R&D수요 발굴건수 (단위: 건)	목표	8	2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지원과제수 1건의 2배수 목표 설정	혁신제품 R&D 수요 발굴 건수	응모기업수
	실적	24	-			
	달성도	300%	-			
사업단에 대한 기업 만족도 (단위: %)	목표	60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연구단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적	-	-			
	달성도	-	-			

자료: 조달청

그런데 시범구매연계형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인 ‘혁신제품화 수요 발굴건수’와 Scale-up형 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R&D 수요 발굴건수’는 해당 R&D 과제 공고에 응모한 기업 수를 측정하여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2023년도 목표 응모기업 수를 지원과제 수 1건의 2배수로 설정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이미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가 각각 900%와 300%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 방식에 대하여 조달청은 신규사업으로 R&D사업에 응모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R&D 경쟁률 2:1을 적용, 2배수 기업 응모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 공고에 대한 응모 기업 수'는 R&D 과제 수행에 따른 산출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R&D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R&D 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에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 초기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³⁾의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를 참고하여 볼 때, 과제 목표는 과제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기술 수준이나 과제 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산출하려는 유·무형의 성과⁴⁾를 목표로 설정하고, 과제가 다년도로 수행되는 경우 최종 연도에 달성할 목표를 고려하여 기한 내 달성할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응모 기업 수'와 같이 R&D 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와 무관한 지표보다는 동 R&D 사업의 목적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1.

4) 시제품 제작 단계, 지식재산 등록, 기술 수준 평가, 인증 획득, 시험 성적 등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는 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수행 및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상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9,025	9,833	9,642	△191	△1.9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153	206	206	-	-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2023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달청은 올해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연도 내 집행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2024년도에 포상금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사업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기획조사를 위한 조사비용 및 조사차량 임대, 출장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동 사업 예산 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은 2021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사업 편성내역]

일반수용비 (210-01)	35,733천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 매뉴얼: 10,000원×500부 = 5,000,000원 · 가격조사업무 매뉴얼: 10,000원×500부 = 5,000,000원 ·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 25,000원×2종×12월 = 600,000원 · 불공정 부당행위 관련 환수소송비: 10,000,000원×1.5건 = 15,000,000원 ·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비용: 10,000천원 : 1,000,000원 x 10회= 10,000,000원 · 조정재원: 133천원
임차료 (210-07)	40,090천원 · 현장조사업무용차량임차 1,000,000원×4대×10개월=40,000,000원 · 조정재원: 90천원
유류비 (210-08)	6,000천원 · 현장조사업무용차량 250,000원×2대×12월=6,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024천원 · 운전자보험 12,000원×21명×12월=3,024,000원
피복비 (210-03)	4,200천원 · 현장조사복 200,000원×21명×1회=4,200,000원
국내여비 (220-01)	57,553천원 · 가격조사 등 40,200원×7일×16.9명×12월=57,120,000원 · 조정재원: 433천원
사업추진비 (240-01)	9,000천원 · 조사관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업무협의 500,000원 × 6개 기관 × 2회 = 6,000,000원 · 물품분야 업무협의 500,000원 × 3회 = 1,500,000원 · IT 및 서비스 분야 업무협의 500,000원 × 3회 = 1,500,000원
포상금 (310-03)	50,000천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20,000천원 × 2.5명=50,000천원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0년 10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제도²⁾를 도입하였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조달청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신고 건당 한도 1,0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2)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해당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로 인해 피신고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건수는 2020년 185건에서 2021년 160건, 2022년 13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2021년 50만원, 2022년 약 1,300만원 수준으로 예산 편성액(2,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그런데 조달청은 2022년 6월부터 기존에 3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23년 상반기부터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익명제보 기능 도입, 분산된 신고채널 통합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포상금 지급 홍보 등을 지속 추진³⁾하여 2023년 상반기 기준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총 1,276만원의 포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현황]

(단위: 건, 원)

연도	신고 건수	지급 건수	포상금 예산	포상금 지급액
2018	223	-	-	-
2019	235	-	-	-
2020	185	-	-	-
2021	160	2	20,000,000	500,000
2022.1~5.	135	13	20,000,000	12,983,200
2022.6~12.				
2023.상반기	87	13	20,000,000	12,761,180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도 1,390만원(14명)의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어 2023년 포상금 지급 필요액은 예산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청은 2024년도 포상금 예산 증액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포상금 한도 및 포상

3) 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1월) 언론공개건도 신고내용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포상금 대상에 포함, 1인당 지급횟수 제한(12개월간 4회) 삭제

- (5월) 조사결과 거래정지 처분건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

② 신분노출 부담 완화 및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5월) 불공정행위·가격위반·브로커 등 분산된 신고채널을 통합하고, 익명제보 기능 도입

③ 자진신고·조사협조자 리니언시 제도 도입

- ('22.11월) 조사 적극 협조시 부정당제재 감경 기준 마련

④ 신고포상금 지급 홍보 및 신고 독려

- (1월, 7월) '22년 전체 및 '23년 상반기 각각 1,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사실 홍보

률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라 2024년도의 신고포상금 집행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법정포상금(민간)을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이 부족할 경우 자체 이·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올해 부족한 신고포상금을 2023년도에 자체 이·전용 등을 통해 연도 내에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⁵⁾을 준수하고, 2024년도 신고포상금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지급 상한액)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지급 기준) 정액기준 2배 상향, 차등기준 지급비율을 2.5배 상향

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통계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36억 1,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억 9,000만원(18.0%) 감소하였다.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61	4,400	3,610	△790	△18.0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4,241억 7,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4억 7,000만원(7.7%) 증가하였다.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67,469	393,704	424,174	30,470	7.7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54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600만원(2.1%) 증가하였다. 2024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정원이 전년 대비 13명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정원 책정 결과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53,419	151,842	154,958	3,116	2.1
본부 인건비	56,411	56,801	58,973	2,172	3.8
통계개발원 인건비	3,808	3,912	4,292	380	9.7
경인 인건비	21,663	21,617	21,564	△53	△0.2
동북 인건비	19,308	18,788	19,087	299	1.6
호남 인건비	22,301	21,103	21,443	340	1.6
동남 인건비	14,920	14,469	14,600	131	0.9
충청 인건비	15,008	15,152	14,999	△153	△1.0

자료: 통계청

[2024년도 통계청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3년도 정원(A)	2024년도 정원(B)	증감	
			B-A	(B-A)/A
통계청	2,189	2,176	△13	△0.5

자료: 통계청

2024년도 통계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73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900만원(6.0%)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0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원(1.3%)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22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200만원(8.0%) 증가하였다.

[2024년도 통계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5,307	16,332	17,311	979	6.0
총액인건비 대상	10,312	4,985	5,052	67	1.3
총액인건비 비대상	4,995	11,347	12,259	912	8.0

자료: 통계청

2024년도 통계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다양한 표본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는 2025 총조사의 준비(2023년 36억 1,300만원 → 2024년 291억 8,600만원), ② 제6회 생활시간조사, 경지모집단 구축 등 주기성 조사의 도래에 따라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을 증액 편성(2023년 1,364억 3,600만원 → 2024년 1,692억 8,700만원)하고, ③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개도국의 자체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하는 ODA사업을 확대(2023년 42억 2,700만원 → 2024년 62억 6,800만원) 한 것을 들 수 있다.

2024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계청은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조사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도 일부 지자체와의 협조 미비 등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실히 조사계획을 세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홍보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여 총조사 100주년 기념 전시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등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되며, 조사 참여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홍보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보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행정통계활용 통계개발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및 온라인 가격지표의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계데이터센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 융복합관리체계 운영 및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DB를 신규 구축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인바, 해당 연구용역은 관련 DB가 구축된 이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개발원은 일반연구비 사업의 반복 편성을 지양하고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자체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24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24억 6,4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인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사업은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체계적이고 수원국별 맞춤형 ODA 사업추진을 통해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기존사업 분리)]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2,464
합 계		2,464

자료: 통계청

2024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농어업통계작성,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등이 있다.

①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사업은 제주분원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농어업통계작성 사업은 5년 주기 경지총조사 모집단 정비 및 북한 논경지총조사 모집단 정비에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가구주택기초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④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시범예행조사 실시를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통계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3 본예산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개)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5,475	7,718	2,243	41.0
	농어업통계작성	2,377	3,430	1,053	44.3
	인구주택총조사	1,997	26,326	24,329	1,218.3
	농림어업총조사	1,229	2,096	867	70.5

주: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가. 현 황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5년마다 한번씩 인구주택총조사¹⁾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 결과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립·평가, 각종 학술연구 등에 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243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3억 2,600만원이다.

[2024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구주택총조사	1,899	1,997	26,326	24,329	1,218.3
시험조사(3차)	364	403	306	△97	△24.1
시범예행조사	-	-	1,079		순증
가구주택기초조사	-	-	22,688		순증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	-	1,000		순증
등록센서스	791	832	851	19	2.3
국제인구통계협력	448	402	402	-	-
자료처리	157	-	-	-	-

자료: 통계청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4-307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로,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2024년도에는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와 등록센서스 품질개선을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예산이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주기]

준비 단계			조사 단계	공표 단계
2022년(D-3)	2023년(D-2)	2024년(D-1)	2025년(D)	2026년(D+1)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개선과제 도출> ·조사방법 개선검토 ·조사항목 개선검토 ·행정자료 확대검토	<현장적용 분석> ·조사방법 적용분석 ·조사표 적용분석 ·행정자료 정확성분석 ·조사요원 업무량 분석	<최종점검(리허설)> ·조사표 최종점검 ·현장조사 최종점검 ·시스템 운영점검 ·콜센터 운영점검	<총조사 실시> ·인력동원 ·총조사 홍보 ·현장조사 실시	<공표·자료제공> ·조사결과 사후 검증 ·자료처리 및 검토 ·조사결과 공표 * 마이크로데이터 등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첫째, 통계청은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조사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도 일부 지자체와의 협조 미비 등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실히 조사계획을 세워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도입된 등록센서스 중 주택 관련 품질을 개선하고 가구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고시원 등 준주택 및 빈집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건축연도, 주거시설 형태 등은 등록센서스의 주택 항목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된다.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가 2019년 조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00% 현장전수조사로 처리되던 방식에서 50%를 선별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요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²⁾ 행정 자료 기반 선별 조사의

경우 행정자료와 실제 주거 형태와의 차이 등 오차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

[가구주택기초조사 전주기(2014, 2019년)와의 비교]

구분	2014	2019	2024
조사 준비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조사 100%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조사 100%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조사 약 50% 선별
조사 도구	종이조사표	태블릿 PC, 종이조사표	태블릿 PC, 종이조사표
조사 방법	종이조사 PC(인터넷)조사	태블릿 PC PC(인터넷) 조사 모바일 조사 전화조사 종이조사(시설가구원 등)	태블릿 PC PC(인터넷) 조사 모바일 조사 전화조사 종이조사(시설가구원 등)
조사 운영	본조사 11일, 조사요원 27,418명	본조사 20일, 조사요원 12,943명	본조사 22일 조사요원 7,477명
조사 규모	1,872만 가구 (1,560만 거처)	2,315만 가구 (1,920만거처)	1,422만 가구(예정) (1,152만 거처)
상황실	3,500개 읍면동 단위	250개 시군구 단위	250개 시군구 단위
조사 관리	상황실 방문 관리	태블릿 PC 활용 단방향 업무관리 (상황실→조사원)	태블릿 PC 활용 양방향 업무관리 (상황실↔조사원)
자료 검토	관리요원이 종이조사표 아이체킹	전자조사를 통한 기초 입력내검 실시	전자조사를 통한 기초 입력내검 실시
자료 입력	ICR 자료입력	실시간 입력	실시간 입력
사후 정리	조사표 편철 및 택배 제 출, 조사표 보관	×	×
디지털 기술 활용	×	태블릿 PC 입력 구축	자동완성 입력 기능 (교육영역, 산·직업 등), AI 산·직업 자동 코딩, ICT 기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료: 통계청

2) 이에 대해 통계청은 50% 선별 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원 인건비 등을 효율화한 결과 2024년 예산 227억원은 물가상승률(14.1%)과 인건비 상승률(19.4%)을 반영한 전주기(2019년) 조사예산(355억) 대비 63.9%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3) 통계청은 이에 대해 가구주택기초조사의 현장조사 대상 중 행정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고 거처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5~30년 미만 아파트(전체 주택의 약 50%)를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나 준공된 지 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도 리모델링 등에 따라 행정자료와 실제 주택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일환인 2019년 시범예행조사 내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당초 대상지역(수도권 포함 2개 시군구의 4만 7,000가구) 지자체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래 대상이 아닌 타 시·군·구 2만 3,000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다.⁴⁾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관련 국회 시정요구사항]

구분	국회 시정요구사항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서 불용액이 20억 9,000만원 발생하였고, 그 중 시범예행조사 내역사업에서 전체 예산 13억 4,200억원 대비 불용액 4억 1,4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69.6%로 부진함 - 통계청은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예행조사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주의)

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에 앞서 조사항목,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2024년에 3차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24년의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의 경우 타당성 및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전주기인 2019년에 비해 각각 2,000가구(시험조사) 및 35,000가구(시범예행조사)의 조사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4) 이에 통계청은 2019년 시범예행조사의 낮은 집행률을 개선하고자, 2021년초부터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협의하여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지역을 사전에 선정 완료('21.9.13.)하였다고 밝혔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전주기 비교]

구분	전주기('19년)	금주기('24년)	비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시험조사(3차)			
조사규모	3개 시군구(7개 읍면동) 8,000가구	3개 시군구(6개 읍면동) 10,000가구	+2,000가구 (타당성 검토 강화)
조사원수	120명 (조사관리자 34명, 조사원 86명)	62명 (조사관리자 12명, 조사원 50명)	△58명
조사일수	23일	21일	△2일
소요예산	410백만원	306백만원	△104백만원
비고	2회(가기초, 인총)	1회(인총)	△1회
202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시범예행조사			
조사규모	2개 시군구 23,000가구	3개 시군구 58,000가구	+35,000가구 (현장점검 강화)
조사원수	427명 (조사관리자 88명, 조사원 339명)	270명 (조사관리자 55명, 조사원 215명)	△157명
조사일수	23일	21일	△2일
소요예산	1,342백만원	1,079백만원	△263백만원
비고	2회(가기초, 인총)	1회(인총)	△1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그 기초가 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의 경우 인구 및 가구 대상 조사의 기준자료로서 각종 표본 조사의 모집단 활용 및 표본추출로 사용되는 국가의 기간(基幹) 통계⁵⁾이다. 인구주택 시험조사·시범예행조사 및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가 표본 추출, 지자체 협의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본조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 학술 연구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은 가구주택기초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승인 통계 302종 중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통계는 2022년 11월 기준 233종(77.2%)이다.

둘째,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홍보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여 총조사 100주년 기념 전시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나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 등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되며, 조사 참여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에 대한 홍보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보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24년 예산안에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하여 일반용역비(210-14) 10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예산에 대하여 통계청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홍보하여 표본 가구의 응답률 제고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에 대하여 기본항목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심층항목을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기본항목 조사는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행정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심층항목의 경우 5년마다 전 국민의 약 20% 표본(약 1,000만명)을 설정하여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본조사 방식의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나, 표본 가구의 응답률이 낮을 경우 표본 오차가 발생하여 전체 집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본 추출 및 표본 전체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계 조사를 위한 홍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사 응답률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홍보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문화체육부 정책 홍보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2023~2025년에 걸친 홍보 추진전략과 홍보 매체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202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추진 전략]

년도 및 계기	2023년 정부예산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아젠다 세팅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번째 조사 ‘대한민국민이 살아온 100년, 살아갈 100년을 만드는 국가통계조사’		
핵심메시지	#미래를 그리다 #미래를 만들다 우리를 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타깃	전국민 #미래를 그리다 #우리를 위한 국가통계 2024~2025년 국가통계, 그 어느 해 보다 중요한 조사 (정부 인식제고) 전국민 #미래를 만들다 #우리를 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인총100년·통계100년 x 국가정책변화’ 사회,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우리(정책 타깃 별) 정책변화 사례 개인적 지원, 인구조사 참여 방해 장벽해결 (국민체감 & 우리를 위한 참여)		

자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컨설팅 결과

[2024~2025년 2개년 가용예산 범위 내 홍보 매체 활용 계획]

구분	내 용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비고
방송광고 (Broad Advertising)	TV 광고 제작 (6편 이상) 및 매체비	-	24%	- TV광고 타깃(혹은 주제별) 멀티광고 제작 및 타깃별 도달률 증대를 위한 광고매체 집행 - 2020년 대비 35% 증가
	라디오 광고 제작 및 매체비	-	1%	
뉴미디어 광고 & 홍보 (Digital AD & PR)	디지털 광고 제작 및 매체비	-	15%	매체이용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률 증가 타깃(혹은 주제별)멀티 광고 제작 및 타깃별 도달률 증대를 위한 광고 집행 조사문항 등 선제적 홍보 - 2020년 대비 60% 증가
	뉴미디어홍보 (홍보콘텐츠, 바이럴 영상제작 등)	14%	10%	

구분	내 용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비고
TV방송 미디어 콜라보	TV방송 협업 프로그램 제작	42%	13%	TV 방송사 제작 초기단계부터 협업 프로그램 제작 - 인총 관련 역할, 가치, 정책과의 연 계성 노출 (2020년 대비 신규추가 프로그램)
인쇄매체	칼럼 기고 및 언론 오보대응	7%	5%	인총 관련 언론홍보 및 사생활 노출 및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에 따른 오 보대응 위기관리 필요성 증가 2020 년 대비 25% 증가
옥외광고 및 리플렛	홍보탑 및 LCD 광고, 홍보물	1%	4%	2020년 동일수준
교통수단 전화광고	차량스티커, 지하철 등	-	3%	2020년 동일수준
지역별 홍보	지자체 현수막 포스터 등	-	6%	2020년 동일수준
국민접점 (인총 x 정책사례) Pool 확보 및 인총 관련 국민의견 (주제) 수렴	공모전	24%	-	(정책 x 인총), (개인·기업활동 x 인총) - 국민 2025년 인총 궁금한 사항 다양한 사례 확보 필요 - 관련 의견수렴 (향후 홍보콘텐츠 활용) (2020년 대비 신규추가 프로그램)
	국민참여 이벤트	7%	2%	
국민체감 100주년 기념 전시회	100주년 기념 전시회	4%	13%	2024년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위 한 컨설팅 - 2025년 인총100·통계100 전시회 (대여료 및 콘텐츠 구성) (2020년 대비 신규 추가 프로그램)
	전시 모객 홍보	-	4%	전시회 모객 홍보 (2020년 대비 신규추가 프로그램)
기타	자문회의 등	-	1%	2020년 동일수준
합계		100%	100%	

자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컨설팅 결과”

그러나 통계청의 홍보 매체 활용 계획 중 100주년⁶⁾ 기념 전시회 홍보 예산의 경우 조사 응답률 제고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며 전시회에 접근 가능한 대상에만 효과가 집중되는 등 사업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통계청이 홍보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 조사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중은 예산 투입계획 기준으로 5~7%에 불과하다.

실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과정에서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해당 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행정자료로 대체할 것을 지정한 바 있다.⁷⁾

통계청은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어떤 정책 결정 평가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관련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매체이용도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인쇄매체 홍보 비중을 낮추는 등 지난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홍보 매체 활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6) 통계청은 인구조사의 시작시점을 1925년으로 지정, 1925년부터 총조사인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인구조사라 할지라도 해당 시점부터의 인구조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19.11.

가. 현 황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¹⁾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전국사업체조사, 각종 부문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등에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작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20억 3,400만원이 감액된 26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내역사업인 행정자료활용통계개발 사업은 일반연구비(1억 5,000만원) 등 총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구조통계작성	27,440	28,274	26,240	△2,034	△7.2
행정자료활용통계개발	239	263	366	103	39.2
- 일반연구비(260-01)	65	50	150	100	200.0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²⁾ 사업은 ‘데이터 기반 정책’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이 통계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다 많이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운영, 행정자료 통합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41억 8,000만원이 감액된 7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1-301

2) 코드: 일반회계 2032-308

그 중 내역사업인 데이터융복합 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관리용역비(23억 4,300만원) 등 총 2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사업은 일반연구비(2억 7,800만원) 및 관리용역비(2억 2,400만원) 등 총 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10,343	11,920	7,740	△4,180	△35.1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운영	5,203	5,998	2,797	△3,201	△53.4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607	646	646	-	-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의 행정통계활용 통계개발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및 온라인 가격지표의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계데이터센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 융복합관리체계 운영 및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DB를 신규 구축 또는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인바, 해당 연구용역은 관련 DB가 구축된 이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전국사업체조사를 비롯하여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로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각종 경제구조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작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 세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전국사업체조사	10,047	9,819	△228	△2.3
광업제조업조사	3,254	3,294	40	1.2
서비스업조사	5,551	5,951	400	7.2
소상공인실태조사	2,226	0	△2,226	△100.0
기업활동조사	920	940	20	2.2
운수업조사	623	637	14	2.2
프랜차이즈조사	812	828	16	2.0
건설업조사	293	300	7	2.4
기업생멸행정통계	329	330	1	0.3
지역소득	153	153	0	0.0
국민대차대조표	53	53	0	0.0
소득통계개선개발	27	27	0	0.0
행정통계활용통계개발	263	366	103	39.2
기업통계등록부정비	3,722	3,542	△180	△4.8
합 계	28,273	26,240	△2,033	△7.2

자료: 통계청

이중 행정자료활용통계개발 사업은 행정·민간 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맞춤형 신규통계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및 행정자료 활용 강화를 통해 각 부처(기관) 정책지원 및 고품질·저비용 통계생산을 개발·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에서는 2024년 예산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2023년 대비 1억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의 일반연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생활인구¹⁾ 및 온라인 가격지표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 작성 방안을 검토 및 연구하는 것이다.

1)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 및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 인구,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빅데이터 활용 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생활인구 관련	
추진 현황	◦ 과제명: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한 생활인구 작성방안 연구 ◦ 목적: 국정과제(120) 및 인구감소지역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가명결합을 통한 생활인구 산출방안 연구 ◦ 용역기간: 2024. 7월~ 2024.11월(예정) ◦ 계약금: 약 75백만원 ◦ 수행기관: 미정
주요 내용	◦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작성방안 연구 ◦ 지역별 생활인구 다차원 분석방안 연구 ○ 국가 승인통계로의 전환방안 검토
온라인 가격지표 관련	
추진 현황	◦ 과제명: AI 활용 온라인 가격지표 개발 ◦ 목적: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시장 중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행태를 반영한 온라인 가격지표 개발, 특히 AI를 활용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연구 ◦ 용역기간: 2023.7.11. ~ 2023.12.7.(5개월) ◦ 계약금: 41백만원 ◦ 수행기관: (주)아일리스프런티어 ※ 2024년 하반기 약 6개월 용역(계약금 75백만원) 예정
주요 내용	◦ AI를 활용한 품목분류/추론 방법 연구 ◦ 품목 특성별 단위 정보 등 필요정보 생성 및 후처리 로직 구현 ◦ 후속 연구(2024년~)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단기)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온라인 가격지표 산출 대상 품목 확대 - (장기) 온라인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로 활용

자료: 통계청

그러나 현재 통계청은 해당 연구용역의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생활인구 DB 구축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운영 사업에서 생활인구 DB 산정 구축을 위해 2024년 2억 7,300만원을 편성, 인구 감소지역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의 분석을 위한 신규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백만원)

항 목	금액	산출 내역
(신규구축) 생활인구 산정DB	273	
- 업무분석가	25	1명 × 12개월 × 0.18 × 11,226,423원
- 데이터분석가	83	1명 × 12개월 × 0.97 × 7,158,006원
- 응용SW개발자	41	1명 × 12개월 × 0.53 × 6,426,417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124	2명 × 12개월 × 0.77 × 6,729,052원

자료: 통계청

동 연구용역의 또 다른 기초 DB인 온라인 가격정보 DB 또한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2024년에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온라인 가격정보 DB 시스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연계, 자료처리 및 결과 반출 프로세스]



자료: 통계청

온라인 가격정보 DB의 경우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가격정보 DB의 품목분류 정보가 바뀔 경우 온라인 가격지표의 통계 지표 또한 해당 품목분류 정보를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및 온라인 가격 지표의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해당 용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DB의 구축 및 개선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¹⁾은 통계개발원의 주요 기능인 선진통계조사기법, 통계 추정기법, 통계분석·연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연구사업수행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 증액 된 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연구개발지원	1,377	1,425	1,490	65	4.6
연구사업수행	511	557	699	142	25.5
- 일반연구비(260-01)	356	399	536	137	34.3
- 일반수용비(210-01)	90	86	86	-	-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개발원은 일반연구비 사업의 반복 편성을 지양하고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자체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개발원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필요통계를 개발·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신설된 국가통계연구기관으로 200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²⁾ 통계 전반에 관한 연구수행을 통해 국가통계의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에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4031-311

2)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은 통계개발원이 수행하는 사업성 경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계개발원은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인건비 및 기본경비 간의 상호 이·

기여하고, 통계연구를 통한 통계작성기법 향상, 신규 통계의 개발 및 기존 통계를 개선하며,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작성에 관한 컨설팅 기능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자체연구 과제와 연구용역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연구비 비목(260-01)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연구용역과제이며, 자체연구 과제는 통계개발원 연구인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4년 동 사업에는 ①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등 6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외부에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연구비 5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②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등의 자문 및 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통계개발원 일반연구비 및 일반수용비 편성 내역]

용역명	일반연구비 예산액	일반수용비 예산액
한국의 사회동향	1억 5,500만원	2,500만원
SDG 이행 지원 연구	9,400만원	3,100만원
데이터 과학 연구	7,000만원	1,500만원
삶의 질 지표 세분화 연구	8,000만원	1,500만원
인구정책지원 민관연구	4,500만원	-
탄소중립지표체계 연구	9,200만원	-
합 계	5억 3,600만원	8,600만원

자료: 통계청

그런데 통계개발원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 편성되고 있다. 2024년에 계획된 연구용역사업 6건 중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및 SDGs 이행 지원 연구는 특정기관이³⁾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표 인지 실험 관련 연구 또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다.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통계연구개발지원은 이러한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따르는 사업성 경비를 의미한다.

3)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의 경우 2015년 이후 2023년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해오고 있으며, SDGs 지표 관련 용역의 경우 2020-2021년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3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였다.

[2021~2023년 통계개발원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목록	예산액	목록	예산액	목록	예산액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1억 5,500만원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1억 5,500만원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1억 5,500만원
안전지표 통계연구	7,000만원	데이터 정보보호 연구	7,000만원	데이터 과학	7,000만원
SDG 이행지원 연구	7,400만원	SDG 이행지원 연구	7,400만원	SDG 이행지원 연구	9,400만원
조사표 인지도 실험 결과 활용	6,000만원	조사표 인지도 실험 결과 활용	6,000만원	조사표 인지도 실험 연구	6,000만원
재현자료 및 데이터과학	1억 3,000만원	재현자료	7,000만원	생애주기별 청년 고령자 삶의 질	8,000만원

자료: 통계청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및 SDGs 지표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통계청이 국제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므로, 해당 보고서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통계개발원에서는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수요과제 및 자체과제 중심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의 전문성 및 방대성으로 인해 통계개발원 내부인력만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⁵⁾는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용역비가 매년 반복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통계청은 매년 용역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등의 경우 통계개발원의 연차적 간행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의 경우, 인구·건강 등 12개의 분야에 대해 주요 동향을 제시하고, 매년 해당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슈 논문을 선정, 작성하고 있어 매년 작성되는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나, 주요 동향 등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5) 연구용역비는 ①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을 제공하는 일반연구비(260-01)와 ②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통계청은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통계개발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통계 산출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자체 수행⁶⁾함으로써 통계 생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통계개발원의 정원은 2023년 9월 기준 53명으로 실제 연구 가능인원은 총 12명이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80-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506-10

ISBN 979-11-6799-18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